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2169 번 호

제안연월일: 2005. 6. 29.

제 안 자: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제24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4. 7. 9)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5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05. 6. 2)에서 선거법소위원회와 지방선거관련법소 위원회가 구성됨.

- 나. 제254회국회(임시회) 제1차 내지 제8차(2005. 6. 7, 6. 9, 6. 10, 6. 14, 6. 17, 6. 21, 6. 23, 6. 24)선거법소위원회와 제1차 내지 제4차(2005. 6. 8, 6. 10, 6. 15, 6. 24)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에서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안과 각 당의 의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안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다. 제254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5. 6. 24) 에서 선거법소위원회와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2. 제안이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개선하며,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확대하고 토론회 참여를 강제함으로써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신문사업자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에 포함시키고, 인터넷언론사에게도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대한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도록 함(안 제8조·제8조의5).
-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그 보도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을 명하도록 함(안 제8조의6).
- 다. 선거부정감시단은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 라.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 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안 제15조).

- 마.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 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24조).
- 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 하고, 그 시·도별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도록 하며,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제26조제2항).
- 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 아.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을 수요일로 변경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과 마찬가지로 선거일, 선거일의 전일 및 다음날 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하도록 함(안 제35조).
- 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신고범위를 대폭 확대함(안 제 38조).

- 차. 선거인명부의 통·리별 공람 대신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 자가 당해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등재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0조).
- 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며, 위반시 등록무효사유로는 보지아니하도록 함(안 제47조).
- 타. 선거권자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에 있어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50조).
- 파.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한 후 추가·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그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 소득세증 명서는 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 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 거.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신고된 1인)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은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
- 너. 예비후보자가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11조).
- 더.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시기를 일치시키도록 하고, 대통령선거는 선거일전 240일,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전 1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61조의2).
- 러.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선거는 10인, 시·도지사선거는 5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3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 머.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 후보자정보공개 자료를 게재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
- 버. 후보자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

- 서. 후보자와 그 배우자(또는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관계자는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국회의원선거는 20인, 자치구·시·군의장선거는 10인, 시·도의원선거는 5인,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3인까지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 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2인을 연설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 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선거연락소마다 2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는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
- 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에서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초 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에게도 별도의 대담·토론의 기회를 부 여하도록 하며, 초청받은 후보자가 불참시 대담·토론회 직전 에 방송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82조의2).
- 처.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 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함(안 제82조의6).

- 커.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안 제82조의7).
- 터.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5조).
- 퍼.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
- 허.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적법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비용 등 선거비용 보전제외 대상을 명시함(안 제122조의2).
- 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 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 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하도록 함(안 제151조).
- 노. 법원공무원, 교직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집계사무를 담당할 개표사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74조).
- 도.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에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00조).

로.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 거의 투표용지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도록 함 (안 제211조).

법률 제 호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의 법명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조중 "憲法과 地方自治法"을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4조중"住民登錄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 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제8조중 "報道하는 자"를 "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 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중 "放送法"을 "「방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가지는"을 "구성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放送法 第100條(制裁措置등)"을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중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17條(言論仲裁

委員會)"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가지는"을 "구성한"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2條(用語의 定義)第1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하고, 동조제4항중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一般日刊新聞 및 같은 법 같은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一般週刊新聞"을 "「신문 등의 자유와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본문중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2條(用語의 定義)第2號의 規定에 의한 一般日刊新聞"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의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 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본"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

으로 본다.

제8조의5제1항중 "인터넷언론사(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의6제1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2항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동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⑦「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 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 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 분"으로 본다.

제8조의7제1항 본문중"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성하는"을 "구성한"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방송문화진흥회법」"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投票區選擧管理

委員會"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경우 선거기간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 1. 정당이 선거부정감시단원 추천포기의사를 통보하여 온 경우
- 2.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추천기한까지 선 거부정감시단원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한 수가 3인에 미 달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중"下級選擧管理委員會"를"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 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選擧管理委員會"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地域選擧區市・道議會議員(이하"地域區市・ 道議員"이라 한다)選擧와 自治區・市・郡議會議員(이하"自治區・ 市・郡議員"이라 한다)選擧"를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 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로, "選擧管理委員會法"을 "「선거관리위원회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20歲"를 "19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 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 수죄)"를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으로,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중 "國民投票法"을 "「국민투표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刑法"을 "「형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選擧하며, 比例代表市・道議員은 당해 市・道를 단위로 選擧한다."를 "선거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地域區市・道議員 및 自治區・市・郡議員"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제22조제2항중"地方自治法"을"「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내에서 제 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 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정한다.

-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 하며, 동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8항)중 "改正하는 때에는"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11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⑨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4조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 한다.

④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市・道議員地域區"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로, "市・道議員地域區에"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 모든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 모든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④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제28조제3호 후단중 "申告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이 분할·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자치구·시·군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자치구·시·군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

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정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당해 지 역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이 경우 새 로 선출된 의원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 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

- 6. 제4호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때에는 자치 구의회를 새로 구성하며, 그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 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다. 이 경우 새 로 정한 의원 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 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
-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중"地方自治法"을 각각"「지방자치법」"으로 한다.
- 제32조제1항중 "選擧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國會議員地域區)"을 "선거구"로 하고, 동조제2항중 "別表 1과 別表 2"를 "별표 1·별표 2·별표 3 "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중 "토요일"을 각각 "수요일"로 하고, 동항 동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선거일)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하다.

제37조제1항중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選擧權者"를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國內居住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를 "국내거주자[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제외한다]로서"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3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를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제1항제4호"를 "제3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제1항제2호의 자중"을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항제3호의 병원"을 "병원"으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제39조제1항 및 제4항중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閱覽 또는 供覽할수 있다"를 "열람할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장소와 기간을"을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로 한다.

①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중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와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選舉事務長(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의 選擧事務長을 제외한다)"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

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 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選擧(自治區·市·郡議員選擧를 제외한다)"를 "선거"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 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 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 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自 治區・市・郡議員選舉의 候補者 또는 無所屬候補者"를 "무소속후 보자"로 하며, 동항제5호중 "自治區・市・郡議員選舉"를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①관할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 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 전단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각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地域區市·道議員"을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후단중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를 "비례대표지방의원후보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者 또는 無所屬候補者"를 "무소속후보자"로 한다.

제49조제4항제2호중 "公職者倫理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公職者등의兵役事項申告및公開에관한法律"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을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한한다]·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6호 전단중 "초·중

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을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로, 후단중 "제13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4호의 인쇄물, 제64조(선전벽보)의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을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4호의인쇄물,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한다.

제4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8항중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다정을"을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를"로 하며, 동조제9항중 "公職者倫理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경찰관서의 장은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 제6조(수사자료표의조회 및 회보제한등)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경찰관서의 장은"으로 하며, 동조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5항중 "공개방법,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제출·발송·서식, 소명자료의서식 및 분량 기타"를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로 한다.

⑤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호의 서류를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예

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본문중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로, 단서의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없으며, 같은 選擧에 2人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登錄申請한 候補者에 대한 추천만을 有效로 한다."를 "없다."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하고, 동항제2호중 "第1項"을 "제1항 본문"으로, "같은 조"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로 하며, 동항제8호중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3항"을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國家公務員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地方公務員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단서중 "政黨法第6條(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第1號 但書"를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로 하며, 동항 제4호중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農業協同組合法·水産業協同組合法・山林組合法・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을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地方公企業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政黨法 第6條第2號"를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제2호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6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
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
 -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

- 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 ④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 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
-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①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 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 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

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 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 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의6(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제59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6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하나"로, 단서중 "第9號"를 "제8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같이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國家公務員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地方公務員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단서중 "政黨法 第6條(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第1號 但書"를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로 하고, 동항제9호를 삭제한다.

-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제60조의2제1항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전 120일"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 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240일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전 120일
 -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제60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제3항"을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 본문"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제60조의3 제목중 "예비후보자"를 "예비후보자 등"으로 하고, 종전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 의한"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본문중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본문 및 단서의 "주는 행위"를 각각 "주면서 지지를호소하는 행위"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②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직접 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지를 호소할 수 있다.
-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 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 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

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 간개시일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⑥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市·道마다"를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地域區市·道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議員選舉"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며, 동조제5항중 "食品衛生法"을 "「식품위생법」"으로, "公衆衛生管理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第65條(選擧公報)의 選擧公報·第66條(小型印刷物)의 小型

印刷物"을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중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하며, 동조제3항제3호중 "소장 및 회계책임자"를 "소장"으로한다.

-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240일
- 2.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전 120일
- 3.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제62조제2항제7호중"自治區・市・郡議員選擧"를 "지역구자치구・ 시・군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 제62조제3항중 "3인 이내"를 "다음 각호에 따른 수"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제2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8호"로한다.

- 1. 대통령선거
 - 10인 이내
- 2. 시·도지사선거
 - 5인 이내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인 이내
-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인 이내

제64조제1항 전단중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載順位등)第2項"을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으로, "初・中等教育法 및 高等教育法에서 인정하는 正規學歷"을 "정규학력"으로, 후단중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單을"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候補者(大統領選擧의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4色度(白色은 1色度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작성하여"를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작성하여"로 하며, 동조제5항 단서중 "이유로 하여 書面에 의한 異議提起가 있는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5조(선거공보) ①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 구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이내로 한다.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선거공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7항 에서 같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제51조(추가등록)의 규정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후 2일]까지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안의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전단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

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이를 전단형선거공보와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매세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⑥구·시·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 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 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 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 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각 재 산총액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 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 다) 및 완납시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 ⑧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 선거공보 원고를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한 후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선거공보를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의 인쇄비용은 후보자가부담하여야 한다.
- ⑨제64조(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

⑩선거공보의 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 및 공고, 후보자정 보공개자료의 게재방법과 선거공보의 원고 및 인쇄비용의 산 정·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 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후보자를 제외하고는"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①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 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마다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수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 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더라도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
- 국회의원선거
 20인 이내
- 3. 자치구·시·군의 장선거10인 이내
- 4. 시·도의원선거5인 이내
- 5. 자치구·시·군의원선거3인 이내

제6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중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 法律"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 의 정의)제2호의 규정"로 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4항의 "放送法"을 "「방송법」"으로 한다. 제71조제12항의 "放送法"을 각각 "「방송법」"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選擧區(地域區國會議員選擧와 地域區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해당 地域區)單位"를 "선거구단위"로 한다.

제79조제1항 전단중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 시 · 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演說員 [大統領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에 한하며, 候補者(大統領選擧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각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人을 말한다. 이 하 이 條에서 "候補者등"이라 한다]"를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또는 연설원[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 2 인(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로 하고、동조제3항제3호중"地域區市・道議員選舉、自治區・市・郡 議員選舉"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며. 동조제4항중 "第3 項의 확성장치는 정지된 상태에서"를 "제3항의 확성장치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第65條(選擧公報)의 選擧公報, 第66條(小型印 刷物)의 小型印刷物"을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로 하며, 동 조제8항중 "교체할 수 없다."를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로 하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82조제1항 본문중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一般日刊新聞社등 言論機關(이하 이 條에서 "言論機關"이라 한다)은"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8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지역구국회의 원선거"를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로 한다.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시 · 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제82조의2제4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 나목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제2호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제2호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시·도지사선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로 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2조의2제5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1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 (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한다)"로 하고, 동조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대담·토론회"로, 단서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로 하며, 동조제11항(종전의 제9항) 전단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8항"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에 있어서 제10항"으로, "이용하여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로, 후단중 "국가"를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조제12항(종전의 제10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대담·토론회"로 하며, 동조제13항(종전의제11항)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대담·토론회"로 한다.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 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 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제82조의3제2항중 "제5항 내지 제7항·제8항 본문·제10항 및 제11항"을 "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으로한다.

제82조의4제1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82조의5제2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제82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 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 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한다.

③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 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제3항의 경우 그 분담내역을 포함한다)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⑥광고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제1항중 "公職者倫理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代表者 또는 國民健康保險法에 의하여 설립된 國民健康保險公團의 常勤 任·職員은 다음 各號의 1"을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각호의 1에 정하는 기간 동안"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 1. 종전의 대상 · 방법 · 범위 · 시기 등을 확대 · 변경하는 경우
-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 5.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8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89조제1항 단서중 "政治資金에關한法律"을 "「정치자금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제3항 단서중 "정지된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중 "宣傳壁報·第65條(選擧公報)의 選擧公報 및第66條(小型印刷物)의 小型印刷物을"을 "선전벽보 및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를"로 하며, 동항제4호중 "自治區·市·郡議員選舉"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93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定期 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2條(用語의 定義)의 規定에 의한 定 期刊行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중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중 "없으며,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 및주민자치위원회는 選擧期間중 會議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개최할 수 없다."를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제10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2인"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으 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 각호 외의 부 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5조제2항의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본문 단서에 규정된 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제1항중 "選擧期間開始日"을 "선거일전 6일"로 한다.

제109조제1항 단서중 "인터넷(광고를 제외한다)"를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제82조의7(인터넷 광고)의 규정에 따른 광고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본문중 "인터넷 또는 電話(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

信裝置를 설치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를"을 "인터넷·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選擧區民을 포함한다"를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數量 기타"를 "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제112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

호 나목중 "재해구호법"을 "「재해구호법」"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의 "장 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호 라목의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자.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 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 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 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 를 제외한다.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중 "금품제공행위"를 "금품제공행위(지방 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 하 나목에서 같다)"로 하고, 동호 나목중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 를 "금품제공행위"로 하며, 동호 다목중 "자선행위 또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를 "자선행위"로 하고, 동호 라목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동항제5호중 "기타 위 각호의 1"을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 나"로 하며, 동조제5항중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를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로 ,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政治資金에關한法律"을 "「정치자금법」"으로 한다.

제117조중 "政治資金에關한法律 第12條(寄附의 制限)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 한다.

제119조제1항 전단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 법에서 "회계책임자"라 함은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 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제121조제1항제7호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제122조의2제1항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선거"로,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로, "말하며,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122조의2제1항제1호중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제2호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 2.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 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 3.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 4. 후보자등록기간중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된 수당・실비 또는 이 법

- 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 당·실비 그 밖의 비용
-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 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 6.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 7.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 의 비용
- 8.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 구입·제작비용
- 9. 시외전화ㆍ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및 정보이용요금
- 10.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제12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산정방법 기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 밖에"로 한다.

2.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제123조 내지 1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5조의2제1항중 "第132條(收入과 支出報告書)第1項의 規定에의한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報告書"를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法에 규정된"을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이 法"을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로한다.

제136조를 삭제한다.

제137조제1항중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13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강·정책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16면 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제140조제1항중 "선거권"을 "투표권"으로 하고, 제2항중 "政黨法第10條의2(創黨集會의 公開)"를 "「정당법」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로 하며, 제3항중 "政黨法 第31條(公職選擧候補者의 추천)"을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로 한다.

제141조제3항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을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으로,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5조제2항중"政治資金에關한法律"을"「정치자금법」"으로 한다.

제146조제2항 단서중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의원선거"를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인을 둔다.

- ②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③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인접한"을 "인접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選擧管理委員會委員 및 參觀人의 좌석 기타"를 "참 관인의 좌석 그 밖의"로 하고, 동조제8항 본문중 "投票區選擧管理 委員會"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제9항 각호 외의 부분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①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7조제9항제1호중 "國家公務員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地方公務員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銀行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48조제2항중 "분포[第38條(不在者申告)第1項第5號에 해당하는 地域의 분포를 포함한다]"를 "분포"로,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에 도"를 "투표관리관에게도"로 하고, 동조제4항중 "不在者投票所의 投票管理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擧管理 委員會가 不在者投票所마다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중"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당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149조제1항중 "第38條(不在者申告)第1項第3號의 不在者申告人이 소속한 機關 또는 施設(船舶을 제외한다)"를 "부재자신고인이소속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을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나 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기호와 政黨名을 표시하며, 自治區·市·郡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의 記號와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그 政黨이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경우 政黨別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며"를 "같은 의석을 가

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며"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0조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 한 정당

제151조제1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⑧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3조제1항중 "投票案內文을 작성하여"를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投票區選擧管理 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투표관 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 (이하 "부재자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부재자투표의 접수에필요한 부재자신고인의 거소·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전 9일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용 봉투 및 회송용 봉투의 규격·게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5조제3항 본문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을 "투표관리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을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56조제3항 후단중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을 "투표관리관은"

으로 한다.

제157조제1항중 "확인받은 후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앞에서"를 "확인받은 후"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은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 송부된 投票用紙를봉합하여 보관하였다가"를 "투표관리관은"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을 "투표관리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과 投票參觀人"을 "투표참관인"으로 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중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을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부재자투표관리위원등"이라한다)"로, "발송용 겉봉투"를 "발송용 봉투"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不在者投票管理委員앞에 가서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個所에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한 것임을 확인하는 確認印을 捺印받아 不在者投票管理委員과"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로 한다.

제1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居所投票者[第 148條(不在者投票所의 設置) 및 第149條(機關・施設안의 不在者投票所)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하는 者를 제외한다]"를 "거소투표자"로,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居所・姓名을 기재한후 本人의 私印을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個所에捺印(拇印 또는 署名을 제외한다)하여 登記郵便으로 발송하여야한다"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한다"를 하며, 동조제6항중 "確認印의 規格・날인방법 기타"를 "무효투표지의 처리방법 및 신분증명서의 종류 그 밖에"로 한다.

②부재자투표관리위원등은 부재자투표기간중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후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고 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160조를 삭제한다.

제161조제1항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을 "투표관리관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投票參觀人은"을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동조제8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을 "투표관리관은"으로

하고, 동조제9항 및 제11항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을 "투표 관리관은"으로 하며, 동조제11항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②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2일까지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2조제1항중 "選擧管理委員會는"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당해 區· 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각각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 이 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본다.

제163조제1항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투표관리관, 읍·면· 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職員"을 "직원·투표관 리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64조제1항중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委員 또는 職員"을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 및 "委員長"을 각각 "투표관리관"으로 하

며, 동조제4항 후단중 "이 경우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委員"은 "不在者投票管理委員"으로, "職員"은"은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委員 또는 職員"을 각각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은 "투표관리관"으로 하며, 동조제5항 후단중 "이 경우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委員"은 "不在者投票管理委員"으로, "職員"은"은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산무원"은"으로 한다.

제167조제2항 단서중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社"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사"로 한다.

제168조제1항중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은 "투표관리관"으로, "投票參觀人의 參觀하에 출석한 委員 全員과 함께"를 "투표참 관인의 참관하에"로, "封鎖·封印을 거부하는 委員이나 參觀을"을 "참관을"로 한다.

제1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70조제1항중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을 "투표관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가"를 "투표관리관이"로 한다.

제171조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을 "투표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72조제2항 및 제4항중 "選擧管理委員會法"을 각각 "「선거관리위원회법」"으로 한다.

제17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6조제1항중 "회송용 겉봉투의 確認印 또는 居所投票者의 私 印捺印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을 "이를"로 한다.

제1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78조제2항 본문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79조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회송용 겉봉투"를 "회송용 봉투"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제179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 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 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제181조제2항중"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를 "무소속후보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184조 본문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로 한다.

제185조제2항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로 한다.

제190조의 제목을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自治區·市·郡議員"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으로, "自治區·市·郡議員選擧"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며, 동조제3항중 "地域區市·道議員 및自治區·市·郡議員"을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地方議會議員候補者"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 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 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 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 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 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 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 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

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제192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항 본문중 "比例代表市·道議員"을 각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단서중 "國會法"을 각각 "「국회법」"으로, 본문의 "地方自治法"을 "「지

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94조의 제목중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90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또는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을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比例代表市·道議員樓補者名簿"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전거"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의2"로 한다.

제195조제1항제2호중 "自治區・市・郡議員選舉"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197조제3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각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을 "제190조의2"로, "비례대표시·도의원"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98조제3항중 "比例代表市・道議員"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으로 한다.

제200조제1항중"地域區市·道議員과 自治區·市·郡議員"을"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比例代表市·道議員"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를"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로,"市·道議員"을"지방의회의원"으로, 단서의"解散된 때"를"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로 한다.

제201조제1항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전 4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선거일공고일"로 본다.

제203조제3항중 "토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제205조제1항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로 한다.

제207조의 제목중 "小型印刷物"을 "선거공보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小型印刷物의 일부"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로, "小型印刷物은"을 "책자형 선거공보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 및 후단중 "小型印刷物을"을 각각 "책자형 선거공보를"로 한다.

제211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 거의 투표용지는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당 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 음할 수 있다.

제212조중 "하나의 속봉투·회송용 겉봉투 및 발송용 겉봉투"를 "하나의 회송용 봉투·발송용 봉투"로 한다.

제213조제1항중 "政黨마다 4人을, 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는"을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를 각각 "무소속후보자"로한다.

②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에 있어 제161조제4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후보자별"은 "정당·후보자별"로

본다.

제215조제1항 본문과 단서 및 동조제2항중 "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를 각각 "무소속후보자"로 한다 제216조제1항중 "自治區·市·郡議員選擧"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개표진행"을 "개표진행"으로 한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 관리관은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인으로 하여금 자치구 • 시 · 군의원 및 자치구 · 시 · 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 · 도의원 및 시 · 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 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 되. 선거인은 자치구 · 시 · 군의원 및 자치구 · 시 · 군의 장의 선 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포함한다)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 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시 · 도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후 각각 선거별(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포함한다)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는 당해 선거의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본다.

제217조중 "投票錄은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 單位로, 開票錄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單位로"를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으로 한다.

제219조제2항중 "第190條(地方議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을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내지"로 한다.

제221조제1항중 "行政審判法"을 각각 "「행정심판법」"으로, "民事訴訟法"을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223조제1항중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의 再配分)第4項"을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으로 한다.

제227조중 "行政訴訟法"을 "「행정소송법」"으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229조 "民事訴訟등印紙法"을 각각 "「민사소송등인지법」"으로

하다.

제230조제5항중 "職員"을 "직원(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 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 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 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 속한 자
-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⑦제6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 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중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를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내지 제5항·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한다.

제23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 금한 자
-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 도록 강요한 자
- ⑥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239조 각호 외의 부분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選擧人名簿의 閱覽·供覽을 방해하거나 選擧人名簿의 閱覽·供覽"을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으로 한다.

제240조제3항중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13항의 후보자정보공개 자료·제64조(宣傳壁報)의 宣傳壁報·第65條(選擧公報)의 選擧公 報·第66條(小型印刷物)의 傳單型 小型印刷物이나 책자형 소형인 쇄물"을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 공보"로 한다.

제2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 선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제1항중 "30日"을 "180일"로 한다.

제2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제252조제1항중 "第94條(放送・新聞등에 의한 廣告의 금지)"를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5항·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1항 후단"을 "제13항 후단"으로 한다.

제25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第65條(選舉公報)第1項, 第66條(小型印刷物)第1項·第2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宣傳壁報·選擧公報나 小型印刷物을"을 "제65조(선거공보)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벽보 또는 선거공보를"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전송자의 명칭"을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로 한다.

- 2.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
-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선운동

을 한 자

제256조제1항중 "第1項"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중 "各目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하고, 동호카목의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하며, 동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중 "各目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하고, 동호 나목중 "第46條(名簿寫本의 교부)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교부받은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을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으로 한다.

제256조제2항제3호 각목 외의 부분중 "各目의 1"을 "각목의 어느하나"로 하고, 동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의 결정

- 5. 제64조(선전벽보)제7항[제65조(선거공보)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벽보 또는 선거공보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 7.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터넷광고 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9조중 "罪를 범할"을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 를 범할"로 한다.

제260조중 "죄를 범한"을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한"으로 한다.

제261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 다목중 "小型印刷物에"를 "선거공보에"로, "小型印刷物을"을 "선거공보를"로 하며, 동호 라목중 "後段"을 "후단 및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 3항 후단"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3.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제261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 각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하나"로 하며, 동호 사목중 "당사"를 "당사 또는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의 사무소"로 하고, 동조제8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제262조제2항중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를 "읍·면·동선거관리위 원회"로 한다.

제262조의2제1항중 "국민투표법"을 "「국민투표법」"으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으로 한다.

제262조의3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63조제1항 본문중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하고, 동조제2항전단중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제2항제2호"를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로,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

자"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한다.

제264조중 "罪"를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로 한다.

제265조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한다.

제265조의2제1항 전단중 "당선이 무효로 된 자"를 "당선이 무효로 된 자(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로, "비 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26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를 "죄(당 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 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로, "各 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66조제1항제2호중 "第9號"를 "제8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公職者倫理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私立學校法"을 "「사립학교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放送法"을 "「방송법」"으로 한다.

제26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9조 본문중 "法院組織法"을 "「법원조직법」"으로, "軍事法院

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제271조제1항 후단중 "行政代執行法"을 각각 "「행정대집행법」" 으로 한다.

제272조제1항중"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刑事訴訟法"을 "「형사소송법」"으로하며, 동조제6항중 "郵便法 제3조·제50조·제51조·제51조의2,郵便換法 제19조 및 通信秘密保護法 제3조"를 "「우편법」 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제50조(우편취급거부의 죄)·제51조(신서의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 「우편환법」 제19조(비밀의 보장)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보호)"로 하고, 동조제7항 전단 및 후단중 "郵便法"을 각각 "「우편법」"으로, 후단의 "通信秘密保護法 第16條(罰則)"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으로 한다.

제272조의2제1항중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로 한다.

제272조의3제1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73조제2항 및 제3항중 "刑事訴訟法"을 각각 "「형사소송법」"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第261條(檢事長 또는 支廳長의 處理)"를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로 한다.

제274조의 제목중 "申告등의 時間"을 "신고 등"으로 하고, 종전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大統領令 또는 中央選擧管 理委員會規則"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을 당해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7조의2제1항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278조제4항중 "가지는"을 "구성한"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보관 기타"를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로 한다.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 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 영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서 인용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은 각 인용법률의 시행전까지는 이 법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전 7월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시·도의회는 선거일전 5월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 야 한다.

②시·도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조정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그 조례안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시·도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등의 비용 반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

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설치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 ②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중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 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이 법 시행일에 모두 해촉된 것 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전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 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제9조(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을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2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公職選擧果選擧不正防止法에 의한 투표구"를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의단서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 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 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 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제4조제4항 단서외의 부분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投票區를 관할하는 邑·面·洞의 區域안에"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로, 동항 단서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投票區를"을 "읍·면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을"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12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외의 부분 및 제11조제3항중 "투표구선거 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4항 단서중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을 "「공직 선거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各級選擧管理委員會(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외한다)"를 각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한다.

제15조제14항중 "國家公務員法"을 "「국가공무원법」"으로하고, 동조 제17항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중 "國家公務員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제16조제2항중 "銀行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 636)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지역구 : 96)	
종로구 제1선거구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무악동, 교남동, 가회동	
종로구 제2선거구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명륜3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창신제3동, 숭인제1동, 숭인제2동	
중구 제1선거구	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345가동, 신당제1동, 신당제5동, 신당제6동, 황학동, 중림동	
중구 제2선거구	회현동, 필동, 장충동, 신당제2동, 신당제3동, 신당제4동	
용산구 제1선거구	남영동, 청파제1동, 청파제2동, 원효로제1동, 원효로제2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제1동, 한강로제2동, 한강로제3동, 이촌제1동, 이촌제2동	
용산구 제2선거구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제1동, 이태원제2동, 한남제1동, 한남제2동, 서빙고동, 보광동	
성동구 제1선거구	금호1가동, 금호2가동, 금호3가동, 금호4가동, 옥수제1동, 옥수제2동	
성동구 제2선거구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성동구 제3선거구	왕십리제1동, 왕십리제2동, 도선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성동구 제4선거구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용답동	
광진구 제1선거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광진구 제2선거구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광진구 제3선거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광진구 제4선거구	자양제3동, 노유제1동, 노유제2동, 화양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동대문구 제1선거구	신설동, 용두제1동, 용두제2동, 제기제1동, 제기제2동, 청량리제1동, 청량리제2동
동대문구 제2선거구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이문제3동
동대문구 제3선거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전농제3동, 전농제4동, 답십리제1동, 답십리제3동, 답십리제5동
동대문구 제4선거구	답십리제2동, 답십리제4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장안제3동, 장안제4동
중랑구 제1선거구	면목제3동, 면목제4동, 면목제7동, 면목제8동, 망우제3동
중랑구 제2선거구	면목제1동, 면목제2동, 면목제5동, 면목제6동, 상봉제2동
중랑구 제3선거구	중화제1동, 중화제2동, 중화제3동, 묵제1동, 묵제2동
중랑구 제4선거구	상봉제1동, 망우제1동, 망우제2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성북구 제1선거구	성북제1동, 성북제2동, 동소문동, 삼선제1동, 삼선제2동, 동선제1동, 동선제2동, 안암동, 보 문동
성북구 제2선거구	돈암제2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길음제2동
성북구 제3선거구	돈암제1동, 길음제3동, 종암제1동, 종암제2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월곡제3동, 월곡제4동, 상월곡동
성북구 제4선거구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제1동, 석관제2동
강북구 제1선거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강북구 제2선거구	수유제1동, 수유제4동, 수유제5동, 수유제6동
강북구 제3선거구	미아제1동, 미아제2동, 미아제67동, 미아제8동
강북구 제4선거구	미아제3동, 미아제4동, 미아제9동, 번제3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도봉구 제1선거구	창제1동, 창제4동, 창제5동
도봉구 제2선거구	쌍문제1동, 쌍문제3동, 창제2동, 창제3동
도봉구 제3선거구	쌍문제2동, 쌍문제4동, 방학제3동, 방학제4동
도봉구 제4선거구	방학제1동, 방학제2동, 도봉제1동, 도봉제2동
노원구 제1선거구	월계제1동, 월계제2동, 월계제4동
노원구 제2선거구	공릉제1동, 공릉제2동, 공릉제3동
노원구 제3선거구	하계제1동, 중계본동, 중계제1동, 중계제4동
노원구 제4선거구	하계제2동, 중계제2동, 중계제3동, 상계제6동, 상계제7동
노원구 제5선거구	상계제2동, 상계제3동, 상계제4동, 상계제5동
노원구 제6선거구	상계제1동, 상계제8동, 상계제9동, 상계제10동
은평구 제1선거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은평구 제2선거구	응암제4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 제3선거구	불광제3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진관내동, 진관외동
은평구 제4선거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대조동, 역촌제1동, 역촌제2동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제1동, 북아현제2동, 북아현제3동, 대신동, 창천동
서대문구 제2선거구	연희제1동, 연희제2동, 연희제3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홍제제4동
서대문구 제3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홍은제3동
서대문구 제4선거구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마포구 제1선거구	도화제2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마포구 제2선거구	아현제1동, 아현제2동, 아현제3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신공덕동, 도화제1동
마포구 제3선거구	창전동,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망원제1동
마포구 제4선거구	망원제2동, 연남동, 성산제1동, 성산제2동, 상암동
양천구 제1선거구	목제2동, 목제3동, 목제4동, 목제5동, 목제6동
양천구 제2선거구	목제1동, 신정제1동, 신정제2동, 신정제6동, 신정제7동
양천구 제3선거구	신월제1동, 신월제3동, 신월제4동, 신월제5동, 신월제7동
양천구 제4선거구	신월제2동, 신월제6동, 신정제3동, 신정제4동, 신정제5동
강서구 제1선거구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7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강서구 제2선거구	등촌제2동, 화곡본동, 화곡제4동, 화곡제5동, 화곡제6동, 발산제2동
강서구 제3선거구	가양제1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 제4선거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구로구 제1선거구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6동, 가리봉제1동, 가리봉제2동
구로구 제2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5동, 구로본동
구로구 제3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3동, 개봉본동
구로구 제4선거구	개봉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금천구 제1선거구	가산동, 독산제1동, 독산제2동, 독산제3동, 독산제4동, 독산본동
금천구 제2선거구	시흥제1동, 시흥제2동, 시흥제3동, 시흥제4동, 시흥제5동, 시흥본동
영등포구 제1선거구	영등포제1동, 도림제1동, 도림제2동, 문래제1동, 문래제2동, 신길제2동, 신길제3동
영등포구 제2선거구	영등포제2동, 영등포제3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영등포구 제3선거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7동
영등포구 제4선거구	신길제6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동작구 제1선거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4동, 본동
동작구 제2선거구	상도제3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동작구 제3선거구	상도제1동, 상도제5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동작구 제4선거구	흑석제1동, 흑석제2동, 흑석제3동, 동작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관악구 제1선거구	봉천본동, 봉천제1동, 봉천제4동, 봉천제8동, 봉천제9동, 봉천제10동, 신림제5동
관악구 제2선거구	봉천제2동, 봉천제3동, 봉천제5동, 봉천제6동, 봉천제7동, 봉천제11동, 남현동
관악구 제3선거구	신림제3동, 신림제4동, 신림제7동, 신림제8동, 신림제11동, 신림제12동, 신림제13동
관악구 제4선거구	신림본동, 신림제1동, 신림제2동, 신림제6동, 신림제9동, 신림제10동
서초구 제1선거구	작원동, 반포제1동, 반포제3동, 반포제4동
서초구 제2선거구	반포본동, 반포제2동, 방배본동, 방배제1동, 방배제4동
서초구 제3선거구	서초제2동, 서초제4동, 양재제1동, 양재제2동, 내곡동
서초구 제4선거구	서초제1동, 서초제3동, 방배제2동, 방배제3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강남구 제1선거구	신사동, 논현제1동, 논현제2동, 압구정제1동, 압구정제2동, 청담제1동, 청담제2동
강남구 제2선거구	삼성제1동, 삼성제2동, 역삼제1동, 역삼제2동, 도곡제1동, 도곡제2동
강남구 제3선거구	대치제1동, 대치제2동, 대치제3동, 대치제4동, 개포제3동, 일원제2동
강남구 제4선거구	개포제1동, 개포제2동, 개포제4동, 일원본동, 일원제1동, 수서동, 세곡동
송파구 제1선거구	풍납제1동, 풍납제2동, 잠실제4동, 잠실제6동
송파구 제2선거구	방이제1동, 방이제2동, 오륜동, 송파제1동, 송파제2동
송파구 제3선거구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제1동, 잠실제2동, 잠실제3동, 잠실제5동, 잠실제7동
송파구 제4선거구	석촌동, 가락제1동, 문정제2동
송파구 제5선거구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제2동, 문정제1동
송파구 제6선거구	거여제1동, 거여제2동, 마천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강동구 제1선거구	강일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암사제4동
강동구 제2선거구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길제1동, 길제2동
강동구 제3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천호제4동
강동구 제4선거구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부산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38)		
중구 제1선거구	중앙동, 대청동, 영주제1동, 영주제2동		
중구 제2선거구	동광동, 보수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서구 제1선거구	동대신제1동, 동대신제2동, 동대신제3동, 서대신제1동, 서대신제2동, 서대신제3동, 서대신제4동, 부민동		
서구 제2선거구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제1동, 남부민제2동, 남부민제3동, 암남동		
동구 제1선거구	초량제1동, 초량제2동, 초량제3동, 초량제4동, 초량제6동, 수정제1동, 수정제2동, 수정제3동, 수정제4동		
동구 제2선거구	수정제5동, 좌천제1동, 좌천제4동, 범일제1동, 범일제2동, 범일제4동, 범일제5동, 범일제6동		
영도구 제1선거구	남항동, 영선제1동, 영선제2동, 신선제1동, 신선제2동, 신선제3동, 봉래제1동, 봉래제3동, 봉래제4동, 청학제1동		
영도구 제2선거구	청학제2동, 동삼제1동, 동삼제2동, 동삼제3동		
부산진구 제1선거구	부전제1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산진구 제2선거구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3동, 당감제4동		
부산진구 제3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전포제3동, 가야제1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범천제4동		
부산진구 제4선거구	가야제2동, 가야제3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동래구 제1선거구	수민동, 복산동, 명륜제1동, 명륜제2동, 안락제1동, 안락제2동, 명장제1동, 명장제2동		
동래구 제2선거구	온천제1동, 온천제2동, 온천제3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직제3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남구 제1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2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남구 제2선거구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남구 제3선거구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제1동, 우암제2동
남구 제4선거구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4동
북구 제1선거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북구 제2선거구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해운대구 제1선거구	우제1동, 우제2동, 중제1동,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해운대구 제2선거구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반송제3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사하구 제1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사하구 제2선거구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사하구 제3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사하구 제4선거구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금정구 제1선거구	서제1동, 서제2동, 서제3동, 서제4동, 금사동, 부곡제1동, 부곡제2동, 부곡제3동, 부곡제4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금정구 제2선거구	장전제1동, 장전제2동, 장전제3동, 남산동, 구서제1동, 구서제2동, 금성동
강서구 제1선거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강서구 제2선거구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
연제구 제1선거구	거제제1동, 거제제2동, 거제제3동, 거제제4동, 연산제2동, 연산제4동, 연산제5동
연제구 제2선거구	연산제1동, 연산제3동, 연산제6동, 연산제7동, 연산제8동, 연산제9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수영구 제1선거구	남천제1동, 남천제2동, 광안제1동, 광안제2동, 광안제3동, 광안제4동
수영구 제2선거구	수영동, 망미제1동, 망미제2동, 민락동
사상구 제1선거구	삼락동, 모라제1동, 모라제2동, 모라제3동, 덕포제1동, 덕포제2동, 괘법동
사상구 제2선거구	감전제1동, 감전제2동, 주례제1동, 주례제2동, 주례제3동, 학장동, 엄궁동,
기장군 제1선거구	기장읍, 철마면
기장군 제2선거구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대구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26)	
중구 제1선거구	동인124가동, 동인3가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중구 제2선거구	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	
동구 제1선거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동구 제2선거구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동구 제3선거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공산동	
동구 제4선거구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서구 제1선거구	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평리2동, 평리4동, 평리5동, 평리6동, 상중이동	
서구 제2선거구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4동, 비산5동, 비산6동, 비산7동, 원대동, 평리1동, 평리3동	
남구 제1선거구	이천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2동, 대명5동	
남구 제2선거구	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	
북구 제1선거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노원12동, 노원3동	
북구 제2선거구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1동, 대현2동	
북구 제3선거구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태전2동, 구암동	
북구 제4선거구	관문동, 읍내동, 동천동, 관음동, 태전1동	
수성구 제1선거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황금1동, 황금2동	
수성구 제2선거구	만촌2동, 만촌3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성구 제3선거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수성구 제4선거구	파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달서구 제1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달서구 제2선거구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달서구 제3선거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달서구 제4선거구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달서구 제5선거구	성당1동, 성당2동, 감삼동, 두류1동, 두류2동, 두류3동
달서구 제6선거구	본리동, 본동, 송현1동, 송현2동
달성군 제1선거구	화원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달성군 제2선거구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28)	
중구 제1선거구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중구 제2선거구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동구 제1선거구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동구 제2선거구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남구 제1선거구	도화1동, 도화2동, 도화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남구 제2선거구	주안 2 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남구 제3선거구	숭의1동, 숭의2동, 숭의3동, 숭의4동, 용현1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4동	
남구 제4선거구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 제1선거구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연수구 제2선거구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남동구 제1선거구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남동구 제3선거구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5동	
남동구 제4선거구	만수1동, 만수4동, 만수6동, 장수 서창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부평구 제1선거구	부평1동, 부평4동, 부평5동, 부개1동, 부개2동, 일신동
부평구 제2선거구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산곡3동, 십정1동, 십정2동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1동, 갈산2동, 삼산동, 부개3동
부평구 제4선거구	청천1동, 청천2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계양구 제2선거구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양구 제4선거구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서구 제1선거구	검암 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검단1동, 검단2동
서구 제2선거구	신현 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강화군 제1선거구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강화군 제2선거구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 제1선거구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옹진군 제2선거구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광주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16)	
동구 제1선거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 산수2동
동구 제2선거구	지산1동, 지산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동, 지원2동
서구 제1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
서구 제2선거구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서구 제3선거구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남구 제1선거구	양림동, 사직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백운1동, 백운2동, 주월1동, 주월2동
남구 제2선거구	방림1동, 방림2동, 봉선1동,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북구 제1선거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신안동, 우산동, 문흥1동, 문흥2동
북구 제2선거구	풍향동, 문화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석곡동
북구 제3선거구	임동,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북구 제4선거구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북구 제5선거구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광산구 제1선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본량동, 삼도동
광산구 제2선거구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운남동, 하남동, 임곡동
광산구 제3선거구	월곡1동, 월곡2동, 우산동, 신흥동, 동곡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16)	
동구 제1선거구	중앙동, 인동, 효동, 대신동, 소제동, 홍도동, 삼성1동, 삼성2동, 산내동	
동구 제2선거구	신흥동, 대동, 자양동,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청동	
동구 제3선거구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1동, 성남2동	
중구 제1선거구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중구 제3선거구	유천1동, 유천2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서구 제1선거구	복수동, 도마2동, 정림동,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서구 제2선거구	도마1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서구 제3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서구 제4선거구	둔산1동, 둔산2동, 삼천동	
서구 제5선거구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성구 제1선거구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동	
유성구 제2선거구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대덕구 제1선거구	오정동, 대화동, 법1동, 법2동	
대덕구 제2선거구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대덕구 제3선거구	회덕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16)
중 구 제1선거구	학성동, 복산1동, 복산2동, 북정동, 옥교동, 성남동
중 구 제2선거구	반구1동, 반구2동, 병영1동, 병영2동, 약사동
중 구 제3선거구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남 구 제1선거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남 구 제2선거구	무거1동, 무거2동, 옥동
남 구 제3선거구	달동, 삼산동, 야음3동
남 구 제4선거구	야음1장생포동, 야음2동, 선암동
동 구 제1선거구	방어동, 화정동, 대송동
동 구 제2선거구	일산동, 전하1동, 전하2동, 전하3동
동 구 제3선거구	남목1동, 남목2동, 남목3동
북 구 제1선거구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북 구 제2선거구	농소 2 동, 농소3동
북 구 제3선거구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울주군 제1선거구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울주군 제2선거구	범서읍, 청량면, 웅촌면
울주군 제3선거구	언양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경기도의회의원(지역구 : 108)
수원시 제1선거구	영화동, 연무동, 조원1동, 조원2동, 송죽동
수원시 제2선거구	파장동, 율천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수원시 제3선거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제4선거구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
수원시 제5선거구	팔달동, 남향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신안동
수원시 제6선거구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수원시 제7선거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이의동
수원시 제8선거구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
성남시 제1선거구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수진1동, 수진2동, 단대동
성남시 제2선거구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성남시 제3선거구	성남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
성남시 제4선거구	중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성남시 제5선거구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성남시 제6선거구	수내1동, 수내2동, 서현1동, 서현2동, 판교동, 운중동
성남시 제7선거구	정자1동, 정자2동, 금곡1동, 금곡2동
성남시 제8선거구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고양시 제1선거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고양시 제2선거구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 제3선거구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행신1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 제4선거구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고양시 제5선거구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고봉동
고양시 제6선거구	백석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양시 제7선거구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탄현동
고양시 제8선거구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부천시 제1선거구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 제2선거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부천시 제3선거구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부천시 제4선거구	중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 제5선거구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부천시 제6선거구	소사본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부천시 제7선거구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부천시 제8선거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안양시 제1선거구	안양1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안양9동
안양시 제2선거구	안양2동, 석수1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박달2동
안양시 제3선거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안양시 제4선거구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안양시 제5선거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갈산동
안양시 제6선거구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신촌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안산시 제1선거구	사1동, 사2동, 본오3동
안산시 제2선거구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안산시 제3선거구	일동, 이동, 성포동
안산시 제4선거구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안산시 제5선거구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안산시 제6선거구	와동, 선부3동
안산시 제7선거구	고잔1동, 초지동
안산시 제8선거구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
용인시 제1선거구	포곡면,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용인시 제2선거구	기흥읍
용인시 제3선거구	구성읍, 죽전1동, 죽전2동
용인시 제4선거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동천동, 상현동, 성복동
의정부시 제1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의정부시 제2선거구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시 제3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의정부시 제4선거구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남양주시 제1선거구	와부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남양주시 제2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시 제3선거구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남양주시 제4선거구	진건읍, 퇴계원면, 지금동, 도농동
평택시 제1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평택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통복동, 세교동
평택시 제3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읍, 현덕면
평택시 제4선거구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광명시 제1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철산1동, 철산2동
광명시 제2선거구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4동
광명시 제3선거구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
광명시 제4선거구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시흥시 제1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과림동
시흥시 제2선거구	신현동, 매화동, 목감동, 연성동
시흥시 제3선거구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시흥시 제4선거구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군포시 제1선거구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군포시 제2선거구	산본2동, 제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화성시 제1선거구	태안읍, 봉담읍, 정남면, 동탄면
화성시 제2선거구	우정읍,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장안면, 향남면, 양감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남양동
파주시 제1선거구	금촌1동, 금촌2동, 월롱면, 탄현면, 교하읍 조리읍
파주시 제2선거구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진동면
이천시 제1선거구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
이천시 제2선거구	장호원읍, 부발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구리시 제1선거구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구리시 제2선거구	교문2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김포시 제1선거구	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풍무동, 고촌면
김포시 제2선거구	통진읍, 양촌면,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포천시 제1선거구	포천동, 선단동, 군내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관인면
포천시 제2선거구	소홀읍, 내촌면, 가산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광주시 제1선거구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광주시 제2선거구	오포읍, 초월면, 실촌읍, 도척면
안성시 제1선거구	공도읍,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고삼면, 안성3동,
안성시 제2선거구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안성1동, 안성2동,
하남시 제1선거구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춘궁동, 감북동
하남시 제2선거구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풍산동, 초이동
의왕시 제1선거구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의왕시 제2선거구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양주시 제1선거구	은현면, 남면,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양주시 제2선거구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오산시 제1선거구	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오산시 제2선거구	대원동, 남촌동, 초평동
여주군 제1선거구	여주읍, 북내면, 강천면
여주군 제2선거구	점동면, 가남면, 능서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양평군 제1선거구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양평군 제2선거구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제면, 용문면 개군면
동두천시 제1선거구	생연2동, 불현동, 상패동
동두천시 제2선거구	생연1동,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과천시 제1선거구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과천시 제2선거구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가평군 제1선거구	가평읍, 북면
가평군 제2선거구	설악면, 청평면, 상면, 하면
연천군 제1선거구	연천읍,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연천군 제2선거구	전곡읍, 청산면, 백학면, 장남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강원도의회의원(지역구 : 36)
춘천시 제1선거구	신북읍, 동면, 동산면, 북산면, 동내면,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석사동, 신사우동
춘천시 제2선거구	신동면, 남면, 서면, 사북면, 남산면,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효자1동, 효자 2동, 효자3동, 퇴계동, 강남동
원주시 제1선거구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봉산동
원주시 제2선거구	소초면, 귀래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행구동, 무실동, 반곡관설동
강릉시 제1선거구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초당동, 송정동,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강릉시 제2선거구	주문진읍, 사천면, 연곡면, 교1동, 교2동, 포남1동, 포남2동, 경포동
동해시 제1선거구	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북평동, 삼화동
동해시 제2선거구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망상동
태백시 제1선거구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태백시 제2선거구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속초시 제1선거구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청호동
속초시 제2선거구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
삼척시 제1선거구	도계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 남양동, 성내동
삼척시 제2선거구	원덕읍, 근덕면, 노곡면, 가곡면, 교동, 정라동
홍천군 제1선거구	홍천읍, 북방면
홍천군 제2선거구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내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횡성군 제1선거구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
횡성군 제2선거구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강림면
영월군 제1선거구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영월군 제2선거구	북면, 남면, 서면, 주천면, 수주면
평창군 제1선거구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평창군 제2선거구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정선군 제1선거구	정선읍,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정선군 제2선거구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철원군 제1선거구	철원읍, 동송읍
철원군 제2선거구	김화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화천군 제1선거구	화천읍, 간동면
화천군 제2선거구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양구군 제1선거구	양구읍
양구군 제2선거구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인제군 제1선거구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인제군 제2선거구	남면, 기린면, 상남면
고성군 제1선거구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고성군 제2선거구	거진읍, 현내면
양양군 제1선거구	양양읍, 서면, 강현면
양양군 제2선거구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충청북도의회의원(지역구 : 28)	
청주시 제1선거구	중앙동,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청주시 제2선거구	성안동, 탑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청주시 제3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창동, 모충동, 성화개신죽림동	
청주시 제4선거구	수곡제1동, 수곡제2동, 산미분장동	
청주시 제5선거구	운천 신봉동, 복대제1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청주시 제6선거구	복대제2동, 가경동, 강서제1동	
충주시 제1선거구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이류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가금면, 성내 충인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 직동, 달천동, 봉방동, 칠금 금능동	
충주시 제2선거구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교현안림동, 교현2동, 용산동, 연수동, 목행용탄동	
제천시 제1선거구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 영천동	
제천시 제2선거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 동현동, 신백 두학동, 화산동	
청원군 제1선거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청원군 제2선거구	내수읍,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오창면, 북이면	
보은군 제1선거구	보은읍,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보은군 제2선거구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	
옥천군 제1선거구	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옥천군 제2선거구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영동군 제1선거구	영동읍,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영동군 제2선거구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진천군 제1선거구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진천군 제2선거구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괴산군 제1선거구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소수면, 불정면
괴산군 제2선거구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증평군 제1선거구	증평읍
증평군 제2선거구	도안면
음성군 제1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음성군 제2선거구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단양군 제1선거구	단양읍,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단양군 제2선거구	매포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충청남도의회의원(지역구 : 34)		
천안시 제1선거구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		
천안시 제2선거구	중앙동, 문성동, 봉명동, 신용동, 신안동		
천안시 제3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부성동		
천안시 제4선거구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공주시 제1선거구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중학동, 산성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공주시 제2선거구	유구읍,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신관동		
보령시 제1선거구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대천1동, 대천2동		
보령시 제2선거구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		
아산시 제1선거구	염치읍,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아산시 제2선거구	송악면, 배방면,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서산시 제1선거구	대산읍,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성연면, 부춘동, 석남동		
서산시 제2선거구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동문동, 활성동, 수석동		
논산시 제1선거구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취암동, 부창동		
논산시 제2선거구	강경읍, 연무읍, 연산면, 채운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계룡시 제1선거구	두마면		
계룡시 제2선거구	남선면, 금암동		
금산군 제1선거구	금산읍,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금산군 제2선거구	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연기군 제1선거구	조치원읍, 동면, 전동면
연기군 제2선거구	서면, 남면, 금남면, 전의면, 소정면
부여군 제1선거구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석성면, 초촌면
부여군 제2선거구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서천군 제1선거구	장항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서천군 제2선거구	서천읍,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청양군 제1선거구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화성면, 비봉면
청양군 제2선거구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
홍성군 제1선거구	홍성읍, 홍북면,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
홍성군 제2선거구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예산군 제1선거구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예산군 제2선거구	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태안군 제1선거구	태안읍,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태안군 제2선거구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당진군 제1선거구	당진읍,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송산면
당진군 제2선거구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송악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구 : 34)	
전주시 제1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교동, 태평동, 중노송1동, 중노송2동, 남노송동, 동완산동, 서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전주시 제2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 제3선거구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효자3동, 효자4동	
전주시 제5선거구	서노송동, 진북1동, 진북2동,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전주시 제6선거구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군산시 제1선거구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중앙동, 중미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2동	
군산시 제2선거구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도면, 옥서면, 해신동, 월명동, 오룡동, 신풍동, 삼학동, 선양동, 나운1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익산시 제1선거구	오산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모현동, 송학동	
익산시 제2선거구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용동면, 마동, 남중동, 신동	
익산시 제3선거구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영등2동, 어양동, 삼성동	
익산시 제4선거구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동산동, 영등1동, 팔봉동	
정읍시 제1선거구	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감곡면, 연지동, 농소동,	
정읍시 제2선거구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수성동,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남원시 제1선거구	운봉읍, 주천면, 산동면, 이백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향교동, 도통동
남원시 제2선거구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동충동, 죽항동, 노암동, 금 동, 왕정동
김제시 제1선거구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검산동
김제시 제2선거구	만경읍, 죽산면, 백산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요촌동, 교동월촌동
완주군 제1선거구	삼례읍,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완주군 제2선거구	봉동읍, 용진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진안군 제1선거구	진안읍,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진안군 제2선거구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무주군 제1선거구	무주읍, 적상면, 부남면
무주군 제2선거구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장수군 제1선거구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수군 제2선거구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임실군 제1선거구	임실읍,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신덕면, 관촌면
임실군 제2선거구	청웅면, 오수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순창군 제1선거구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순창군 제2선거구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고창군 제1선거구	고창읍, 아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고창군 제2선거구	고수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부안군 제1선거구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백산면
부안군 제2선거구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전라남도의회의원(지역구 : 46)
목포시 제1선거구	산정3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남양동, 북교동, 무안동,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 충무동, 죽교동, 북항동
목포시 제2선거구	용당1동, 용당2동, 산정1동, 산정2동, 용해동, 이로동, 상동, 하당동, 신흥동,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여수시 제1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중앙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수시 제2선거구	한려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여서동, 문수동
여수시 제3선거구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시전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여수시 제4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쌍봉면, 여천동
순천시 제1선거구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도사동, 덕연동, 풍덕동
순천시 제2선거구	승주읍, 주암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왕조1동, 왕조2동,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중 앙동
나주시 제1선거구	남평읍,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나주시 제2선거구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도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광양시 제1선거구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광양시 제2선거구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담양군 제1선거구	담양읍,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담양군 제2선거구	봉산면, 고서면, 남면, 창평면,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
곡성군 제1선거구	곡성읍, 오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곡성군 제2선거구	삼기면, 석곡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구례군 제1선거구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구례군 제2선거구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용방면, 산동면
고흥군 제1선거구	고흥읍, 점암면, 영남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고흥군 제2선거구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보성군 제1선거구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보성군 제2선거구	벌교읍,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화순군 제1선거구	화순읍,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화순군 제2선거구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동복면, 남면, 동면
장흥군 제1선거구	장흥읍,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장흥군 제2선거구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강진군 제1선거구	강진읍,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강진군 제2선거구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해남군 제1선거구	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해남군 제2선거구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영암군 제1선거구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영암군 제2선거구	삼호읍,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무안군 제1선거구	무안읍,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무안군 제2선거구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청계면
함평군 제1선거구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함평군 제2선거구	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영광군 제1선거구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영광군 제2선거구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장성군 제1선거구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장성군 제2선거구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완도군 제1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완도군 제2선거구	금일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
진도군 제1선거구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진도군 제2선거구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신안군 제1선거구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압해면
신안군 제2선거구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 50)	
포항시 제1선거구	흥해읍,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포항시 제2선거구	중앙동, 학산동, 양학동, 죽도1동, 죽도2동, 용흥동, 두호동	
포항시 제3선거구	상대1동, 상대2동, 해도1동, 해도2동, 송도동, 효곡동, 대이동	
포항시 제4선거구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대보면, 청림동, 제철동	
경주시 제1선거구	감포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천북면, 황오동, 월성동, 용강동, 황성동, 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경주시 제2선거구	안강읍, 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현곡면, 강동면, 중부동, 성동동, 성건동, 탑정동, 황남동, 선도동	
김천시 제1선거구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감천면, 조마면, 용암동, 대신동, 지좌동	
김천시 제2선거구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성남동, 평화동, 양금동, 대곡동	
안동시 제1선거구	풍산읍, 북후면, 서후면,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옥 동, 송하동	
안동시 제2선거구	와룡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중구동, 명륜동, 용상동, 서구동, 법상동	
구미시 제1선거구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광평동	
구미시 제2선거구	형곡1동, 형곡2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구미시 제3선거구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구미시 제4선거구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영주시 제1선거구	풍기읍,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영주2동, 가흥2동	
영주시 제2선거구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가흥1동	
영천시 제1선거구	금호읍,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 북안면, 대창면, 서부동, 완산동, 남부동	
영천시 제2선거구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동부동, 중앙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상주시 제1선거구	함창읍, 사벌면, 중동면, 낙동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상주시 제2선거구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남원동, 동성동, 신흥동
문경시 제1선거구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점촌2동, 점촌4동, 점촌5동
문경시 제2선거구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점촌1동, 점촌3동
경산시 제1선거구	중앙동, 동부동, 서부1동, 서부2동, 남부동, 북부동, 중방동
경산시 제2선거구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압량면, 남천면
군위군 제1선거구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군위군 제2선거구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의성군 제1선거구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의성군 제2선거구	봉양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청송군 제1선거구	청송읍, 파천면, 진보면
청송군 제2선거구	부동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영양군 제1선거구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영양군 제2선거구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영덕군 제1선거구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영덕군 제2선거구	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청도군 제1선거구	청도읍,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청도군 제2선거구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고령군 제1선거구	고령읍, 덕곡면, 운수면, 쌍림면
고령군 제2선거구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성주군 제1선거구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월항면
성주군 제2선거구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칠곡군 제1선거구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칠곡군 제2선거구	북삼읍, 석적면, 약목면, 기산면
예천군 제1선거구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예천군 제2선거구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봉화군 제1선거구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봉화군 제2선거구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울진군 제1선거구	울진읍, 북면, 서면, 근남면, 죽변면
울진군 제2선거구	평해읍,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울릉군 제1선거구	울릉읍
울릉군 제2선거구	서면, 북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경상남도의회의원(지역구 : 48)
창원시 제1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팔룡동
창원시 제2선거구	명곡동, 봉림동, 용지동
창원시 제3선거구	반송동, 중앙동, 상남동, 웅남동
창원시 제4선거구	사파동, 가음정동, 성주동
마산시 제1선거구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월영동, 문화동, 반월동, 중앙동
마산시 제2선거구	완월동, 지산동, 동서동, 성호동, 교방동, 노산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마산시 제3선거구	내서읍, 회원1동, 회원2동, 석전1동, 석전2동, 회성동
마산시 제4선거구	양덕1동, 양덕2동, 합성1동, 합성2동, 구암1동, 구암2동, 봉암동
진주시 제1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 성지동, 봉안동, 가호동
진주시 제2선거구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진주시 제3선거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진주시 제4선거구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봉수동, 옥봉동, 초장동
진해시 제1선거구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진해시 제2선거구	석동,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통영시 제1선거구	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미수1동, 미수2동, 봉평동, 도남동
통영시 제2선거구	도천동, 명정동, 중앙동,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인평동
사천시 제1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사천시 제2선거구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룡동, 향촌동, 남양동
김해시 제1선거구	생림면, 상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김해시 제2선거구	대동면, 활천면,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 제3선거구	진영읍, 주촌면, 한림면, 내외동
김해시 제4선거구	장유면, 진례면, 회현동, 칠산서부동
밀양시 제1선거구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밀양시 제2선거구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가곡동
거제시 제1선거구	신현읍,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거제시 제2선거구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1동, 옥포2동
양산시 제1선거구	웅상읍, 동면, 상북면, 하북면
양산시 제2선거구	물금읍, 원동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의령군 제1선거구	의령읍,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용덕면
의령군 제2선거구	정곡면, 지정면,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궁유면, 유곡면
함안군 제1선거구	가야읍, 함안면, 군북면, 법수면, 여항면
함안군 제2선거구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칠원면, 산인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창녕군 제1선거구	창녕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창녕군 제2선거구	남지읍,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고성군 제1선거구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고성군 제2선거구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남해군 제1선거구	남해읍, 서면, 고현면, 설천면
남해군 제2선거구	이동면,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 남면, 창선면
하동군 제1선거구	하동읍,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 횡천면, 고전면
하동군 제2선거구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옥종면
산청군 제1선거구	산청읍,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산청군 제2선거구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함양군 제1선거구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백전면, 병곡면
함양군 제2선거구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거창군 제1선거구	거창읍,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거창군 제2선거구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합천군 제1선거구	합천읍,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 대병면, 용주면
합천군 제2선거구	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제주도의회의원(지역구 : 16)				
제주시 제1선거구	일도1동, 일도2동			
제주시 제2선거구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			
제주시 제3선거구	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			
제주시 제4선거구	용담1동, 용담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시 제5선거구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제주시 제6선거구	연동			
제주시 제7선거구	노형동			
서귀포시 제1선거구	송산동, 정방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귀포시 제2선거구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서귀포시 제3선거구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북제주군 제1선거구	한림읍, 한경면			
북제주군 제2선거구	애월읍, 추자면			
북제주군 제3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남제주군 제1선거구	대정읍, 안덕면			
남제주군 제2선거구	남원읍			
남제주군 제3선거구	성산읍, 표선면			

[별표 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2,922명)

시 도	총정수
서울특별시	419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16
인천광역시	112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기도	417
강원도	169
충청북도	131
충청남도	178
전라북도	197
전라남도	243
경상북도	284
경상남도	259
제주도	34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기 경 안
。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대한민국헌법」
法에 의한 選擧가 國民의 자유로운	과 「지방자치법」
— 의사와 民主的인 節次에 의하여 공	
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選擧와 관	
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民主政	
治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	
다.	
第4條(人口의 기준) 이 法에 의한 選	제4조(인구의 기준)
擧事務管理의 기준이 되는 人口는	
住民登錄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	「주민등록법」
錄票에 의하여 調査한 최근의 人口	
統計에 의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외
	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第8條(言論機關의 公正報道義務) 放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현 행	개 경 안
送・新聞・通信・雜誌 기타의 刊行	
物을 경영・관리하거나 編輯・取	
材・執筆・報道하는 者가 政黨의	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
政綱・정책이나 候補者 (候補者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
이 條에서 같다)의 政見 기타사항	
에 관하여 報道・論評을 하는 경우	
와 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의 代理人을 참여하게 하여 對談	
을 하거나 討論을 행하고 이를 放	
送・報道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第8條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 ①放送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방
法 第20條(放送委員會의 設置)의 規	송법」
— 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이하 "放送	
委員會"라 한다)는 選擧放送의 公正	
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 120日(大統	
領의 關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	

현 행	게 경 안
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자유	
가 확정된 때부터 20日)까지 選擧	
放送審議委員會를 設置하여 選擧日	
후 30日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放送社[第	2
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	
를 말한다. 이하 이 條 및 第8條의	
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에	
서 같다]・放送學界・大韓辯護士協	
會・言論人團體 및 市民團體등이	
추천하는 者와 國會에 交涉團體를	
가지는 政黨이 추천하는 각 1人을	구성한
포함하여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	
한다.	 .
③ · 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選擧放送審議委員會는 選擧放送	5
의 公正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	
사결과 選擧放送의 내용이 公正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혂 기||- 귕 제100조(제재조치능)-「방송법」 放送法 第100條(制裁措置号)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制裁措置등을 정하여 이를 放送委員會에 통보하 여야 하며, 放送委員會는 不公正한 選舉放決을 한 放決社에 대하여 통 보받은 制裁措置등을 지체없이 명 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第8條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 ①定期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언 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17條 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言論仲裁委員會)의 規定에 의한 言 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論仲裁委員會(이하 "言論仲裁委員 え]) – · 會"라 한다)는 選舉記事(社說・論 評・廣告 기타 選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任期滿 了에 의한 選舉의 選舉日전 120日 (大統領의 關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舉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日)까지

개 경 選擧記事審議委員會 設置하여 選 擧日후 30日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選擧記事審議委員會는 言論學界, 大韓辯護士協會, 言論人團體 및 市 民團體 등이 추천하는 者와 國會에 --구성한--交涉團體를 가지는 政黨이 추천하 는 각 1人을 포함하여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選舉記事審議委員會는 定期刊行 ----「신문 등의 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2條(用語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定義)第1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 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 物[이하 이 條 및 第8條의4(選擧報 른 정기간행물----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에서 "定期 刊行物"이라 한다]에 게재된 選擧記 事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選擧記事의 내용이 공정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해당 記事의 내용에 관한 謝過 文 또는 訂正報道文의 게재를 결정 통보 하여 이를 言論仲裁委員會에

혀 개 ---하여야 하며, 言論仲裁委員會는 불 공정한 選擧記事를 게재한 定期刊 行物을 발행한 者(이하 이 條 및 第 8條의4에서 "言論社"라 한다)에 대 하여 그 謝過文 또는 訂正報道文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자가 제1 항에 규정된 選擧記事審議委員會의 운영기간중에 定期刊行物의登錄등 에관한法律 제2조제2호의 규정에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의한 一般日刊新聞 및 같은 법 같 호 가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一般調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 刊新聞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定期 刊行物 1부를, 그 외의 定期刊行物 을 발행하는 때에는 選舉記事審議 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選舉記事審議委員會에 제 출하여야 한다. (5)~(7) (생략) (5)~(7) (현행과 같음) 第8條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혀 개 -- 7당 請求) (1) (생 략) 정구) (1) (현행과 같음) ②放送社 또는 言論社는 第1項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政黨.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과 反 論報道의 내용・크기・횟수등에 관 하여 協議한 후, 放送에 있어서는 이를 請求받은 때부터 48時間이내 에 無料로 反論報道의 放送을 하여 야 하며, 定期刊行物에 있어서는 編 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定期刊 行物의 다음 發行號에 無料로 反論 報道文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定期刊行物에 있어서 다음 發 行號가 選舉日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의 請求를 받은 때부터 48時間이내에 당해 定期刊 -----「신문 行物이 배부된 地域에 배부되는 定 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2條|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 (用語의 定義)第2號의 規定에 의한[

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

우에는 그 報道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생략)

④放送法 第91條(反論報道請求權)第
2項・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選擧放送에 관한 反論報道請求에,
定期刊行物의登録등에관한法律 第
16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定期刊行物의
選擧記事에 관한 反論報道請求에
관하여 이를 각각 準用한다.

개 경 안

일반일간신문

의 규정에 따른

----.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군"는 "반론보도 성구권"으로, "정정보도군"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현 개 경 안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 론사(정치·경제·사회·문화·시 사 등에 관한 보도 ·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 집 ·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 여 보도 ·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 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 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 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 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①----이터넷어 론사[「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 에 관한 법률 | 제2조(용어의 정의)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 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 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 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 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 행	개 경 안
②~⑨ (생략)	②~⑨ (현행과 같음)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신 설>	등)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조
	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
	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
	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	③
>> 하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항 항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	
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	
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정	하
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 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

혂 개 - - 경- 하여야 한다. 도문의 게재 능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4) (현행 제3항과 같음) ④인터넷언론사는 제3항의 청구를 (5)-----제4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 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 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 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4 ---. <후단 삭제>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2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⑥제5항--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 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 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취 -정 당해 정당ㆍ후보자 및 인터넷언론 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 · 내용 · 크 기 · 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 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 ⑦「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 2항ㆍ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한 법률 1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 행사)제1항ㆍ제4항 내지 제7항의 규 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 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 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 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 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 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

정 취 雅 로 본다.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 ----읍·면·동선거관 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리위원회---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 원회 주관 대담 · 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 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 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 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 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 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

현 행	개 경 안
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총법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	②
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구성 한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	 「방송문화
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	 진흥회법」
 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	
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중앙	
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있	
어서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⑦ (생 략)	③~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기 경 안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8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	
다)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	
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第10條(社會團體등의 公明選舉推進活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
動) ①社會團體등은 選擧不正을 감	동) ①
시하는 등 公明選擧推進活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	각호의 어느 하나
당하는 團體는 그 名義 또는 그 代	
表의 名義로 公明選舉推進活動을	
할 수 없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國民健康保險法에 의하여 설립된	<u><삭 제></u>
國民健康保險公團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연 행	개 경 만
③各級選擧管埋委員會(投票區選擧管	③읍·면·동선거
理委員會를 제외한다)는 社會團體등	관리위원회
이 불공정한 活動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是正命令을 하여	
야 하며, 그 행위가 選擧運動에 이	
르거나 選擧管理委員會의 중지 또	
는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告發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u>.</u>
第10條의2(選擧不正監視團) ①(생 략)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 ① (현행
	과 같음)
②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2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	
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중에서 50	
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정당	이 경우 선거
(선거기간전에는 국회에 5인 이상의	기간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및 직전 대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포함하여야 한다.
또는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	
	<u> </u>

현 행 기 경 안

장을 득표한 정당을, 선거기간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각 동수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경우 정당이 추천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가 전체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수에 해당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은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가 그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위촉 할 수 있다.

- 1. 정당이 선거부정감시단원 추천포 기의사를 통보하여 온 경우
- 2.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추천기한까지 선거부 정감시단원을 추천하지 아니하거 나 추천한 수가 3인에 미달하는 경우 ④~⑧ (현행과 같음)

④~⑧ (생 략)

第12條(選擧管理) ①中央選擧管理委員 제12조(선거관리) ①---

	
<u> </u>	,, 5
會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事務를 統	
轄・관리하며,下級選舉管理委員會	하급선거관리위원회
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	(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조에서 같다)
	
②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
道"라 한다)選擧管理委員會는 地方	
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관한 下級選擧管理委員會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第13條(選擧區選舉管理) ①選擧區選舉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
事務를 행할 選擧管理委員會(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地域選擧區國會議員(이하 "地域	3
區國會議員"이라 한다)選舉, <u>地域</u>	<u>지역선</u>

현 행 기 경 안

選擧區市・道議會議員(이하 "地域| 區市・道議員"이라 한다)選舉와 自治區・市・郡議會議員(이하 "自 治區・市・郡議員"이라 한다)選舉 및 自治區의 區廳長・市長・郡守 (이하"自治區・市・郡의 長"이라 한다)選舉의 選舉區選舉事務는 그 選擧區域을 관할하는 區・市・郡 選舉管理委員會[第29條(地方議會 議員의 増員 選擧)第3項 또는 選擧 管理委員會法 第2條(設置)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舉區選舉事務를 행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말한 다] ②~④ (생략)

⑤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가 天災・地 一 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機能

거구시 · 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 시 · 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 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 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 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 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 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 -----②~④ (현행과 같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혀 - 경- 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直近 上 級選舉管理委員會는 직접 또는 다 른 選舉管理委員會로 하여금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의 機能이 회복될 때까지 그 選舉事務를 代行하거나 代行하게 할 수 있다. 다른 選擧管 理委員會로 하여금 代行하게 하는 경우에는 代行할 業務의 범위도 함 께 정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第15條(選擧權) ①20歲이상의 國民은 제15조(선거권) ①19세-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舉權이 있 다. ②20歲이상의 國民으로서 第37條(名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簿作成)第1項의 選擧人名簿作成基準 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 日 현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 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 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 거권이 있다. 는 그 區域에서 選擧하는 地方議會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 (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 權이 있다. 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

개 경 안 <u>의 관할구역</u> 안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 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 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 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 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 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 第18 條(選擧權이 없는 者) ①選擧日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현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각호의 어느 하나----는 選擧權이 없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선거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 3. ---- 「정치자금법」 제45조(정 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규 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 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 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 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현 행	개 경 안
직무와 관련하여 <u>형법(특정범죄가</u>	「형법」(「특정범죄
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	<u>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	<u></u> 「특정범죄 가중
<u>처벌등에관한법률</u> 제3조(알선수	<u>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	
되거나 免除된 후 10年을 경과하	
지 아니한 者(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생 략) ②第1項第3號에서 "選擧犯"이라 함	4. (현행과 같음) ②
은 第16章 罰則에 規定된 罪와 國	「국

현 행	개 경 안
_	,,
民投票法 위반의 罪를 범한 者를 	민투표법」
말한다.	
③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3
罪의 競合犯에 대하여는 刑法 第38	「형법」
條(競合犯과 處罰例)의 規定에 불구	
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宣	
告하여야 한다.	
第20條(選擧區) ①大統領 및 比例代表	제20조(선거구) ①
國會議員은 全國을 단위로 하여 選	선
學하며,比例代表市・道議員은 당해	거한다.
市・道를 단위로 選擧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
	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
	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
	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②地域區國會議員, 地域區市・道議	③지역구지방의
 員 및 自治區・市・郡議員은 당해	
議員의 選擧區를 단위로 하여 選擧	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한다.	같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_	—

현 개 정 第22條(市・道議會의 議員定數) ① 제22조(ハ・도의회의 의원정수) (생 략) (현행과 같음)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方自 治法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치법 _ ----市와 郡을 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 의 市로 한 경우에는 市・郡統合후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了에 의한 市・道議會議員選舉에 한하여 당해 市의 道議會議員의 定數는 統合전 의 市와 郡마다 2人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第23條(自治區・市・郡議會의 議員定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 數) ①自治區・市・郡의 地方議會 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 (이하 "自治區・市・郡議會"라 한 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다)議員定數는 그 管轄區域안의 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 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내 邑・面・洞[地方自治法 第4條(地方 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第5項의 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行政洞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 人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 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 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혀 췘 개 경 안

면 · 농과 군사분계선 지역내에 위 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 · 면 · 동과 통합 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 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 다.

②第1項의 기준에 의하여 算定된 議員定數가 7人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定數를 7人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自治 區・市・郡議會의 議員定數가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수보다 많 거나 같을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불구하고 면과 동을 통합하지 아니하다.

第24條(選擧區劃定委員會) ①國會議員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국회의원 地域選擧區의 공정한 劃定을 위하 여 國會에 選擧區劃定委員會를 둔 다.

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 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 · 시 · 군의원정수 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 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 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

현 행	개 경 안
	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
	각 둔다.
②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②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	
법조계 • 언론계 • 시민단체 및 선거	
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신 설>	③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
	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
	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
	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 · 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	④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
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
	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
I.	

현 행 : 개 정 안

④・⑤ (생 략)

⑥選擧區劃定委員會는 第25條(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第1項에 規定된 기준에 따라 選擧區劃定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國會議員의 任期滿了에 의한 總選擧의 選擧日전 1年까지 國會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 — — 음)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개 경 안
<신 설>	⑨차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
	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
	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⑧國會가 國會議員地域選擧區에 관	<u> </u>
— 한 規定을 改正하는 때에는 選擧區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 • 시 • 군의원지역구에 관한
하여야 한다.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⑨選擧區劃定委員會의 구성 및 운	⑪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
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	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로 정한다.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렁렁으로 정한다.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自治區・市・郡議員選擧區는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

현 행 , 개 경 안

邑・面・洞(제23조제1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統合된 때에는 그 統 合된 區域을 말한다)을 單位로 劃定 하되. 選擧區의 名稱・區域과 그 選 擧區別 議員定數는 市・道條例로 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議員數는 選 擧區別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 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 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 는 읍 • 면 • 동에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 기 전의 읍・면・동을 각각의 選舉 區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議 員地域區를 劃定하는 경우 하나의 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 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 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 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 데로 정한다.

혂 개 경 안 邑・面・洞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 시·군의원지역구--------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 른 市・道議員地域區에 속하게 하 구 · 시 · 군의원지역구에---지 못한다. <신 설>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 나의 시 · 도의원지역구내에서 획정 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 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 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 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第28條(任期そ 地方議會의 議員定數 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의 調整등) 人口의 增減 또는 行政 의 조정등) -----區域의 변경에 따라 地方議會의 議 員定數・選擧區 또는 그 區域의 변 경이 있더라도 任期滿了에 의한 總 選擧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增減된 選擧區의 選擧는 이를 실시하지 아 니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變更이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員定數 를 調整하고, 第3號 但書・第5號 또 는 第6號의 경우에는 增員選擧를 실시한다.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3. 하나의 地方自治團體가 分割되어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은 候 補者登錄 당시의 選舉區를 관할하 게 되는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 議員으로 되어 殘任期間 在任하 며, 그 殘任期間에는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 職議員數를 각각 議員定數로 한 다. 이 경우 比例代表市・道議員 은 당해 市・道가 分割・設置된 날부터 14日이내에 자신이 속할 市・道議會를 선택하여 당해 市・ 道議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 -----신고하여야 현 행 기 경 안

다. 다만, 在職議員數가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새로운 議員定數의 3分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議員定數에 미달하는 數만큼의 增員選舉를 실시한다.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 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이 분 할·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자치구·시·군의회 를 선택하여 당해 자치구·시·군 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 –

- 4. (생략)
- 5. 邑 또는 面이 市로 된 때에는 市 議會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選舉하는 議員의 數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議員定數로부터 당해 地域에서 이미 選出된 郡議會議員의 數를 뺀 數로 하고, 종전의 당해 地域에서 選出된 郡議會議員은 市議會議員이 된다.
- 4. (현행과 같음)
- 5.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의원회가 새로 정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정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이

개 경 안 경우 새로 선출된 의원정수를 합 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의 총정수로 한다. 6. 第4號의 경우 自治區가 아닌 區 6. 제4호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 가 自治區로 된 때에는 自治區議 가 자치구로 된 때에는 자치구의 會를 새로 구성하며, 그 議員定數 회를 새로 구성하며, 그 의원정수 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議員定 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 數로 한다.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 한다. 이 경우 새로 정한 의원 정 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 자치구・시・군의 第30條(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 의 선거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의 選舉등) ①・② (생 략) ③이 法에서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

③이 法에서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 團體"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2條(地 方自治團體의 종류)第1項에 의한 같 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현	개 경 안
第31條(投票區) ① (생 략)	제31조(투표구) ① (현행과 같음)
②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하	2
나의 邑・面・洞에 2이상의 投票區	
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邑・面의	
里[地方自治法 第4條(地方自治團體	「지방자치법」
의 名稱과 區域)第5項의 行政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分割	
하여 다른 投票區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第32條(區域의 변경등) ①第37條(名簿	제32조(구역의 변경등) ①
作成)第1項의 選舉人名簿作成基準	
日부터 選擧日까지의 사이에 選擧	선거구
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國會	
議員地域區)의 區域・行政區域 또	
 는 投票區의 區域이 변경된 경우에	
도 당해 選擧에 관한 한 그 區域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u>.</u>
②地方自治團體나 그 行政區域의	②
管轄區域의 변경없이 그 명칭만 변	

현 행	개 경 안
경된 경우에는 別表 1과 別表 2 및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條例중	
國會議員地域區名・選擧區名 및 ユ	
區域의 行政區域名은 변경된 地方	
自治團體名이나 行政區域名으로 변	
경된 것으로 본다.	
第35條(補闕選擧등의 選擧日) ① (생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補闕選擧・再選擧・增員選擧의	2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는 다음 各號에 의한다.	
1. 地域區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1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補闕選	
擧・再選擧, 地方議會議員의 増員	
選擧는 前年度 10月 1日부터 3月	
31日까지의 사이에 그 選擧의 실	
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月중 마	
지막 <u>토요일</u> 에 실시하고, 4月 1日	<u>수요일</u>

취 케 -정 부터 9月 30日까지의 사이에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月중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한 -수요일-다. 이 경우 선거일 또는 선거일 ---.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전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제34조(선거일)제2항의 규정을 준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에 용한다. 는 그 다음주의 토요일로 한다. 2. (생략) ③~⑤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第37條(名簿作成) ①選擧를 실시하는 제37조(명부작성) ①---때에는 그때마다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市長(區가 설치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 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邑 長・面長(이計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大統領選擧에 있어 서는 選擧日전 28日, 國會議員選擧 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

의 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19일 (이하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이라 한다) 현재로 그 管轄區域안에 住 -----관할구역 안에 주 民登錄이 되어 있는 選舉權者를 投 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 票區別로 調査하여 選舉人名簿作成 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基準日부터 5日이내(이하 "選擧人 의 경우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 名簿作成期間"이라 한다)에 選擧人 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 다]----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人名簿 의 작성은 電算組織에 의할 수 있 다. 이 경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 <후단 삭제> 性別 및 生年月日의 기재는 住民登 錄番號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생략) (7) (현행과 같음) 第38條(不在者申告) ①選舉人名簿에 제38조(부재자신고) ①-----오를 자격이 있는 國內居住者중 다 -------국내거주자[제 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選擧 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日에 자신이 投票所에 가서 投票할 따른 외국인을 제외한다]로서----수 없는 때에는 選擧人名簿作成期

개 경 안

혂

현 행	개 정 안
間중에 區・市・邑・面의 長에게	
書面으로 不在者申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郵便料金은 무료로 한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
	가 부담한다.
1. 選擧人名簿作成期間滿了日이전부	 < <u>삭 제></u>
<u>터</u> 住民登錄地인 區·市·郡 밖으	
로 떠난 者로서 選擧日까지 住民	
登錄地로 돌아올 수 없는 者	∕ λ l. → l \
2. 法令에 의하여 營內 또는 艦艇에 토脚도로 및 도 제 이기 整座 (2.)	<u><삭 제></u>
長期寄居하는 軍人이나 警察公務	
<u>員</u> 3. 病院・療養所・收容所・矯導所	<삭 제>
(拘置所를 포함한다) 또는 船舶등	
에 長期寄居하는 者	
4. 身體에 중대한 障碍가 있어 거동	<u><삭 제></u>
<u>할 수 없는 者</u>	
5. 選擧日에 投票所에 가기 어려운	<u><삭 제></u>
멀리 떨어진 외딴 섬중 中央選擧	

개 경 안 혀 1. 제1항제2호의 자중 부재자투표소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 정에 근무하는 자 2. 제1항제3호의 병원 또는 요양소 2. 병원----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3.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 <u>할 수 없</u>는 자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⑦ (현행과 같음) <u>4.</u> (생 략) <u>4</u> ~ ⑦ (생 략)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등) ①選擧人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①-----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 하여는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 員會 및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가

- 개 - 경 - 안 혂 이들 監督한다. ত্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 員이 정당한 사유없이 選舉人名簿 作成에 관하여 管轄區・市・郡選舉 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舉管理委 員會의 指示・命令 또는 是正要求 관리위원회----에 불응하거나 그 職務를 태만히 한 때 또는 違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管轄區・市・郡選舉管理 委員會 또는 直近 上級選舉管理委 員會는 任免權者에게 그 交替를 요 구할 수 있다. ⑤~⑨ (생략) ⑤~⑨ (현행과 같음) 第40條(名簿閱覽) ①區・市・邑・面의 제40조(명부열람) ①구・시・읍・면의 長은 選舉人名簿作成期間滿了日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日間 場所를 정하여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選擧人名簿를 閱覽하게 하여야 하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 며, 選舉權者의 편의를 위하여 閱覽 여야 하며, 구·시·군의 장은 선거 권자가 당해 구·시·군이 개설· 期間 る 區・市에 있어서는 統別.

 현
 행
 개
 경
 안

 邑・面에 있어서는 里別의 選擧人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본· 由에 있어서는 里別의 選擧人 名簿謄本을 統·里의 長이 지정하는 公開된 場所에 비치하여 供覽하 게 하여야 한다.

③구·시·읍·면의 장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와 기간을 공 ———— 고하여야 한다.

| B40條(名薄鳥本의 エテ) ①區・市・ | 邑・面의 長은 候補者(比例代表國 | 會議員候補者와 比例代表市・道議 | 員候補者를 제외한다)・選擧事務長 |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 | 市・道議員選擧의 選擧事務長을 제 | 외한다) 또는 選擧連絡所長의 申請

<u>(2)-----</u>

第46條(名簿寫本의 교부) ①區・市・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비례대표국회의원후 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 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 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 다)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

혀-개 경 안 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選擧人名簿 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을 제외한다)-----電算資料 複寫本을 候補者別로 1通 씩 24시간 이내에 申請人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政黨은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選擧(自治區・市・郡議員選擧를 제 선거-----외한다)에 있어 選擧區別로 選擧할 定數範圍안에서 그 所屬黨員을 候 補者(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 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단서 신 ----- 다만,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설>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政黨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 候補者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政黨 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法 第31條(公職選舉候補者의 추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의 規定에 따라 民主的인 節次에 의하여야 한다.

혂 췘 개 경 안

(3)政黨 ·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에 候補者를 추천하는 때에는 政黨 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女 性候補者를 추천하여야 한다.

<신 설>

轄選舉區안에 住民登錄이 된 選舉 權者と 각 選舉(比例代表國會議員) 選擧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 제외한다)別로 政黨의 黨員이 아닌 1人을 당해 選擧區(國會議員選擧와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議員의 地域區)의 候補者(이하 "無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 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홀 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 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第48條(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 ①管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관 할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 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 (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 천할 수 있다.

연 행	게 경 단
所屬候補者"라 한다)로, 自治區・	
市・郡議員選舉에 있어서는 1人을	
候補者로 추천할 수 있다.	
②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	②무소속후보자
者 또는 無所屬候補者가 되고자 하	
가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5日(大	
統領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	
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30	
日,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舉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日)	
부터 檢印하여 교부하는 推薦狀을	
사용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	
權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自治區・市・郡議員選舉	5. <u>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u>
50人이상 100人이하. 다만, 人口 1	
千人미만의 選擧區에 있어서는 30	
人이상 50人이하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개 경 안
第49條(候補者登錄 등) ① (생 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政黨推薦候補者의 登錄은 大統領	②
選擧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	데 대 표 지 방 의 회 의 원
는 그 推薦政黨이, 地域區國會議員	
選舉와 地域區市・道議員 및 地方	지역구지방의회의원
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政黨推薦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	
가 申請하되, 推薦政黨의 代表者가	
署名・捺印한 推薦書와 本人承諾書	
(大統領選擧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	
擧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한한다)를 登錄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比例代表國會議員候	
補者의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
의 登錄은 推薦政黨이 그 順位를	 보자
정한 候補者名簿를 함께 첨부하여	
야 한다.	<u>.</u>
③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	③무소속후보자

현 행	개 경 안
者 또는 無所屬候補者가 되고자 하	
는 者는 第48條(選擧權者의 候補者	
推薦)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權者가	
記名・捺印(拇印을 허용하지 아니한	
다)한 推薦狀(單記 또는 連記로 하	
며 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登錄	
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	4
여 候補者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다	
음 各號의 書類를 제출하여야 하며,	
第56條(寄託金)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寄託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公職者倫理法 第10條의2(公職選	2. <u>「공직자윤리법」</u>
擧候補者등의 財産公開)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신고서	
3. 公職者등의兵役事項申告및公開에	3. <u>「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u>
관한法律 第9條(公職選擧候補者의	공개에 관한 법률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第1項의 規	

혀 颜 개 경 안 定에 의한 兵役事項에 관한 申告 書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 자와 직계존 · 비속의 소득세 · 재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 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에 관한 증명서. 이 경우 후보자 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 조(원천징수의무)제1항의 규정에 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 거부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재 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 납은 제외한다)-----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 육법 | 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 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하 "정규학력"이라 한다)-----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

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 이 경

혂 개 경 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 력은 제13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 료,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 의 선거운동)제1항제4호의 인쇄물, 운동)제4호의 인쇄물, 제64조(선전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 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 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보)의 선거공보, 제66조(소형인쇄 물)의 소형인쇄물 및 후보자가 운 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 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신 설> ⑤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60조의2(예비후보자 등록)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 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이 를 추가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 다. (6)·(7) (생 략) <u>⑥</u>・⑦ (현행과 같음) ⑧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

혀 -정 補者登錄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錄申請 書・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 選擧權者의 推薦狀・寄託金 및 第4 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 -----제47조제3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신청은 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시 · 도의원선 의 被選舉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 거에 한한다)를-----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 하되,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 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 야 하다. ⑨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當 選人決定후 15日 이내에 당해 當選 人이 第4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개 경 제출한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申告 -----「공직자윤리법」--書의 寫本을 公職者倫理法 第9條(公 職者倫理委員會)의 規定에 의한 해 당 公職者倫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하다. ⑩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 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은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 제6조(수사자 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의 규정 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 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 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 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

취 개 경 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지체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 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 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 보하여야 한다. ①·① (현행과 같음) ①·① (생 략) ③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삭 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 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조에서 "후보 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를 작성하 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함 께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는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안내문 을 발송하는 때에 후보자정보공개 자료를 동봉하여 관할구역안의 매 세대에 발송하여야 하며, 제154조

현 행 | 개 경 안

(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 봉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 는 선거인에게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하 여 서면에 의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각 재산총액과 재산의 항목별 각 소계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 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 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 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현 행	기 경 안
	, , , ,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	
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 및 완납시기(제4항제4호 후	
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제출	
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	
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u>4. 전과기록</u>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항	<삭 제>
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정보공개자	
료의 기재내용이 후보자가 제출한	
제4항 각호의 서류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	
 로 정정할 수 있다.	
⑤候補者의 登録申請書와 推薦書의	(5)
炒 欧洲有一	

개 경 안 서식, 공개방법, 후보자정보공개자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 료의 제출·발송·서식, 소명자료의 방법 그 밖에----서식 및 분량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경의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①政黨은 候補者登錄후에는 금지) ①----登錄된 候補者에 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比例代表國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워 會議員候補者名簿(比例代表市・道| 議員候補者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 후보자----이 項에서 같다)를 추가하거나 그 順位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候補 者登錄期間 る 政黨推薦候補者 汁 辭 退・死亡하거나、所屬政黨의 除名이 나 中央黨의 시 도당창당승인취소 외의 사유로 인하여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比例代表國 會議員候補者名簿를 추가할 경우에 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는 그 順位는 이미 登錄된 者의 다

현 행	개 경 안
_	- "
음으로 한다.	
②選擧權者는 候補者에 대한 추천	2
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같	없다.
은 選擧에 2人이상을 추천한 때에	
는 먼저 登錄申請한 候補者에 대한	
추천만을 有效로 한다.	
第52條(登錄無效) ①候補者登錄후에	제52조(등록무효)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호의 어느 하나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第1項	2제1항 본문
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區別로	
選擧할 定數範圍를 넘어 추천하거	
나, <u>같은 조</u> 제3항의 규정에 의한	<u>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u>
女性候補者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u>어 같은 조</u>
위반하거나, 第48條(選擧權者의 候	
補者推薦)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推	
薦人數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7. (생 략)	3.~7. (현행과 같음)
	·

- 현 행	개 경 안
T 7	계 경 현
8.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	8
任등의 제한)제2항 및 <u>정당법 제</u>	제57조의
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3	<u>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u>
<u>항</u> 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된 것	
이 발견된 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53條(公務員등의 立候補) ①다음 各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①각
… 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候補者	호의 어느 하나
 가 되고자 하는 者는 選擧日전 60	
日(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比例代表	비례대
市・道議員選舉 및 補闕選擧등에	표지방의회의원선거
고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	
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	
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	
者登錄申請전)까지 그 職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	

연 행	개 경 안
地方議會議員選舉外 地方自治團體	
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해 地方	
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國家公務員法 第2條(公務員의 구	1「국가공무원법」
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u>地方</u>	「지방
公務員法 第2條(公務員의 區分)에	<u> 공무원법_</u>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政黨法	「정당법」
第6條(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第1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
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u> 1항제1호 단서</u>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政務職	
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適用範圍)에 規定된 政府投資機	
關(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常勤	
任員	
5. 農業協同組合法・水産業協同組合	5. <u>「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u>

현 행	개 경 안
法・山林組合法・葉煙草生産協同	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
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常勤 任員과 이들 組合의 中央會	
長	
6. 地方公企業法 第2條(適用範圍)에	6. 「지방공기업법」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常	
勤 任員	
7. 政黨法 第6條第2號의 規定에 의	7. <u>「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u>
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私立學校敎員	
8. (생 략) ②·③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57條(寄託金의 반환등) ①선거구선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 ①
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	
에 따른 해당 금액중에서 제56조	
(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	
지 금액을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
· · · · · · · · · · · · · · · · · · ·	

개 경 안 혀. - 刻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자치구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시 · 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선거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 -----비례대표지 표시 · 도의원선거 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 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 탁금 전액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신 설>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 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 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 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 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 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

의에 따라 실지한 당내경선을 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하 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함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면 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	실시
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하 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함 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면	를 정 는 자
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현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면	· · 자
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면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면	 서는
	' '-
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	 , 후
	 망・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	 탈·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
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	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
인이 될 수 없다.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정당여] 당
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	 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 할
수 없다.	

현	퀭	개 경 안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운동)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
		정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
		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
		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
		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
		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
		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
		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
		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조(선
		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④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 문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 무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한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수 있다. ②관한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수 있다. ②관한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 정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 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 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	현 쳉	기 경 안 기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수 있다. ②관한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대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0	/ 11 0 12
로 정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 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 무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 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 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 무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 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 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 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 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 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 이 부담한다.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이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대경선사무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대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대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로 정한다.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 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정선사 무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 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관할전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 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 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 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 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 이 부담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
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수 있다. ②관할전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무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수 있다. ②관할전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
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경선은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 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 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무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 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 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 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 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 이 부담한다.		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
②관할전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 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 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 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 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 이 부담한다.		<u></u>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 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 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 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 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 이 부담한다.		수 있다.
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 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 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 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 이 부담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
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
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
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
- 이 부담한다.		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

현	퀭	개 경 안
		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
		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
		아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①누구
		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
		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
		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
		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
		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
		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
		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
		>>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
		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
		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취 개 경 안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 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 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 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 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 · 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의6(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 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57조의4 (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 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 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第59條(選擧運動期間) 選擧運動은 후 제59조(선거운동기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選擧 日前日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각호의 어느 하나

취 개 경 안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귀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 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 (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가 제 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하는 경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하 는 경우 <삭 제> 2.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제6이 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3. (생략)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 ①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각호의 어느 하나-----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選 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第4號 내지 第9號에 해당하는 者가 候補 -----제8호-----者의 配偶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

현 행	개 경 안
ਹ ਹ	기 '
	다. 이하 같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國家公務員法 第2條(公務員의 구	4. <u>「국가공무원법」</u>
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	
公務員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공무원법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政黨法	「정당법」
第6條(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第1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
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u> 1항제1호 단서</u>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國會議	
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	
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5.~8. (생 략)	5.~8. (현행과 같음)
9. 國民健康保險法에 의하여 설립된	<삭 제>
國民健康保險公團의 常勤 任・職員②(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국	
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 · 도의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
선거를 제외한다)는 선거일전 120	거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서

현 행	개 경 안
일(선거일전 120일 후에 실시자유	정하는 날(그 날
 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	<u>1. 대통령선거</u>
	선거일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
	<u>사선거</u>
	선거일전 120일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
	<u>구·시·군의 장선거</u>
②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호의	<u>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u> ②각호의 어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느 하나
-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	
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현 - 행	개 경 안
3.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	3
임등의 제한)제2항 및 <u>정당법 제</u>	제57조의
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3	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 본문
<u>항</u> 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	
된 때	
③~⑤ (생 략) <신 설>	③~⑤ (현행과 같음) ⑥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중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	①각호의 어느 하나
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	 에 해당하는
ㅡ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	2
학력[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	<u>정규학력</u>
<u>정에 의한 정규학력</u> 과 이에 준하	

현 개 정 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 력을 말한다] · 경력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 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 을 직접 주는 행위. 다만, 지하철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역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 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 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 가 그의 직계존 · 비속 중에서 신고 한 1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

현 행	기 경 안
	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신 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쇄
	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
	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안
	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
	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
	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
	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
	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
	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
	일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
	야 한다.
<신 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
	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

현 행	 개 경 안
	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순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
	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 설>	⑥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
	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①政黨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
또는 候補者는 選擧運動 기타 選擧	
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따라 選擧事務所와 선	
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	
소를 設置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및 <u>比例代</u>	3바례대표지방의
表市・道議員選舉	<u>회의원선거</u>
政黨이 設置하되,選舉事務所 1個	
所(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의 경	
우에는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	
名簿를 제출한 <u>市・道마다</u> 選擧事	시·도마다, 비례대표

현 행	개 경 안
т о	/川 O ゼ
務所 1個所)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
	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
	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
	<u> 군마다</u>
4. 地域區市・道議員選擧 및 自治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u>區・市・郡議員選舉</u>	
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選擧區	
안에 選擧事務所 1個所	
5.·6 (생 략) ②~④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⑤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는 고정	⑤
된 場所 또는 施設에 두어야 하며,	
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接客營業所	「식품위생법」
또는 公衆衛生管理法에 의한 公衆	 「공중위생관리법」
衛生營業所안에 둘 수 없다.	
⑥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에는 中	<u></u>
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	
에 따라 選擧運動을 위한 看板ㆍ懸	
板 또는 懸垂幕을 합하여 모두 4개	

	 	개 경 안
		/II 0 E
	이내와 第64條(宣傳壁報)의 宣傳壁	
	報・第65條(選舉公報)의 選舉公報・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第66條(小型印刷物)의 小型印刷物	
	또는 候補者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에는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을 각 1	
	개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ス	∥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그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날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	—
	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	
	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	
	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	
	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현 행	개 경 안
<신 설> 	<u>1. 대통령선거</u>
	선거일전 240일
	2.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전 120일
	3.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
	시・군의 장선거
② (생 략)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② (현행과 같음)
③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3
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	
에는 지체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	
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	
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소장 및 회계책임자</u> 의 성명·주	3. <u>소장</u>
소・주민등록번호	
4. (생 략) ④~⑦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경 안
第62條(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 ①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長은	②
選擧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	
여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	
서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事務員	
[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	
當과 實費補償)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手當과 實費를 지급받는 選擧	
事務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7. 自治區・市・郡議員選舉	7. <u>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u>
選擧事務所에 5人이내	
<u><신 설></u>	8.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시・
③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군안의 읍·면·동수 이내 ③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	
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다음 각호에 따른 수

현 행	개 정 안
수 있다.	
<신 설> ———	<u>1. 대통령선거</u>
	10인 이내
	2. 시·도지사선거
	5인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u>시·군의 장선거</u>
	<u> 3인 이내</u>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④ (생 략)	2인 이내 ④ (현행과 같음)
⑤選擧事務長을 두지 아니한 경우	⑤
에는 候補者(제2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1호·제3호·제5
제5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	호 및 제8호
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選擧事務長	
을 겸한 것으로 본다.	<u>.</u>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第64條(宣傳壁報) ①選擧運動에 사용	제64조(선전벽보) ①
하는 宣傳壁報에는 候補者의 寫眞	
(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姓	

현 행	개 정 안
名・記號[第150條(投票用紙의 政	제150조(투표용지의 정
黨・候補者의 掲載順位등)第2項의	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
規定에 의하여 投票用紙에 인쇄할	
政黨 또는 候補者의 揭載順位를 말	
한다. 이하 같다]‧政黨推薦候補者	
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	
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初・中等教育法	정규학력
및 高等敎育法에서 인정하는 正規	
學歷과 이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	
 程을 履修한 學歷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卒業 또는 修了당시의 학	
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	
程을 履修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	
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혀 궛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 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 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政見 및 所屬 政黨의 政綱・정책 기타 弘報에 필 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擧에 있 어서는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 名單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 洞에 있어서는 人口 500人에 1枚, 구 · 시 · 군의원후보자명단을-邑에 있어서는 人口 250人에 1枚, 面에 있어서는 人口 100人에 1枚의 比率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 만, 인구밀집상태 및 貼付場所등을 감안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개 경 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人口 1千人에 1枚의 比率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宣傳壁報는 候補者(大統領選舉의 政黨推薦候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者外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및 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 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條 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 에서 같다)가 4色度(白色은 1色度로 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작성하여 候 가 작성하여----補者登錄마감일후 3日(大統領選擧에 있어 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 錄마감일후 2日이내를 말한다)까지 첩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 郡選舉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官傳壁報 제출마감일후 2 日(大統領選擧와 섬 및 산간오지지 역의 경우는 3日)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宣傳壁報의 일부를 제출하지

- 경 아니할 때에는 宣傳壁報를 접부하 지 아니할 地域(投票區를 單位로 한 다)을 지정하여 宣傳壁報의 제출시 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하되, 宣傳 壁報를 첩부하지 아니할 地域을 申 告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晶• 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ユ 地域을 지정한다. ③ • 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宣傳壁報는 訂正 또는 撤回할 수 없다. 다만, 그 내용중 經歷・學 歷・學位 또는 賞罰(이하 "經歷등" 이라 한다)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 를 이유로 하여 書面에 의한 異議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提起가 있는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 舉管理委員會는 政黨 또는 候補者 하여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에게 그 證明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를 수 있으며, 그 證明書類의 제출이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

혀 췞 개 경 안

는 그 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

⑥~⑪ (생 략)

舉外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

體의 長의 選舉(比例代表市・道議

員選擧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選擧

運動에 사용하는 選擧公報에는 候

補者의 사진・姓名・記號・政黨推

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

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經

歴・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정

책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

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

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比例代

表市・道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한

다)을 게재하며. 4色度(白色은 1色

度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印刷하

여야 한다.

⑥~① (현행과 같음)

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

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

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작

성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公報는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현 행 : 개 정 안

候補者가 2枚(양면에 게재할 수 있 다)이내로 작성하여 候補者登錄마감 일후 3日까지 배부할 地域을 관할 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당해 區·市·郡選舉管理 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不在者申 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舉人과 管 轄區域안의 每世帶에 選舉公報제출 마감일후 3日까지 각각 郵便으로 1 回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不在 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 에게는 選擧公報를 第154條(不在者 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第1 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用紙 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選擧人名簿 확정 결과 選擧公報를 발송하지 아니한 世帶가 있는 때에는 그 世帶에 추 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거공보는 대통령전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
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
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현 행 기 개 정 안

③候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公報외에 視覺障碍選舉人[選舉] 人으로서 障碍人福祉法 第29條(障碍 人 登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을 위하여 점자로 작성한 選擧公報 (이하 "점자형 選擧公報"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 選 舉公報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 擧公報와 같은 종류로 본다. ④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候 補者가 제출할 수 있는 점자형 選 擧公報의 數量을 第64條(宣傳壁報) 第3項의 規定에 준하여 公告하여야 하며、管轄區・市・郡의 長은 점자

형 選舉公報를 발송할 視覺障碍選

舉人과 ユ의 世帶主의 姓名・住所

를 조사하여 점자형 選擧公報의 數

量公告전까지 管轄區・市・郡選擧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전 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 는 수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 량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에 상 당하는 수이내로 한다.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점자형 선거공보는 제1항의 규정에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

현 행 기 정 안

管埋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第64條(宣傳壁報)第2項 後段 내지 第7項의 規定은 選擧公報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宣傳壁報"는 "選擧公報"로, "첩부하지 아니할 地 域"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地 域"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본다. 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u>1. 대통령선거</u>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 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7항에 서 같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 일[제51조(추가등록)의 규정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 등록마감일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 여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는 제 출마감일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

현 행	 개 정 안
	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
	지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부재
	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
	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전단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
	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투표
	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
	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선
	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
	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이를
	전단형 선거공보와 함께 추가로
	<u>발송하여야 한다.</u>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현 행	개 경 안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
	는 선거인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
	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u>
	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4조의 규정
	에 따라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
	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
	<u>한다.</u>
	<u>나. 매세대</u>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
	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u>
	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의 규정
	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현 췞 개 경 안 ⑥選擧公報의 數量公告・規格・작 ⑥ ナ・시・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 성ㆍ제출ㆍ확인 및 발송 기타 필요 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 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선거 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으로 정한다. 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 관할구ㆍ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⑦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른 내용(이 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라 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 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현 행	기 경 안 기
	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3
	호에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u>2. 병역사항</u>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
	• 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사
	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
	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
	<u>외한다]</u>
	3.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
	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
	내의 체납은 제외한다) 및 완납시

r 현		. 개 정 안
_	-	, , –
		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4
		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
		수 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
		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u>4. 전과기록</u>
		<u>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u>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⑧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선
		여금 책자형 선거공보 원고를 제49
		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
		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
	l	

현 - 행	기 경 안
<u> </u>	/" 0 E
	로 제출하게 한 후 제150조(투표용
	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
	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선거공보를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의 인쇄비용은 후
	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⑨제64조(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
	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
	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규
	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님는"으로,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
	⑩선거공보의 규격·작성·제출·
	확인・발송 및 공고, 후보자정보공

췞

第66條(小型印刷物) ①選擧運動에 사 용하는 小型印刷物은 候補者(大統 領選舉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 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작성하고 小型印刷 物에는 候補者의 사진・姓名・記 號・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 (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 한다)・經歷・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 항(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島 함한다)을 게재하되, 그 종류는 다 음 各號에 의한다. 1. 大統領選舉

혀

개자료의 게재방법과 선거공보의 원고 및 인쇄비용의 산정·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 경 안

현 행 | 개 정 안

<u>傳單型 小型印刷物 및 책자형 小</u>型印刷物 각 1種

2. 地域區國會議員選舉, 比例代表 市·道議員選舉 및 地方自治團體 의 長選舉

환유 기型印刷物 1種 ②第1項의 "傳單型 小型印刷物"이라함은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1枚(양면에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小型印刷物을, "책자형 小型印刷物"이라함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16面이내로, 地域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및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에 있어서는 8面이내로 작성하는 小型印刷物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작정・배부할 수 있는 책자형 小型印刷物은 당해 選擧區안의 世帶數 와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數를 합한 數에 상당하는 數이내로, 傳單型 小型印刷物은 당해 選擧區안의 世帶數에 상당하는 數이내로 한다.

4 削除

⑤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4色度(白色은 1色度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작성하되, 작성근거, 작성・배부하는 候補者의 姓名・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과 印刷所의 명칭・住所・電話番號를 표시하여야한다.

⑥小型印刷物의 배부절차와 방법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1. 大統領選擧

책자형 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작

성하여 候補者登錄마감일후 6日 [第51條(追加登錄)의 規定에 의한 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 감일후 2日]까지 배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 會에 제출하고 당해 選擧管理委員 會가 이를 확인하여 不在者申告人 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과 管轄 區域안의 每世帶에 제출마감일후 3日까지 각각 郵便으로 발송하되,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 票用紙의 발송)의 規定에 의한 不 在者投票用紙와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傳單型 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작성하여 候補者登錄마 감일후 12日까지 배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 會에 제출하고 당해 選擧管理委員 會가 이를 확인하여 第153條(投票 현 행 개 경 안

案內文의 발송)의 規定에 의한 投票案內文의 발송시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選擧人名簿 확 정결과 책자형 小型印刷物을 발송 하지 아니한 世帶가 있는 때에는 그 世帶에 이를 傳單型 小型印刷物과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地域區國會議員選舉, 比例代表 市·道議員選舉 및 地方自治團體 의 長選舉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舉人에게 발송하는 책자형 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候補者登錄마감일후 3日까지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해당 選舉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제출마감일후 3日까지 각각 郵便으로발송하되, 第65條(選擧公報)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公報(不在者

현 행 | 개 경 안

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에 대하여는 不在者投票用紙를 포함 한다)와 동봉하여 발송하며, 管轄 區域안의 每世帶에 발송하는 책자 형 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候補者 登錄마감일후 6日까지 管轄區・ 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해당 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 하여 管轄區域안의 每世帶에 제출 마감일후 3日까지 郵便으로 발송 한다. 이 경우 당해 選擧管理委員 會는 第1項・第2項 및 第5項의 規 定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⑨第64條(宣傳壁報)第2項 後段 내지 第7項의 規定은 책자형 小型印刷物 과 傳單型 小型印刷物에, 第65條(選 擧公報)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大統領選擧에 있어서의 傳單型 小 현 췘 개 경

型印刷物에 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宣傳壁報"는 "책자형 小型印 刷物 및 傳單型 小型印刷物"로,"選 舉公報"는 "傳單型 小型印刷物" 己. "規格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規格 을 넘는"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첩부하지 아니할 地域"은 "발송하 지 아니할 대상 및 地域"으로 본다. ⑩小型印刷物의 數量公告・작성 및 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 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 · 도 의원선거를 제외한다)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 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 · 면 · 동 마다 1매의 혀수막을 관할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기

제67조 (현수막) ①국회의원선거 및 제67조 (현수막) ①후보자(비례대표국 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 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 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 시할 수 있다. <삭 제>

현 개 경 안

호·성명 및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당해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하며,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과 선거의 종류, 선거구명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③ (생략)

제68조(어깨띠) ①후보자는 자신의 사 제68조(어깨띠) ①후보자와 그 배우자
진・성명・기호 또는 소속정당명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
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재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는 선거운

③ (현행과 같음)

|68조(어깨띠) ①후보자와 그 배우자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마다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 각호에 의

현 - 행	개 경 안
	한 수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
	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더라도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
	2. 국회의원선거
	20인 이내
	3.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10인 이내
	<u>4. 시·도의원선거</u>
	<u>5인 이내</u>
	5.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②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3인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	외하고는
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第69條(新聞廣告) ①選擧運動을 위한	제69조(신문광고) ①
新聞廣告는 候補者(大統領選擧에	
1	

있어서 정당주천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條 에서 같다)가 다음 各號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選舉日전 2日 까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政治資金募金(大統 領選舉에 한한다) 기타 弘報에 필 요한 사항을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 ----- 「신문 등의 자유와 기 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에 게재 능보장에 관한 법률ᅟ제2조(용어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日刊新聞에의 정의)제2호의 규정---廣告回數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 의 日刊新聞에 1回 廣告하는 것을 1回로 본다. 1.~3. (생략) 2~9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②~⑨ (현행과 같음) 第70條(放送廣告) ①選擧運動을 위한 제70조(방송광고) ①---放送廣告는 候補者(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 경

혂 雅 -정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運動期間 所屬政黨의 政綱・ 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報 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 디오 放送施設[放送法에 의한 放送 ---「방송법 | --事業者가 관리・운영하는 無線局 및 綜合有線放送局(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 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廣 告時間은 1回 1分을 초과할 수 없 다. 이 경우 廣告回數의 계산에 있 어서는 再放送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放送施設을 선정하여 당해 放送網을 동시에 이 용하는 것은 1回로 본다. 1.・2. (생략) ③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第1項의 放送廣告는 放送法 第73 「방송법」

현 - 행	개 경 안
條(放送廣告등)第2項 및 第5項의 規	
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⑧ (생 략)	⑤~⑧ (현행과 같음)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説) ①~①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①~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⑫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	⑫「방송법」
 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	
의 채널을 포함한다) 및 中繼有線放	
送事業者는 候補者등의 放送演說을	
中繼放送할 수 있다. 이 경우 放送	
演說을 행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	
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放送)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	방송) ①
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	
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의 規	
定에 의한 候補者등의 放送演說외	
	ı

혀 - 정 에 選擧運動期間중 政黨 또는 후보 자를 選擧人에게 알리기 위하여 候 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日] 례대표시 · 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그 推薦政黨이 당해 選舉의 候補者 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演說을 放送하 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編輯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放送하여야 하며. 選舉區(地域區國會議員選舉와 地域 선거구단위----區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해당 地域區)單位로 모든 政黨 또는 候 補者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政黨 또는 候補者가 그 演說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와 비례대표시 · 도의원후보자를 제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 현 행 개 정 안

演説員[大統領選擧 및 市・道知事 選擧에 한하며, 候補者(大統領選擧 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 薦政黨을 말한다)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각 선거연락소마 다 지명한 2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候補者등"이라 한다]은 選 擧運動期間そ에 所屬政黨의 政綱・ 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필요 한 사항을 弘報하기 위하여 公開場 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장ㆍ선 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司會者 1人을 두어 候補者의 소개 또는 支援演説・對談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候補者등과 司會者는 公開場所에 서의 演說·對談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는 연설원[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
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
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대통령선거 및
시 · 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선
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3

현 행	개 경 안
부작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	
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地域區國會議員選擧, 地域區市・	3 <u>지역구지방</u>
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	<u>의회의원선거</u>
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擧	
候補者마다 1대·1組 ④第3項의 확성장치는 정지된 상태	 ④제3항의 확성장치는
에서 演說・對談 또는 司會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演說・對談用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地域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	
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中央選舉	6
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	
라 標識를 부착하여야 하고, 第64條	
(宣傳壁報)의 宣傳壁報, 第65條(選擧	제65조(선거공
公報)의 選擧公報,第66條(小型印刷	보)의 선거공보 —————

	현 - 행		케	경	인	
	物)의 小型印刷物 또는 후보자 사진					
	을 붙일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길	날음)		
	⑧후보자가 제1항 후단의 사회자를		8			
	두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선거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교체할 수				1회에	한하
	없다.		여 교체할 수	있다.		
	⑨~⑫ (생 략)	,	⑨~① (현행·	과 같음)		
穿	9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	제	81조(단체의	후보자등	· 초청	대담·
	討論會) ①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토론회) ①			
	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				제6호	
	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團體는 후					_
	보자 또는 대담・토론자(大統領選					
	擧 및 市・道知事選擧의 경우에 한					
	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가 選擧運動					
	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選擧事務					
	所 또는 選擧連絡所마다 지명한 1					
	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1人 또는 數人을 초청하여 所屬政					

혂 개 정 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 見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對 談・討論會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屋內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 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⑨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 談・討論會)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담·토론회) ①-----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 하 이 條에서 같다] · 定期刊行物의 ----- 「신문 등의 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一般日刊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新聞社등 言論機關(이하 이 條에서 2조(용어의 정의)제6호의 규정에 따 "言論機關"이라 한다)은 選舉運動期 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인 補者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 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 중에서 지정하는 者를 말한다)에 기관"이라 한다)는---대하여 候補者의 承諾을 받아 1人 또는 數人을 초청하여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 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討 論會를 개최하고 이를 報道할 수 있다. 다만, 第59條(選擧運動期間)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選舉에 있 어서는 選擧日전 120日부터, 國會議 員選舉 또는 市・道知事選舉에 있 어서는 選擧日전 60日부터 選擧期 間開始日前日까지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초청하여 對談・討論會 를 개최하고 이를 報道할 수 있다. 이 경우 放送施設이 對談・討論會 를 개최하고 이를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編輯하지 않은 상태 에서 放送하여야 하며, 對談・討論 會의 放送日時와 진행방법등을 中 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 에 따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에 통보하여야 한다.

혂 개 경 안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생 략) 대담·토론회) ① (현행과 같음)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도지사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1인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의 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 다. 1. 시 · 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 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후단 신설>

1. (생략)

가. (생략)

- 나. 직전 대통령선거, <u>비례대표국</u> <u>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u> <u>도의원선거</u>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 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생 략)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각호의 어느 하나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u>비</u>례대표국회 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ㆍ 시 · 군의원선거-----

개 경 안

다. (현행과 같음)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

현 행		개 경 안
		표시·도의원선거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2	시・도지	3 <u>지방자치</u>
<u>사선거</u>		단체의 장선거
가.~다. (생 략) <신 설>		가.~다. (현행과 같음)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
		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
		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 설>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유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
		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
I	I	

개 경 안 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 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 • 토론회(합동방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 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 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 서 같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 게 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8·9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 음) ⑧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제1 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담·토론회-----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 ----지역구국회의워 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8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

현 행	개 경 안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	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_ 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	
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	
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	이용
하여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텔레	하여 대담·토론회
 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	
용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①대담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	— ·토론회
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	
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⑪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	① 「방송법」
 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	
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제1	대담
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 토론회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혀 개 경 안 ① (생략) ①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생 략) 정책토론회) ① (현행과 같음)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 -----제7항 내지 제9항· 관 대담·토론회)제5항 내지 제7항· 제10항 본문 · 제12항 및 제13항 제8항 본문·제10항 및 제11항의 귀 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 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 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운동) ①----------「정보통신망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법률 | ----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 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 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전 행	개 경 안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	
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	
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	③
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	관리위원회
 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	
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	
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	
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정보통신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제2조(정의)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한 법률」 제2조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	

혂 개 경 정할 수 있다. ④∼⑥ (현행과 같음) ④~⑥ (생략)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 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정보의 주요내용 <삭 제>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삭 제>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 자우편에 한한다)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⑥ (생략) ③~⑥ (현행과 같음)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 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 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 현 행 가 경 안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 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 · 운영하는 인 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 대화방 등 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 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 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

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 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②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
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 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 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 현 행 , 개 경 안

④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
용정보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
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
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
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 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 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 명의의 아이 디(이용자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혂 췘 개 경 안 이 항에서 같다)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 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 이지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실명 트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의견게 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글이 게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 명의의 아이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 디(이용자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여야 한다. 이 항에서 같다)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 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신 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 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후보자(대통 <신 설> 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 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현 행	개 경 안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
	│ │ │ │ │ │ │ │ │ │ │ │ │ │ │ │ │ │ │ │
	고(이하"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
	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
	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
	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
	· 한다.
	④제1항의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
	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
	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
	간·광고비용(제3항의 경우 그 분담
	내역을 포함한다) 등을 관할선거구

현 행	개 경 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
	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
	고를 할 수 없다.
	⑥광고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한다.
第85條(地位를 이용한 選擧運動禁止)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公務員은 그 地位를 이용하여 選	1
擧運動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公務	
員이 그 所屬職員이나 第53條(公務	
員등의 立候補)第1項第4號 내지 第	
6號에 規定된 機關등의 任・職員	
또는 公職者倫理法 第17條(退職公	「공직자윤리법」
限)의 規定에 의한 有關私企業體	
및 協會의 任・職員을 대상으로 한	
選擧運動은 그 地位를 이용하여 하	
는 選擧運動으로 본다.	

개 정 안 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第86條(公務員등의 選擧에 영향을 미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 치는 행위금지) ①公務員(國會議員 치는 행위금지) ①-----과 ユ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 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第53條(公 務員등의 立候補)第1項第4號 및 第 6號에 規定된 機關등의 常勤 任・ 職員,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 원회위원과 鄕土豫備軍小隊長級이 상의 幹部.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 中地方自治 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團 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 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 한다)의 常勤 任 · 職員 및 이들 團 體号(市・道組織 및 區・市・郡組 織을 포함한다)의 代表者 또는 國 ----대표자는 다 民健康保險法에 의하여 설립된 國 음 각호의 어느 하나-----民健康保險公團의 常勤 任・職員은

현 개 경 안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생 략) ② (생 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 ——의 1에 정하는 기간 동안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각호 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 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현	기 경 안
1 3 1	/개 '8 단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
	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2. (생 략) <신 설>	1.·2. (현행과 같음)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 한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
	<u>으로 행하는 경우</u>
	5.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현	개 경 안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
④·⑤ (생 략) — ——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 ㅡ ㅡ 음)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각호의 어느 하나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다.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7.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u><삭 제></u>
<u>국민건강보험공단</u>	
8. (생 략) ②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89條(類似機關의 設置禁止) ①누구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든지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	
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외에는 候	
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위하여 選舉推進委員會・後援會・	
研究所・相談所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 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 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중앙 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 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政治 資金에關한法律에 의한 後援會는 자금법 |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政黨이나 候補者가 設立・운영하 는 機關・團體・組織 또는 施設은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등에 있어 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당해 選擧區民 을 대상으로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機關・團體 또는 施設의 設立이나 활동내용을 選擧 區民에게 알리기 위하여 政黨 또는 候補者의 名義나 그 名義를 類推할

현	행	개 경 안
수 있는 방법	으로 壁報・懸垂幕・	
放送・新聞・追	通信・雜誌 또는 印刷	
物을 이용하기	l나 기타의 방법으로	
宣傳할 수 없	다. 다만, 정치자금에	 다만, 「정치자
관한법률 제62	조의5(우편·통신에 의	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
한 모금) 또는	같은 법 제6조의6(광	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
고에 의한 모	금)의 규정에 의한 모	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
금을 위한 광	고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第91條(擴聲裝置	와 自動車등의 사용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
제한) ① (생	략)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③누구든지 지	ト동차를 사용하여 選	③
學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	
의 規定에 의	한 演說・對談場所에	
서 정지된 자	동차에 승차하여 選擧	자동차
運動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第6項	
의 規定에 의	한 宣傳壁報등을 자동	
차에 부착하¢	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政黨・候補ネ	・選擧事務長 또는	4

- 정 選擧連絡所長은 第3項 但書의 規定 에 의한 경우외에 다음 各號에 의 한 數이내에서 管轄選舉管理委員會 가 교부한 標識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第64條(盲傳壁報)의 盲傳壁 --선전벽 報・第65條(選舉公報)의 選舉公報 보 및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및 第66條(小型印刷物)의 小型印刷 物을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4. 自治區・市・郡議員選擧 候補者마다 각 1대・1척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畵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의 배부ㆍ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등에 있어 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創黨準 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취 케 - 경-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 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 다)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政黨의 명 칭 또는 候補者의 姓名을 나타내는 廣告,人事狀,壁報,사진,文書・圖 畵, 印刷物이나 錄音・錄畵데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 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 다. 다만,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선거운동)제2호의 규정에 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 의한 명함을 선거일전일까지 직접 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 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 · 비속 중에 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

ਹ ਹ	계 78 년
	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選擧日前 90日부터 選	<u> </u>
擧日까지는 政黨 또는 候補者의 名	
義를 나타내는 著述・演藝・演劇・	
映畵ㆍ사진 기타 물품을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廣告할	
수 없으며, 候補者는 放送・新聞・	
雜誌 기타의 廣告에 出演할 수 없	
다. 다만, 選擧期間이 아닌 때에 定	「신
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2條	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用語의 定義)의 規定에 의한 定期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
刊行物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법으로 廣告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第100條(錄音器등의 사용금지) 누구든	제100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
지 選擧期間중 제79조(公開場所에	이 법의 규정에
서의 演說・對談)의 公開場所에서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 演說・對談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錄音器나 錄畵器(비디오 및 오 —	

혂 개 경 안 디오器機들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第103條(各種集會등의 제한) ①누구든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①----지 選舉期間중 選舉區民을 대상으 로 하거나 選擧가 실시되는 地域안 에서 향우회・宗親會 또는 同窓會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特別法에 ----- 다만. 대통 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 中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하다. 보조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 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 由總聯盟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 원회는 選擧期間중 會議 기타 어떠 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u><신 설></u>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
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
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혂 개 경 안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 최할 수 없다. ②~④ (생 략) ③~⑤ (현행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음) 第105條(行列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105조(행렬등의 금지) ①-----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2인(후 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 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 를 지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각호의 어느 하나-----행위를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 · 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현행과 같음) 1.~3. (생 ②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標識

현 - 행	개 경 안
物을 휴대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다만, 제1항 본문 단서에 규정된
	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하지 아니하다.
第108條(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등)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누구든지 選擧期間開始日부터 選	①선거일전 6일
擧日의 投票마감시각까지 選擧에	
관하여 政黨에 대한 支持度나 當選	
人을 예상하게 하는 輿論調査(模擬	
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	
위와 그 결과를 公表하거나 인용하	
여 報道할 수 없다.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第109條(書信・電報등에 의한 選擧運	제109조(서신ㆍ전보등에 의한 선거운
動의 금지) ①누구든지 選擧期間중	동의 금지) ①
選擧權者에게 書信・電報・모사전	
송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을 이용하	
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개 경 안 인터넷(광고들 제외한다)・電話(컴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제82조의7 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설 (인터넷 광고)의 규정에 따른 광고 치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에 한한다]----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111條(議政活動 보고) ①國會議員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또는 地方議會議員은 報告會 등 集 會・보고서(印刷物, 錄音・錄畵物 및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 인터넷·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 인터넷 또는 電話(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설치한 電話의 경 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 우를 제외한다)를 통하여 議政活動 를 제외한다) 또는 축사 · 인사말(게 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選擧區活動 기타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選擧區 民(行政區域 또는 選舉區域의 변경 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選擧區民 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만, 大統領選擧・國會議員選擧・ 地方議會議員選舉 및 地方自治團體 의 長選擧의 선거일전 90일부터 選

행 현 개 경 안 擧日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 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 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신 설>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 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 량의 범위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 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 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 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 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 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 명단의 양도 • 대여 및 사용의 금지

개 경 안 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 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 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③議政報告會의 告知壁報와 標識의 (5)---規格・數量 기타 議政活動報告에 ----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 신청 그 밖의-----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②-----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 각호의 어느 하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의례적 행위 가.~아. (현행과 같음) 가.~아. (생 략) <신 설> 자. 읍 · 면 · 동이상의 행정구역단 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 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 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현 행	개 경 안
т о	711 O E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부상
	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
	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
	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
	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
	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구호적·자선적 행위	3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재해구호법</u> 의 규정에 의한 구	나「재해구호법」
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	
함한다) 및 <u>대한적십자사조직법</u>	「대한적십자사 조직
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	법
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u>장애인복지법</u> 제48조(장애인복	다. <u>「장애인복지법」</u>
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유 료복지시설을 제외	
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वे	행		71)	정	- 9}	
<u></u>	8		/ II 	~ o	ŭ. 	
제공하는 행	의					
라. 국민기초신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	라.	「국민기	초생활	보장	럽 <u>」</u>
급권자인 중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_		. — — — — -		
• 구호금품	을 제공하는 행위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4. 직무상의 행약	위	4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				
자체사업계	획과 예산으로 행하	_				
는 법령에 :	의한 금품제공행위	_		금품	제공형	행위(지방
		7	아치단체/	가 표창	• 포싱	을 하는
		<u>7</u>	경우 부성	상의 수	여를 🧷	제외한다.
		Ċ	이하 나목	-에서 같	<u> </u>	
나.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사업계획	나.				
과 예산으로	로 대상·방법·범위	_				
등을 구체적	ị 으로 정한 당해 지	_				
방자치단체	의 조례에 의한 <u>포상</u>	_				금품제
및 금품제공	-행위	<u></u>	공행위 <u></u>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	다.				
하는 국가기관	노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자체사업계	획과 예산으로 당해					

현 행	기 경 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	
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ㆍ	
자선행위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u> 자선행위</u>
4조(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ㆍ지방	라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u>정부투자</u>	<u>「정부</u>
<u>기관관리기본법</u> 제2조(적용범위)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u>기</u>	<u>-</u>
<u>타</u>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	밖에
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	
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	
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	
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	
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ㆍ	
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	
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	
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	

개 정 안 혀_ 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 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⑤各級選舉管理委員會(投票區選舉管 理委員會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 관리위워회-----한의 主體 내용 및 기간 기타 필 ----- 밖에 요한 사항을 廣告등의 방법으로 弘 報하여야 한다.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등의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寄附行爲制限)①(생략) 기부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第1項에서 "候補者 또는 그 家族 과 관계있는 會社등"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會社등을 말 ----각호의 어느 하나-----하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3. 候補者가 소속한 政黨이나 候補 -----「정치자금법」 者를 위하여 設立한 政治資金에關

	개 경 안
<u>전</u> 생	개 경 린
<u>한法</u> 律에 의한 後援會 第117條(寄附받는 행위등의 금지) 누	 제117조(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
구든지 選擧에 관하여 政治資金에	「정치자금법」
關한法律 第12條(寄附의 制限) 各號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寄附를 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
구하거나 그로부터 寄附를 받을 수	
없다.	<u>.</u>
제119조(選擧費用등의 定義) ①이 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 ①
에서 "選擧費用"이라 함은 당해 選	
擧에서 選擧運動을 위하여 소요되	
는 金錢・物品 및 債務 기타 모든	
財産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	
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	
서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	
議員選舉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擧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포함	 선거
_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	
하는 費用을 말한다. 이 경우 이 法	
에 위반되는 選擧運動을 위하여 支	

- 경 費用과 寄附行為制限規定을 出한 위반하여 支出한 費用 및 第三者가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候 補者・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 또는 會計責任者와 通謀하여 당해 候補者의 選擧運動을 위하여 支出 한 費用 및 寄附行爲制限規定을 위 반하여 支出한 費用은 모두 選舉費 用으로 본다. ②・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이 법에서 "회계책임자"라 함은 <신 설>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 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 신고된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말한 다.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선|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 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게 정
계 '
1.~6. (현행과 같음)
7.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u>3천5백만원+(인구수×50원)</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통계법」

현 행	개 경 안
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第122條의2(選擧費用의 補塡등) ① 선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 ①
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	
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제132조(수	「정치자금법」
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의 규정에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
의하여 제출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출한 회계보고서 출한
지출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	
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	
는 선거비용을 말하며, 허위로 보고	말한다
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	
운동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기부행	

현 행	개 경 안
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	
용을 제외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	
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	
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u>시·군의원선거</u>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선거	
가.ㆍ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u>비례대</u>	2비례대표
<u>표시·도의원선거</u>	<u>지방의회의원선거</u>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	
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신 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의 ————————————————————————————————————

현 - 행	기 경 안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
	하지 아니한다.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2.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
	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
	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
	로 보고된 비용
	3.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
	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지출된 비용
	4. 후보자등록기간중 제135조(선거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
	상)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된
	수당·실비 또는 이 법에 따라 제
	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
	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
	의 비용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출을 증빙하

현	행	개 경 안
		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
		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6.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
		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
		족·소속정당 또는 제3자의 차
		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
		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7.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
		<u>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u>
		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
		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8.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
		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
		<u>입·제작비용</u>
		9. 시외전화ㆍ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개 경 혀 및 정보이용요금 10.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③----각호의 어느 하나---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 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 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5 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第65條(選擧公報)의 規定에 의한 2.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選舉公報의 發送費用과 郵便料金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과 책 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삭 제> 3. 第66條(小型印刷物)의 規定에 의한[책자형 小型印刷物과 傳單型 小型 印刷物의 發送費用과 郵便料金 4.~7. (생 략) 4.~7.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 밖에 費用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현 행 : 개 정 안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23條(會計責任者의 選任등) ①政黨

(大統領選舉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예비후보자를 포함하며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選擧連絡所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 후보 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 2.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 : 제61 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규정 에 의한 설치신고를 하는 때

<삭 제>

정치자금법 이관

②候補者 또는 候補者의 選擧事務

長이나 選擧連絡所長은 會計責任者

를 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뜻

을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

로 申告하여야 한다.

③會計責任者는 選擧事務員중에서

會計事務補助者를 둘 수 있다.

④政黨 또는 候補者가 會計責任者

를 選任・申告하는 때에는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規定에

의한 選擧費用制限額 한도내에서

會計責任者가 支出할 수 있는 금액

의 最高額을 정하고 會計責任者와

그 會計責任者를 選任한 政黨의 代

表者 또는 候補者가 함께 署名・捺

印한 約定書(選擧事務所의 會計責任

者에 한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ユ 約定書와 會計責任者가 選擧費

用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자신의 責任하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하는 宣誓書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하 여 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 連絡所長이 會計責任者를 겸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候補者 가 會計責任者를 겸하는 경우에는 約定書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⑤會計責任者가 事故등으로 인하여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거나 解任 또는 闕位된 때에는 選任權者는 지 체없이 會計責任者를 選任하고 第4 項의 約定書와 宣誓書를 첨부하여 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 되, 그 사유를 기재한 解任書 또는 解任書의 寫本을 會計責任者의 交 替申告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6會計責任者의 交替가 있는 때에 는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현 행 | 개 정 안

引繼・引受書을 작성하여 引繼者와 一 引受者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124條(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 會計

責任者는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 選任・申告되기 전에는 選擧費用을 収入・支出할 수 없다.

第125條(會計責任者의 選任・申告전

의 會計事務擔當) ①會計責任者의選舉費用의 收入과支出에 관한 事務는 第127條(選舉費用의 收入・支出)의 規定에 준하여 候補者 또는 候補者가 되고자하는 者(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政黨의 會計責任者를 포함한다)가 담당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②政黨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가 담당한다.

<삭 제>

정치자금법 이관

<삭 제>

현 행 가 경 안

포함한다)가 會計責任者를 選任・申告한 때에는 選任・申告전의 選舉費用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引繼・引受書를 작성하여 引繼・引受者가署名・捺印한 후 現金 및 會計帳簿기타 關係書類와 함께 會計責任者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126條(選舉費用의 收入範圍) 選舉費

用의 收入은 政黨(大統領選擧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의 選擧運動目的의 資産(借入金을 포함한다)・政治資金에關한法律에 의하여 後援會가 寄附하는 金

黨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會計責任者를 選任・申告한 때에는 즉시 당해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

品 및 所屬政黨의 支援金에 한한다.

第127條(選擧費用의 收入・支出)①政

<삭 제>

정치자금법 이관

<삭 제>

所의 所在地를 주된 營業區域으로 하는 金融機關에 選舉費用의 收入 과 支出을 위한 預金計座를 開設하 고,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의 姓 名・預金主名・金融機關名・預金의 종류・預金計座番號를 管轄選舉管 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 ②會計責任者는 모든 選舉費用의 收入과 支出을 第1項의 預金計座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 ③會計責任者가 選任・申告된 후에는 會計責任者가 아니면 選舉費用을 支出할 수 없다. 다만, 會計責任者로부터 支出의 目的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書面으로 위임받은 會計事務補助者가 支出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할

췞

현

개 경 안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예 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 드 또는 수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 미 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 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선 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28條(預金通帳의 寫本提出) 會計責 <삭 제> 任者가 第132條(收入과 支出報告書) 정치자금법 이관 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費用의 收入 과 支出報告書를 제출하는 때에는

현 행 기 개 정 안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第127條(選 學費用의 收入・支出)의 規定에 의 한 預金通帳의 寫本을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第129條(會計帳簿의 비치·기재) ①會 計責任者는 會計帳簿를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 1. 選擧費用의 모든 收入과 支出内 譯
- 2. 選擧費用의 收入・支出年月日과 收入・支出金額 및 第126條(選擧 費用의 收入範圍)의 規定에 의한 收入을 제공한 者 또는 支出을 받 은 者의 姓名・住所・住民登録番 號・電話番號

②第1項의 收入과 支出이 金錢외의 財産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 品名 및 價額을, 手票인 경우에는 發行金 <<u>삭 제></u> 정치자금법 이관 현 행 개 정 안

融機關名・금액과 手票番號들 같이

기재한다.

다.

③會計責任者는 자동차(選擧運動用 자동차를 말한다), 擴聲裝置, 印刷 物, 施設物 기타 裝備·物品을 選擧 運動을 위하여 무상 또는 통상의 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도 시중의 통상적인 去來 價格 또는 賃借價格에 상당하는 價 額을 選擧費用으로 계상하여야 한

④第1項의 會計帳簿의 종류・規格 과 그 기재방법 및 제3항의 價額算 定方法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으로 정한다.

第130條(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會計 責任者(會計事務補助者 및 會計責 任者 選任・申告전의 會計事務擔當 者를 포함한다)가 選舉費用의 收入

<u><삭 제></u>

현 행 기 경 안

과 支出을 하는 때에는 領收證 기

타 證憑書類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만,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31條(選擧費用에 대한 會計마감)

會計責任者는 選擧費用에서 支出하

여야할 모든 費用을 選擧日후 20日

까지 精算하고 選舉費用에 관한 會

計를 마감하여야 한다.

第132條(收入과 支出報告書) ①會計責

任者는 第127條(選擧費用의 收入・

支出)第2項의 規定에 의한 預金計

座의 去來內譯書・第129條(會計帳

簿의 비치・기재)第1項第2號에 規

定된 사항을 기재한 選擧費用의 收

入과 支出明細書·第130條(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規定에 의한 領

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寫本 및 사

실대로 기재하였음을 다짐하는 會

計責任者의 宣誓書를 첨부하여 選

<삭 제>

정치자금법 이관

<삭 제>

현 행 기 경 안

舉費用의 收入과 支出報告書言 選舉日후 30日(大統領選舉 및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選舉日후 40日)까지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會計責任者가 第1項의 收入과 支出報告書를 제출하는 때에는 政黨의 代表者 또는 候補者와 選舉事務長의 連帶署名·捺印을 받아야 한다. 다만, 選擧連絡所의 경우에는 選擧連絡所長의 署名·捺印을 받아야 한다.
- ③당해 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別 選擧費用에 관한 收入과 支出報告 書寫本을 그 報告書提出마감일부터 7日이내에 公告하여야 한다.
- ④第1項의 收入과 支出報告 및 公告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현 행 | 개 정 안

第133條(報告書등의 閲覧 및 寫本交

付) ①第132條(收入과 支出報告書)의 規定에 의하여 收入과 支出報告書을 받은 選擧管理委員會는 다음 각호의 서류의 寫本을 당해 選擧管理委員會 事務所에 비치하고,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報告書 寫本의公告日부터 3月間(이하 이 條에서"閱覽期間"이라 한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수입과 지출보고서
- 2.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
 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3.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삭 제>

현 행 기 개 정 안

<u>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u> <u>서류</u>

②收入과 支出報告書의 내용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異議에 대한 證憑書類를 첨부하여 閱覽期間중에는 언제든지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할 수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選擧管理委員會는 당해 會計 責任者 기타 관계인에게 異議事實 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 지하여야 하며, 會計責任者 기타 관 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日이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選擧管理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 에 의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 에는 그 異議申請內容과 소명내용 을, 그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현 행 기 경 안

⑤閱覽人은 閱覽期間중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에 選舉費用에 관한 收入과 支出報告書 및 그 明細書의 寫本의 교부를 書面으로 申請할 수 있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寫本의 교부에 필요한 費用은 그 寫本의 교부를 申請한 者가 부담한다.

⑦收入과 支出報告書의 열람・공개 및 寫本交付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 다.

第134條(資料提出要求등) ①각급선거 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는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에 관하 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會計帳簿 기타 出納書類를 보거나, 政黨・후보자・예비후보 자・會計責任者 또는 選舉費用에서 支出하는 費用을 지급받거나 받을 權利가 있는 者 기타 관계인에 대 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 에게 이 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 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계좌에 입・출금된 타인의

현 행 기 경 안

- 1. 계좌개설 내역
- <u>2. 통장원부 사본</u>
- 3.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 4.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뢰

인의 인적사항 ③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지 제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알게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혂 雅 -정 ⑤選擧管埋委員會는 第133條(報告書 등의 閱覽 및 寫本交付)第2項의 異 議申請과 이 條第1項의 規定에 의 한 閱覽・보고 또는 제출된 資料등 에 의하여 會計帳簿 기타의 出納書 類 또는 收入과 支出報告書의 내용 중 허위사실의 기재・不法支出이나 超過支出 기타 이 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管 轄捜査機關에 告發 또는 捜査依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135條(選舉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과 실비보상) ①~③ (현행과 같음) 과 實費補償) ①~③ (생 략) ④會計責任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 <삭 제> 하여 選舉事務關係者에게 手當・實 정치자금법 이관 費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選擧 事務長등이 지정한 金融機關의 金計座에 入金하는 방법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第135條의2(選擧費用補塡의 제한) ①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選擧區選擧管埋委員會と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選舉費用을 補塡함 에 있어서 選舉事務所의 會計責任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第132條(收 入과 支出報告書)第1項의 規定에 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의한 選舉費用의 收入과 支出報告 書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費用을 補塡하지 아니하다. ②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후보 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選舉事務所의 會計責任者가 당해 ----이 법 또는 「정치 選擧와 관련하여 이 法에 規定된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有罪의 判決 자금법 1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 이 확정되거나 選擧費用制限額을 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補塡할 費用중 그 違法行爲에 소요된 費用 또는 選擧 費用制限額을 초과하여 지출한

현 행	개 경 안
用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補塡하지 아니한다.	
③第2項에 規定된 者가 이 法에 規	③당해 선거와 관
定된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起訴되	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거나 選擧管理委員會에 의하여 告	제49조
發된 때에는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	
그 違法行爲에 소요된 費用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補塡을 猶豫한다.	
④~⑥ (생 략)	④~⑥ (현행과 같음)
第136條(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	<삭 제>
①會計責任者는 第129條(會計帳簿	 정치자금법 이관
의 비치・기재)의 會計帳簿와 第	
130條(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領	
收證 기타 證憑書類를 選擧日로부	
터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②會計責任者는 第1項의 會計帳簿	
기타 證憑書類의 보존을 당해 選擧	
管理委員會에 委託할 수 있다.	
第137條(政綱・정책의 新聞廣告등의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 ①選擧가 임박한 時期에 있	제한) ①

현 행 개 정 안

어서 政黨이 행하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정기간행 물(이하 이 條에서 "日刊新聞등"이 라 한다)에 의한 政綱・정책의 弘 報,黨員・候補志望者의 모집,黨費 募金, 政治資金募金(大統領選擧에 한한다) 또는 選擧에 있어 당해 政 黨이나 推薦候補者가 사용할 口 號・圖案・정책 기타 選擧에 관한 意見蒐集을 위한 廣告는 다음 各號 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選 擧期間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3. (생략) ②·③ (생략)

第138條(政綱·政策弘報物의 배부제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 한등) ①~⑤ (생 략) 한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第66條(小型印刷物)第2項의 規定 은 政綱・政策弘報物의 작성에 이 를 準用한다. 이 경우"小型印刷物" 은 "政綱・政策弘報物"로, "地方自 지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 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해138조(정강·정책용보물의 배무제한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강·정책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16면 이내로, 지역구국회

현 - 행	개 경 안
治團體의 長選擧에 있어서는 8面이	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ー 내"는 "地域區市・道議員選擧 및 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
方自治團體의 長選擧에 있어서는 8	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面이내"로 본다.	
第140條(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①政黨이 選擧日전 120일(선	제한) ①
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	
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	
擧日까지 創黨大會・合黨大會・改	
編大會 및 候補者選出大會(이하 이	
條에서 "創黨大會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多數人이 왕래하	
는 公開된 場所가 아닌 場所에서	
소속당원(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	
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권이 있는 당원	투표권
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만을 대상	
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社會通念상	
	•

개 정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黨員이 아닌 者를 초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創黨大會등을 주관하는 ----「정당법」 제10조(창당집회의 정당은 政黨法 第10條의2(創黨集會 의 公開)第2項의 新聞公告를 하는 공개)-----외에 창당대회등의 場所에 5매이내 의 標識를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공고・標識에는 候補者(候補者 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 하 이 項에서 같다)의 사진·姓名 (姓名을 類推할 수 있는 내용을 포 함한다) 또는 宣傳口號등 候補者를 官傳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第1項에서"改編大會"라 함은 政 黨의 代表者의 변경등 黨憲・黨規 상의 組織改編에 관한 案件을 처리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黨員總會 또 는 그 代議機關의 會議등 集會를 말하고, "候補者選出大會"라 함은 政黨의 各級 黨部가 이 法에 의한

현 - 행	개 경 안
選擧의 당해 政黨推薦候補者들 選	
出하기 위하여 政黨法 第31條(公職	제57조의2(당내경선의
選擧候補者의 추천)의 規定에 의하	실시)
여 개최하는 集會를 말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第141條(黨員集會의 제한) ①・②(생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	③「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배분)
 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	
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국가기관등"	<u></u> 한다
이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	
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	
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	
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 현	개 경 안
	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능 재산	
	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	
	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④~⑥ (생 략)	④~⑥ (현행과 같음)
穿	第145條(黨舍揭示 宣傳物등의 제한)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政黨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設	②
	置되는 각 1개의 選擧對策機構와	
	政治資金에關한法律에 의한 後援會	「정치자금법」
	의 事務所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1개의	
	看板을 달 수 있다.	
穿	第146條(選擧方法) ① (생 략)	제146조(선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投票는 직접 또는 郵便으로 하되,	2
	1人 1票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	국회의원선
	거 및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	시·군의원선거
	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

현 행	개 경 안
	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
	마다 투표관리관 1인을 둔다.
	②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
	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投票區選擧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읍·면·동
管理委員會는 選舉日前日까지 投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區마다 投票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	<u> </u>
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	
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	
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	
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	인접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인접한 다	

현 - 행	개 경 안
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u>.</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投票所에는 記票所・投票函・選	⑤참
擧管理委員會委員 및 參觀人의 좌	관인의 좌석 그 밖의
석 기타 投票管理에 필요한 施設을	
設備하여야 한다.	
⑥ · 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所를	8
設置하는 때에는 投票區選舉管理委	
員會는 選擧日전 10日까지 그 명칭	 거관리위원회
과 所在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	
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公告하여	
選擧人에게 알려야 한다.	
⑨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	⑨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	각호의 어느 하나
표사무원을 위촉하되, 選擧日전 3日	
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현	- 행	개 경 안
1. 國家公務員法	제2조에 규정된 국	· 1. <u>「국가공무원법」</u>
가공무원과 <u>地</u> 夫	万公務員法 제2조여	<u>「지방공무원법」</u>
규정된 지방공두	그윈. 다만, 일반직	
공무원중 공안적	[군의 공무원과 특	
정직 및 정무격	직공무원을 제외한	
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銀行法 제2조의	기 규정에 의한 금	· 3. <u>「은행법」</u>
융기관의 직원		
4.·5. (생략) ⑩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第148條(不在者投票	所의 設置) ① (생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區・市・郡選擧	管理委員會는 管	2
轄區域안의 不在表	者投票豫想者의 數	(
와 분포[第38條(7	下在者申告)第1項第	,
5號에 해당하는	地域의 분포를 포	
함한다]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不在者投票期間で	
不在者投票豫想者	가 投票를 마칠	!

개 경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投 票區選舉管理委員會에도 不在者投 표관리관에게도----票所를 設置・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不在者投票所의 投票管理는 당해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또는 投 치・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의 투표 票區選舉管理委員會가 不在者投票 관리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 所叶叶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 원회위원중----員會委員 또는 投票區選舉管理委員 會委員중 3人이상의 委員(이하 "不 在者投票管理委員"이라 한다)을 지 정하여 행하게 한다. 이 경우 在籍 政黨推薦委員은 그가 참여를 포기 하지 아니하는 한 모두 지정한다. ⑤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한 選擧管理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委員會는 不在者投票事務를 보조하 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호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사무를 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不在者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事務員을 둔다. 자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원을 두어

- 개 - 경 - 인 혀 야 하다. ⑥·⑦ (생 략) <u>(6) · (7)</u> (현행과 같음) 第149條(機關・施設안의 不在者投票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 所) ①不在者投票期間そ 第38條(不 소) ①------부재자신고 在者申告)第1項第3號의 不在者申告 인이 소속한 병원・요양소・수용 人이 소속한 機關 또는 施設(船舶) 소 · 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의 長은 管轄區・市・ 郡選舉管理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당해 機關 또는 施設에 不在者投票 所를 設置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 所의 投票管理는 第148條(不在者投 票所의 設置)第4項의 規定에 준하여 지정한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이 出張 -----무재자투표관리위 하여 행한다. 원이나 투표관리관-----④~⑥ (생략) ④~⑥ (현행과 같음)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 ①-----掲載順位号) ①投票用紙에는 候補

혀 - 경 者의 記號・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 政黨名 및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無所屬候補者는 候補者의 政 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의 欄에 "無所屬"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 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 · 도의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 政黨의 기호와 政黨名을 표시하며, 自治區・市・郡議員選舉에 있어서 야 하다. 는 候補者의 記號와 姓名을 표시하 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候補者의 掲載順位를 정함에 있 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或 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는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國會에서 議席 을 갖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추천 을 받은 候補者, 無所屬候補者의 순 으로 하고, 政黨의 게재순위를 정함 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 - 행	개 정 안
재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순으로 한다. 다만,	<단서 삭
自治區・市・郡議員選擧에 있어서	제>
候補者의 揭載順位는 추첨에 의한	
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管轄選擧	4
補者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이나 그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國會에서의 多數議席順	
으로 하되, 그 政黨이 國會에 交涉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團體를 구성한 경우 政黨別로 전국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
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며, 國	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政黨이나 그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政黨	

현 행 기 개 정 안

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無所屬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候補者姓名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政黨이 候補者를 추천하지 아니한 選擧區의 投票用紙에는 당해 政黨의 기호와 政黨名만 게재한다.

〈신 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

-----. <후단 삭제>

취 개 경 안 정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⑥~⑨ (현행 제5항 내지 제8항과 ⑤~⑧ (생 략) 같음) 第151條(投票用紙와 投票函의 작성)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投票用紙와 投票函은 區・市・郡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 選擧管理委員會가 작성하여 選擧日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에 전일까지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 송부하며, 投票用紙 및 投票函의 規 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 格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정하다. 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 계하여야 한다. ②~4) (현행과 같음) ②~④ (생 략)

현 행 | 개 경 안

(5) 温・市・郡選擧管埋委員會는 投 票用紙의 印刷・納品 및 投票區選 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는 과정에 投票用紙의 揭載順位의 앞 順位부 터 2개 政黨(그 政黨이 포기 또는 거부한 때에는 다음 順位의 政黨을 말하며. 自治區・市・郡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의 추첨에 의하여 지정된 2인을 말한 다)이 지명하는 代理人이 참여하여 立會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代 理人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立會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7) (생략)

<신 설>

第153條(投票案內文의 발송) ①區・ 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世帶別로 (5)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현행과 같음)

8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53條(投票案內文의 발송) ①區·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혀 選擧人의 姓名・選擧人名簿登載番 號・投票所의 위치・投票할 수 있 는 時間・投票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 投票參與를 勸誘하 는 내용등이 기재된 投票案內文을 작성하여 管轄區域안의 每世帶에 발송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投票案内文은 선거인명 부확정일후 2일까지 郵便으로 발송 하여야 한다. 다만, 第66條(小型印刷 物)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傳單型 小型印刷物 또는 책자형 小型印刷 物을 발송하는 때에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投票案內文의 발송 을 위한 郵便料金은 國家 또는 당 해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한다. ③·④ (생략)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 까지----②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 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 경 안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 紙의 발송) ①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에게 발송할 投票

③ · ④ (현행과 같음) 지의 발송) ①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 현 행 ,

用紙(の) 市 "不在者投票用紙" 中 で い) と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서 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 또と

觀하에 投票用紙의 一連番號를 절

選擧連絡所長이 지명하는 者의

취한 후 不在者投票用紙를 속봉투

에 넣어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다 -----시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選擧日전 9일까지 不在者申告人

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에게 발송

하되, 第65條(選擧公報)의 規定에

의한 選擧公報와 第66條(小型印刷

物)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책자형

小型印刷物을 함께 동봉하여 발송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된 者가

그 時刻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

는 參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在者投票用

용지(이하 "부재자투표용지"라 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 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 (부재자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부재 자신고인의 거소 · 성명 · 선거인명 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 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전 9 일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

개 경 안

② (현행과 같음)

포기한 것으로 본다.

3-----

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현 행	게 경 안
紙를 발송하지 아니한 不在者申告	
人과 選擧日전 2日까지 不在者投票	
用紙가 반송된 不在者申告人의 名	
單을 작성하여 選擧日前日까지 投	
票區選舉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
한다.	하여야 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
	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투표관리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k]	⑥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용 봉투
<u> <신 설></u>	및 회송용 봉투의 규격·게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55條(投票時間) ①・②(생 략)	제 <u>155</u> 조(투표시간) ①·② (현행과 같
	<u>ㅇ</u>)
③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投票區	③투표관
選舉管理委員會委員은 投票函 및	 리관
記票所內外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投票參觀	
人이 參觀하여야 한다. 다만, 投票	
ı	'

 혀 히	개 경 안
	ળ જિંદ
開始時刻까지 投票參觀人이 참석하	
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選擧人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	
여야 한다.	
④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를 開始하	4
는 때에는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
 不在者投票函 및 記票所內外의 異	는 투표관리관
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不在者投票參觀人이 參觀하	
여야 한다. 다만, 不在者投票開始時	
刻까지 不在者投票參觀人이 참석하	
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不在者申告人으로 하여금 參觀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第156條(投票의 제한) ①・② (생	제156조(투표의 제한)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3
選擧人은 不在者投票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投票할 수 없다. 다만, 第	
I	

	ৰ		- Š	y			개	78	인	
	154條(不有	正者申告	5人에 디	한 表	党票用					
	紙의 발송)第2項	에 해당히	하여 不	下在者					
	投票用紙	를 송부	-받지 못	한 者	와 不					
	在者投票月	用紙가	반송되ㅇ	一不在	三者投					
	票用紙号	송부빈	기 못한	者는	選舉					
	日에 投票	厚所에서	投票す	여야	한다.					
	이 경우	投票	區選舉管	理委員	會는				투	표관리관은
	第154條第	3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					
	者申告人名	宮單과	대조・획	ት인하 고	2, 選					
	擧人名簿	비고린	:에 그 시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	다.								
复	第157條(投票	票用紙気	受領 및	記票	節次)	제157	'조(투표	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選舉人	은 자신	<u>기</u> 이 投票	厚所에	가서	1)-				
	投票參觀。	人의 奓	之觀하에	住民登	登錄證					
	(住民登錄	證이	없는 경우	우에는	官公					
	署 또는	公共機	關이 발전	행한 證	發明書					
	로서 寫眞	真이 첩	부되어 🏻	本人임-	을 확					
	인할 수	있는	旅券・運	轉免許	F證・					
	公務員證	또는	中央選舉	:管理委	員會					

혀 개 경 規則이 정하는 身分證明書를 말한 다. 이하 "身分證明書"라 한다)을 제시하고 本人임을 확인받은 후 投 ---확인받은 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앞에서 選 舉人名簿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②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은 ②투표관리관은----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 송부된 投票用紙를 봉함하여 보관 하였다가 選擧日에 選擧人에게 投 票用紙를 교부하는 때에는 私印捺 印欄에 私印을 捺印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100枚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私印을 미리 捺印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投票區選 ----- <후단 삭제> 學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録마감일 현재 國會의 多數議席順에 의한 第

현 행	개 경 안
- 1黨과 第2黨이 추천한 政黨推薦委	·
 員 각 1人으로 하여금 投票用紙의	
受領·보관 및 投票所에서의 관리	
시에 立會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立會를 포	
이저 키디어는 정기에는 요합을 모 	
③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은	③투표관리관
 身分證明書를 제시하지 아니한 選	
學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選擧人은 投票用紙를 받은 후 기	4
표소에 들어가 投票用紙에 1인의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
레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投票用紙의 해당 欄에 記票한 후	
그 자리에서 記票內容이 다른 사람	
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投票區	투
	표참관인
選舉管理委員會委員과 投票參觀人	五省ゼゼ

개 경 안 의 앞에서 投票函에 넣어야 한다. ⑤~⑦ (생략) (5)~(7) (현행과 같음) ⑧投票用紙의 봉함・보관・교부방 ⑧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법 및 記票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한다. 다. 第158條(不在者投票) ①不在者申告人 제158조(부재자투표) ①----名簿에 올라 있는 選舉人은 不在者 投票期間そ 不在者投票所에 가서 不在者投票管理委員斗 不在者投票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 參觀人**앞**에서 區・市・郡選舉管理 관(이하 이 조에서 "부재자투표관 委員會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 겉 리위원등"이라 한다)----봉 一、不在者投票用紙 및 身分證明 書(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 -----발송용 봉투 는 官公署 또는 公共機關이 발행한 證明書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本人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제시하 고 本人임을 확인받은 후 記票所에

들어가 不在者投票用紙에 1인의 候	— — ——
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를 選擇하여 不在者投票 用紙의 해당 欄에 記票한 후 그 자	— —— ———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를 選擇하여 不在者投票 用紙의 해당 欄에 記票한 후 그 자	
用紙의 해당 欄에 記票한 후 그 자	
 리에서 記画內突이 다른 사라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속봉투회송용 봉	투에
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넣어 봉함하고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個	
所에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한 것	
임을 확인하는 確認印을 捺印받아	
不在者投票管理委員과 不在者投票	
参觀人의 앞에서 不在者投票函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不在者投票所	
에서 投票하기 전에 미리 記票를	
하여 가지고 온 不在者投票用紙는	

현	퀭 .	개 경 안
_		/II 0 E
無效로 하며, 기	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身分證明	彗를 제시하지 아니	
한 不在者申告/	人에게 投票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	l다.	·.
②不在者投票管理	理委員은 不在者投	②부재자투표관리위원등은 부재자
票期間중 매일의	리 不在者投票마감후	투표기간중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
또는 2回(오전	12시와 오후 4시)에	후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걸쳐서 不在者抄	坄票參觀人의 參觀하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고 부재자투
에 不在者投票函	函을 開函한 후 確認	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우체국장
印의 누락여부	를 확인하여 確認印	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이 누락된 것은	이를 보완・捺印하	하여야 한다.
고 不在者投票	觜數를 計算하여 管	
轄郵遞局長에게	引繼하여 登記郵便	
으로 발송하여이	: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居所投票者[第	5148條(不在者投票所	④거소투표자
의 設置) 및 第	5149條(機關・施設안	
의 不在者投票所	f)의 規定에 의한 不	
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하는 者를 제	
외한다]는 居所の	州서 管轄區・市・郡	
	l	

혀 - 颜 개 경 안 選擧管埋委員會로부터 송부받은 不 在者投票用紙에 1人의 候補者를 選 擇하여 不在者投票用紙의 해당 欄 에 記票한 후 속봉투에 넣어 봉함 -----회송용봉투에 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하여야 한다. 居所・姓名을 기재한 후 本人의 私 印을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個所에 捺印(拇印 또는 署名을 제외한다)하여 登記郵便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⑥確認印의 規格・날인방법 기타 ⑥무효투표지의 처리방법 및 신분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 증명서의 종류 그 밖에----規則으로 정한다. 第160 條(選擧管理委員會委員의 過半 <삭 제> 數參席) 投票를 開始한 이후에는 投票所列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在 籍委員 過半數가 참석하여야 하며, 늦어도 投票開始 1時間전까지 출석 하여야 한다.

혀 개 경 안 第161條(投票參觀) ①投票區選擧管理| 제161조(투표참관) ①투표관리관은-委員會는 投票參觀人으로 하여금 投票用紙의 交付狀況과 投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 ②投票參觀人은 政黨・候補者・選 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長이 候 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 補者마다 2인을 선정하여 選擧日전 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 여 선거일전 2일까지 읍 • 면 • 동선 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야 하다. ③投票參觀人은 12인으로 하되, 第2 ③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 投票 區選擧管理委員會가 추첨에 의하여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지정한 者를 投票參觀人으로 한다. 다만, 投票參觀人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4인에 미달 하는 때에는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 가 그 投票區를 관할하는 區・市・ 위원회----

현 행	개 경 안
郡의 區域안에 居住하는 選擧權者	
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投票參觀	
人으로 한다.	
④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가 第3項의	④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規定에 의하여 投票參觀人을 지정	
하는 경우에 候補者數가 12人을 넘	
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1人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12人을	
지정하고, 候補者數가 12人에 미달	
하되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人員	
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 候補者別	
로 1人씩 선정한 者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人員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
⑤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⑤
選擧連絡所長은 그가 선정한 投票	
參觀人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는 언제든지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에 申告하고 交替할 수 있으며, 選	

현	기 경 안
擧日에는 投票所에서 交替申告	할
수 있다.	
⑥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投 ⑥
票區選舉管理委員會가 선정한 投	 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參觀人은 정당한 사유없이 參觀	을
거부하거나 그 職을 辭任할 수 없다	7.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	한 ⑧투표관리관은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u>n</u>
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	분
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	oţ
한다.	<u>.</u>
⑨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	用 ⑨투표관리관은
紙의 交付狀況과 投票狀況을 쉽	게 게
볼 수 있는 場所에 投票參觀人席	으는
마련하여야 한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	參 ①투표관리관은
	<u> </u>

 	기 경 인
	/11 /8 현
親人の 投票干渉 또는 不正投票 バ ー	
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	밖에
_ 을 발견하고 그 是正을 요구한 경	
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①~⑭ (생 략)	⑫~⑭ (현행과 같음)
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 ①不在者投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 ①
票所를 設置・운영하는 選擧管理委	구·시·군
員會는 不在者投票參觀人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은
 금 不在者投票狀況을 參觀하게 하	
여야 한다.	
②不在者投票參觀人은 政黨・候補	2
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	
이 候補者마다 不在者投票所別로 2	
人을 선정하여 選擧日전 8일[第149	
條(機關·施設안의 不在者投票所)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의 不在	
者投票參觀人은 그 不在者投票所의	
投票日전 2日]까지 당해 區・市・郡	관할구·시·군
選擧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擧管	 선거관리위원회
	·

埋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申 告한 후 交替할 수 있으며 不在者 投票期間 そ에 一 不在者投票所에서 交替申告를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 參觀人의 선정이 없거나 한 候補者 가 선정한 不在者投票參觀人밖에 없는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擧 -----관할구・시・군선거 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舉管理委 관리위원회--員會가 選舉權者중에서 本人의 승 낙을 얻어 4人에 달할 때까지 선정 한 者를 不在者投票參觀人으로 한다. ④第161條(投票參觀)第6項・第7項・ 第9項 내지 第12項의 規定은 不在 者投票參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 우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不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는 選擧管 할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 理委員會"로 본다. 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

현 행	개 경 안
	참관인"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第163條(投票所등의 出入制限) ①投票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 ①
하려는 選擧人・投票參觀人・投票	
區選擧管理委員會 및 ユ 上級選擧	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管理委員會의 委員과 職員 및 投票	
事務員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投	
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②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②직원 •
世界事務員 및 投票參觀人이 投票	 투표관리관
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	
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識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規	
定에 의한 標識외에는 選擧와 관련	
한 어떠한 表示物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不在	4
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후단

현 행	게 경 안
	" <u>-</u>
"投票區選舉管埋委員會" 一"不在者	삭제〉
投票所를 設置・운영하는 選擧管理	
委員會"로 본다.	
第164條(投票所등의 秩序維持) ①投票	제164조(투표소등의 질서유지) ①투표
	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
는 職員은 投票所의 秩序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投票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投票所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援助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第1項의 요구에 의하여 投票所안	3
에 들어간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	
署長은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투표관리관
長의 指示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 회복되거나 委員長의 요구가 있는	투표관리관
 때에는 즉시 投票所안에서 退去하	
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不在	4

연 행	개 경 반
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경우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委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
員"은 "不在者投票管理委員"으로,	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
"職員"은 "不在者投票事務員"으로,	사무원"은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警察公務員・憲兵 또는 警察官署	
長"으로 본다.	
第166條(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言動	第166條(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言動
禁止등) ①投票所안에서 또는 投票	禁止등) ①
所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言	
動을 하거나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	
를 支持 또는 反對하는 言動을 하	
는 者가 있는 때에는 投票區選舉管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
理委員會委員長・委員 또는 職員은	 무원
이를 制止하고, 그 命令에 불응하는	
때에는 投票所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退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
委員 또는 職員은 필요하다고 인정	

면 행	게 경 만
하는 때에는 止服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援助를 요구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去당한	②
選擧人은 최후에 投票하게 한다. 다	
만,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은	투표관리관
投票所의 秩序를 문란하게 할 우려	
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	
에라도 投票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不在	5)
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이 경우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委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
員"은 "不在者投票管理委員"으로,	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
"職員"은 "不在者投票事務員"으로,	무원"은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警察公務員・憲兵 또는 警察官署	
長"으로, "選擧日에"는 "不在者投票	
所안에서"로 본다.	
第167條(投票의 秘密保障) ① (생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현행과

현 - 행	개 경 안
략)	같음)
②選擧人은 投票한 候補者의 姓名	②
이나 政黨名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	
떠한 경우에도 陳述할 義務가 없으	
며, 누구든지 選擧日의 投票마감시	
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陳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放	
送局・라디오放送局・定期刊行物의	「신문 등의
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
	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따
— 여 選擧日에 投票所로부터 100미터	 른 일간신문사
밖에서 投票의 秘密이 침해되지 않	
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投票마감	
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公表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第168條(投票函등의 封鎖・封印) ①投	제168조(투표함등의 봉쇄ㆍ봉인) ①투
	표관리관
 所를 닫는 時刻이 된 때에는 投票	

所의 入口를 닫아야 하며, 投票所안 에 있는 選擧人의 投票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投票參觀人의 參觀하에 출석한 委 員 全員과 함께 投票函의 投入口와 그 자물쇠를 封鎖·封印하여야 한 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封鎖・ 封印을 거부하는 委員이나 參觀을 거부하는 投票參觀人이 있는 때에 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投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第169條(投票錄의 작성) 投票區選擧管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 理委員會는 投票錄을 작성하여 委 員長과 출석한 委員 全員이 署名・ 야 한다. 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 유없이 署名・捺印을 거부하는 委 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 한 것으로 보고, 投票錄에 그 사유 를 기재한다. 第170條(投票函등의 송부) ①投票區選 제170조(투표함등의 송부) ①투표관리

개 경

	현 행	1 개 경 안
	學管埋委員會委員長은 投票가 世 년	권
	후 지체없이 投票函 및 그 열쇠와	
	投票錄 및 殘餘投票用紙를 管轄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函을	2
	송부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投票	
	參觀人 1人과 호송에 필요한 正服	
	을 한 警察公務員을 2人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投票參觀人은 10人을 넘지 못하며,	
	10人을 넘는 때에는 投票區選擧管	투표관리관이
	理委員會가 추첨에 의하여 10人을	
	 선정한다.	
第	5171條(投票關係書類의 引繼) 投票區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관
	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가 끝난 후	 리관은
	選擧人名簿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号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	
	員會委員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	5172條(開票管理) ① (생 략)	제172조(개표관리) ① (현행과 같음)

 현	게 경 안
②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2)
의하여 2개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	
는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	
理委員會委員을 각 開票所에 비등	
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法에 의한	
開票管理에 관하여 당해 區・市・	
郡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 委員	
[選擧管理委員會法 第4條(委員의 任	「선거관리위원회법」
補助委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	
서 같다]數의 過半數의 議決로 決定	
하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	
員長의 職務는 각각 당해 委員長과	
副委員長 또는 委員長이 지명한 委	
負이 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選舉管理委員會法 第4條第13項	④「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法 第5條(委員長)第4項의	
規定은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	

현 행	개 경 안
하는 選擧의 경우에 관하여 이	트
準用한다.	<u>.</u>
第174條(開票事務員) ①・②(생 弓	F) 제174조(개표사무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	
은 第2項의 法院의 公務員과 교	직 직
원 및 金融機關의 職員중에서 集	計
事務를 담당할 開票事務員을 지	 정
하여야 한다.	
第176條(不在者投票의 開票) ①區	· 제176조(부재자투표의 개표) ①
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郵便으	로
송부된 不在者投票를 접수한 때	에
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	會
의 政黨推薦委員의 참여하에 회	송이를
용 겉봉투의 確認印 또는 居所投	
者의 私印捺印 여부를 확인하여	<u>o]</u>
를 즉시 郵便投票函에 投入・보	관
ㅡ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177條(投票函의 開函) ①投票函	을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①투표함을

현 행 | 개 경 안

開函하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 理委員會委員長은 그 뜻을 宣布하고, 출석한 委員 全員과 함께 投票 函의 封鎖와 封印을 檢查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檢查를 거부하는 委員이나 參 觀을 거부하는 開票參觀人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생 략)

第178條(開票의 진행) ① (생 략)

②候補者別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 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에 있어서는 政黨別 득표수를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公表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投票區別로 集計·작성된 開票狀況 表에 의하여 投票區 單位로 하되,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 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 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 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현행과 같음)

(2)---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현행과 같음)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
- _____

취 케 委員 全員은 公表전에 得票數를 檢 閱하고 開票狀況表에 署名・捺印하 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開票事務를 지연시키는 委員이 있 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 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 하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생 략) 第179條(無效投票) ①다음 各號의 1에 제179조(무효투표) ①----각호의 어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한다. 느 하나----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6. ①標외에 다른 사항을 記入하게 6. ①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 어서는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欄외에 ○標를 추가 한 것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不在者投票의 경우에는 第1項의

개 경 안 規定에 의하는 외에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投票도 이를 無效로 의 어느 하나-----하다. 1. 正規의 회송용 겉봉투를 사용하 1. ----회송용 봉투-----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2. 속봉투가 없거나 회송용 겉봉투 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이 경우 것 속봉투가 있더라도 投票紙가 속봉 투안에 있지 아니한 것은 속봉투 가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3.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부분에 確 認印 또는 居所投票者의 私印捺印 이 전부 누락된 것 4. (현행과 같음) ③----각호의 어느 하나---4. (생략)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投票 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2. 한 候補者欄에만 2이상 記票되거 나 重疊記票된 것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

혀 된 것 3. 記票欄외에 記票된 것으로서 어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 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 느 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7. (생략) 4.~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81조(개표참관) ① (현행과 같음) 8. (생략) 第181條(開票參觀) ① (생 략) ②第1項의 開票參觀人은 區・市・ 郡選舉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안에 서 실시되는 選舉에 후보자를 추천 하는 정당은 6인을, 自治區・市・郡 -무소속후보자 議員選舉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 는 3인을 선정하여 選舉日前日까지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 參觀하게 하되 申告후 언제든지 交替할 수 있으며 開票日에는 開票所에서 交替申告를

			- 히				-	/}}	궛		- (} -		
	_						,	П	6		긴		
	할 수 있다		이러	即 正 会 都	ED 1								
	③第2項의	規定에	의안 [用宗參賽	児 人	(3)-							
Ġ	의 申告가	없거나	한 政黨	巣 또는	한					. — — — -			
佢	戻補者 み	선정한	開票	參觀人も	라에					. — — -			
O 出	없는 때에	는 區•	市・郡	選舉管理	里委								
Ę	員會가 選	學權者そ	-에서	本人의	승								
Ŀ	†을 얻어	12인(자:	치구•	시・군의	리원				지역	[구지	시기구	ㆍ시	• 군
ᄾ	선거에 있어	어서는 <i>(</i>	 }인)에	달할 때	대까	의육	원선거-						
フ	 지 선정한	者를 開	票參鸛	人으로	한								
Ţ	구.												
(2	①~① (생	략)				4-	~① (ক্	현행고	라 길	<u> </u> 음)			
第1	184條(投票	〔紙의 구	분) 開]票가 급	글난 ス	स <u>्</u> री 184	1 조(투표	포지:	의 -	구분)			
τ	때에는 投	'票區別로	岩 開票	한 投票	票紙								
ĭ	를 有效・	無效로	구분하	고, 有회									
<u> </u>	票紙는 口	 -시 候補	‡者(비	례대표=	국회								
9	의원선거	및 비례	대표시	• 도의 위	원선					-비례	대표	지방의	의회
7	거에 있어	 서는 候	 有者를	 추천한	政	의	원선거-	_ — — –					
A 是	— 黨을 말힌	난다)別로	구분	하여 2	각각								
2	포장하여	區・市	・郡選	學管理多	委員								
É	會委員長ゴ	ㅏ 출석한	委員	全員이	封								
					I								

- 현 - 행	개 경 안
即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封印을 거부하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다.	
第185條(開票錄・集計錄 및 選擧錄의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① (생 략)	작성등) ① (현행과 같음)
②第1項의 開票錄을 송부받은 管轄	②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別 得票數	
를 計算・公表하고 選擧錄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③~⑥ (생 략)	③~⑥ (현행과 같음)
第190條(地方議會議員當選人의 決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定・公告・통지)①地域區市・道議	결정·공고·통지) ①
員 및 自治區・市・郡議員의 選擧	지역구자치구·시·군의
에 있어서는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	원
가 당해 選擧區에서 有效投票의 다	
수를 얻은 者(自治區・市・郡議員	지역구자치구·

개 경 안 選擧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 시 • 군의원선거----를 얻은 者 順으로 議員定數에 이 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다 만.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年長者 順에 의하여 當選人을 決定 하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 告・통지)第4項 및 第188條(地域區 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 零 지)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地域 區市・道議員 및 自治區・市・郡議 지역구지방의회의원-----員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地域區國 會議員候補者"는"地方議會議員候補 --지역구지방의 者"로, "1人이 된 때"는 "議員定數 회의워후보자---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國 會議員地域區"는 "그 選擧區"로 본 다.

개 경 안 혀. ④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 <삭 제> 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 한 각 政黨(이하 이 조에서 "議席割 當政黨"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選擧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比例代 表市・道議員定數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整數의 議席을 그 政黨에 먼 저 배분하고 殘餘議席은 端數가 큰 순으로 각 議席割當政黨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政黨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政 黨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議席割當政黨의 득 표수를 모든 議席割當政黨의 득표 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⑤第4項의 경우 하나의 政黨에 議 <삭 제>

현 행 | 개 경 안

席定數의 3分의 2 이상의 議席이 배분될 때에는 그 政黨에 3分의 2 에 해당하는 數의 整數의 議席을 먼저 배분하고. 殘餘議席은 나머지 議席割當政黨間의 得票比率에 殘餘 議席을 곱하여 算出된 數의 整數의 議席을 각 나머지 議席割當政黨에 배분한 다음 殘餘議席이 있는 때에 는 그 端數가 큰 順位에 따라 각 나머지 議席割當政黨에 1席씩 배분 한다. 다만, 議席定數의 3分의 2에 해당하는 數의 整數에 해당하는 議 席을 배분받는 政黨외에 議席割當 政黨이 없는 경우에는 議席割當政 黨이 아닌 政黨間의 得票比率에 殘 餘議席을 곱하여 算出된 數의 整數 의 議席을 먼저 그 政黨에 배분하 고 殘餘議席이 있을 경우 端數가 큰 順으로 각 政黨에 1席씩 배분한

현 행 | 개 경 안

의 端數는 1로 본다)를 比例代表 市・道議員議席定數에서 다음 빼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을 배분하 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다만. 比例 代表市・道議員議席配分이 배제된 政黨중 再投票결과에 따라 議席割 當政黨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政黨마다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整數(1미만의 端數는 1로 본다)를 별도로 빼야 한다. ⑨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제7항 및 제8항의 規定은 比例代表 市・道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 통지에 이를 準用한다.

<삭 제>

<신 설>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 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혀 행	기 경 안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
	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
	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
	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
	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
	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
	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
	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
	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에 있어
	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

혀 개 경 안 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 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 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 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 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 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 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 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 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 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 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 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

현	행	개 경 안
		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
		 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
		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미
		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
		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
		된 정당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
1		

개 경 안 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 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 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 고 · 통지)제4항, 제189조(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으로 본다. 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無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 效등) ①・② (생략) 효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

현 행	개 경 안
을 無效로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u>比例代表</u>	3 <u>비례대표</u>
市・道議員의 當選人이 所屬政黨	지방의회의원
의 合黨・解散 또는 除名외의 사	
유로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當	
選人決定시 2이상의 黨籍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 ④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比例代表	 ④비례대표
市・道議員이 所屬政黨의 合黨・解	지방의회의원
散 또는 除名외의 사유로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國會法 第136	「국회법」
條(退職) 또는 地方自治法 第70條	 「지방자치법」
(議員의 退職)의 規定에 불구하고	
退職된다. 다만, 比例代表國會議員	
이 國會議長으로 당선되어 國會法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黨籍을 이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경 안 혂 (5) (생략) (5) (현행과 같음)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國會議員議席 및 比例代表市・道議 員議席의 再配分) ① (생 략) 의원의석의 재배분) ① (현행과 같 음) ②제189조 및 제190조제4항 내지 ②----제190조의2(비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比例代表國會 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 議員議席 또는 比例代表市・道議員 공고・통지)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 議席의 배분 및 그 當選人決定의 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 위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판결이 의회의원의석----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 인한 再選擧를 실시한 때에 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 체없이 議席을 再配分하고 다시 當 選人을 決定하여야 한다. ③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比例代 表國會議員選舉 또는 比例代表市・ ----비례대표지방 道議員選舉의 営選人이 ユ 任期開 의회의워선거----始전에 辭退・死亡하거나 第192條 (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등)

현 행	개 경 안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	
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그 選擧 당시의 所屬政黨이	
추천한 候補者를 比例代表國會議員	
候補者名簿 또는 比例代表市・道議	비례대표지방의
員候補者名簿에 기재된 順位에 따	회의원후보자명부
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④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比例代	4
表國會議員選擧 또는 比例代表市・	비례대표지방의
道議員選擧에 있어서 제198조의 사	회의원선거
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	
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	
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政黨이 이미 배분받은	
議席數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殘餘議席을 배분하고 當選人을 결	

현 행	개 경 안
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 내	
지 제5항의 규정을, 비례대표시·도	비례대표지방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제4항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2
第195條(再選擧) ①다음 各號의 1에	第195條(再選擧) ①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	
거를 실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當選人이 없거나 <u>自治區・市・郡</u>	2 <u>지역구자치구·시·군의</u>
議員選舉에 있어 當選人이 당해	<u>원선거</u>
選擧區에서 選擧할 地方議會議員	
定數에 달하지 아니한 때	
3.~6. (생 략) ② (생 략)	3.~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
選擧) ①・② (생 략)	선거) ①·② (현행과 같음)
③第1項의 再選擧를 실시함에 있어	3
서 政黨이 合黨한 경우 合黨된 政	
黨은 그 再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	
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選擧區	

현 행	개 경 안
選擧管理委員會에 合黨전 候補者令	
1人을 候補者로 추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	바례대표지방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	회의원선거 회의원선거
명부를 제출하되 합당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	
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合黨된 政黨의 候補者(비례대표국	5
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 · 도의원	바례대표지방의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회의원선거 회의원선거
—— 정당을 말한다)의 기호는 당초 選舉	
당시의 그 候補者의 記號로 한다.	
	<u>.</u>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	⑦비례
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	
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	
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	

줘	71 74 01-
현 행	개 경 안
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적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	
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	
는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	제190조의2
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	
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의 당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u></u>
⑧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	⑧비례대
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	표지방의회의원선거
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정에	
있어서는 제194조제4항의 규정을	
군용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第198條(天災・地變등으로 인한 再投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
票) ①・② (생 략)	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第1項의 再投票를 실시함에 있어	3
서 合黨된 정당이 있는 경우 제194	

현 행	개 경 안
조의 比例代表國會議員 및 比例代	मे औ पो
表市・道議員의 議席 再配分을 위	표지방의회의원 표지방의회의원
한 得票數의 計算은 그 候補者의	
合黨전 政黨의 得票數에 合算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第200條(補闕選舉) ①地域區國會議員,	제200조(보궐선거) ①
地域區市・道議員과 自治區・市・	지역구지방의회의원
郡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闕	
 員 또는 闕位가 생긴 때에는 補闕	
選擧를 실시한다.	
②比例代表國會議員 및 比例代表	②비례
市・道議員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대표지방의회의원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闕員通知	
를 받은 후 10日이내에 그 闕員된	
議員이 그 選擧 당시에 소속한 政	
黨의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	
以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
에 기재된 順位에 따라 闕員된 國	 부
會議員 및 市・道議員의 議席을 承	— 지방의회의원
쏊할 者를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第264條(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되거나 그 政黨이 解散된 --해산된 때 또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③~⑥ (생략) ③~⑥ (현행과 같음) 第201條(補闕選擧등에 관한 特例) ①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 補闕選擧등(大統領選擧・比例代表 國會議員選舉 및 比例代表市・道議 ----비례대표지방의회 員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의원선거----같다)은 그 選擧日부터 任期滿了日 까지의 기간이 1年미만이거나, 地方 議會의 議員定數의 4分의 1이상이 闕員(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이상인 때에 再選舉,延期된 選舉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 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 議會의 議員定數의 4分의 1이상이 闕員되어 補闕選擧등을 실시하는

혂 개 경 안

때에는 그 闕員된 議員 全員에 대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④ (생 략)
- ⑤地方議會議員選舉에 있어 第1項 前段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 關選擧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 하여 補關選擧등을 실시하게 된 때 에는 管轄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 員長은 第35條第2項第2號 및 第3項 의 規定에 불구하고 늦어도 選擧日 전 40日에 選舉日을 公告하여야 하 며, 이 경우 第35條第5項의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選擧日公 告目"로 본다.
- ⑥ (생략)

第203條(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 · ② (생 략)

③第35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補闕選擧등 가운데 다음 各號의 補

- ②~④ (현행과 같음)
- ⑤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 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관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 고 선거일전 40일까지 선거일을 공 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 5항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선거일공고일"로 본다.

⑥ (현행과 같음)

- ① · ②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경 안
2	/비 '8 년
闕選擧등은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	
의 選擧日에 동시실시한다. 다만,	
그 補闕選擧등의 選擧日이 國會議	
員 또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	
團體의 長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	
의 選擧期間開始日전 40日부터 選	
擧日후 50日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	
에는 당해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부터 50日후 첫번째 토요일	수요일
에 그 補闕選擧등(이하 이 條에서	
"연기된 補闕選擧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補闕選擧등의	
選擧日전 30日까지 選擧의 실시사	
유가 확정된 補闕選擧등도 동시에	
실시한다.	<u>.</u>
1.·2. (생 략) 第205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	1.·2. (현행과 같음) 第205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
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	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①
추천을 받은 2人이상의 候補者(比	

개 경 혀 췞 - ٠

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選擧事務 所와 選擧連絡所를 공동으로 設置 할 수 있다.

②~⑤ (생 략)

第207條(책자형 小型印刷物에 관한|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 特例) ①同時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이상의 候 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 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第 66條(小型印刷物)의 規定에 의한 책 자형 小型印刷物의 規格範圍안에서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小型印刷物을 공동으로 작성한 때 에는 候補者마다 각각 1種을 작성 한 것으로 본다.

②管轄區域이 큰 選擧區의 候補者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②~⑤ (현행과 같음)

 $\overline{(2)}$

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 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 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 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5조(선거공보) 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 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혂 개 경 안 가 小型印刷物의 일부 紙面에 작은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選擧區의 候補者에 관한 내용을 選 擧區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 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 큰 選擧區 의 候補者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小型印刷物은 1種으로 본다. 책자형 선거공보는-----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型印刷 ③-----책자형 선거공보를 物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候補者間의 약정에 의하여 그 費用을 分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分擔內 譯을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 會에 小型印刷物을 제출하는 때에 --책자형 선거공보를----각각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第211條(投票用紙・投票案內文등에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등에 관한 特例) ① (생 략)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와 동시에 <삭 제> **실시하는** 自治區・市・郡議員選舉 에 있어서 投票用紙에 揭載할 記號 는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 者의 掲載順位등)第2項의 規定에 불

혀 췘 개 경

구하고 候補者의 順位에 의하여 가.나.다"등으로 표시한다.

③同時選擧에 있어서 第151條(投票 用紙와 投票函의 작성)第5項의 規定 에 의한 投票用紙의 印刷・納品・ 송부등에는 地域區國會議員選舉의, 地域區國會議員選舉가 없는 경우에 는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 選舉(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의 제외한다)중 選擧區의 區域이 큰 選 擧의 投票用紙掲載順位의 앞 順位 부터 2개 政黨이 각각 2人씩 지명 하는 代理人이 立會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당해 政黨의 代理人이 참 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參與立會 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4)·(5)(생 략)

송등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 어서 不在者投票用紙의 발송 및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 거 및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제151조(투표용지와 투 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당해 시 · 도선거관리 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용 지에는 당해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 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第212條(不在者投票用紙의 발송과 회 제212조(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 송등에 관한 특례) ----

개 경 아 송은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第1項 및 第158條 (不在者投票)第1項의 規定의 범위안 에서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 -----하나의 회송용 봉투· 는 選舉人마다 하나의 속봉투・회 송용 겉봉투 및 발송용 겉봉투를 발송용 봉투----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등에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등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舉에 있어 원 관한 특례) ①-----票参觀人은 第161條(投票參觀)第2項 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 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마다 4人을、自治區・市・郡議員選 舉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는 2人 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②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에 ②同時選擧의 投票參觀人의 지정 및 參觀에 있어 第161條第4項 및 있어 제161조제4항의 "후보자"는 第8項의 "候補者"는 "政黨 또는 候 "정당 또는 후보자"로, "후보자별" 은 "정당·후보자별"로 본다. 補者"로 본다. ③同時選擧에 있어서 不在者投票參

현 - 행	개 정 안
觀人은 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第2	
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	
數에 불구하고 당해 選擧에 참여한	
政黨마다 2人을, 自治區・市・郡議	무소속후보자
員選擧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는	
1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④同時選擧에 있어서 不在者投票參	4
觀人은 12人이내로 하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申告한 人員	
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 管轄選擧	
管理委員會는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人員은	
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者	무소속후보자
와 無所屬候補者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12人에 달할 때까지 抽籤	
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政黨	
이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 第150條(投票用紙의 政	
黨・候補者의 掲載順位등)第3項 및	

 	기 경 안
변 경 -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政黨順位의	ળ જ 한
앞 順位의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	
부터 12人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第215條(開票參觀人등에 관한 特例)	제215조(개표참관인등에 관한 특례)
①同時選擧에 있어서 開票參觀人은	①
第181條(開票參觀)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마다 8人을,	
自治區・市・郡議員選舉의 候補者	무소속후보자
와 無所屬候補者는 2人을 선정・申	
 告하여야 한다. 다만, 區・市・郡選	
擧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票의 開票	
를 하는 때에는 政黨 또는 候補者	
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政黨은	
4人씩을, 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무소속후보자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는 1人씩을	
參觀하게 한다.	
②同時選擧에 있어서 觀覽證의 枚	②
數는 第182條(開票觀覽)第2項의 規	

개 경 안 혂 定에 불구하고 政黨別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自治區・市・郡議 -----무소속후보자 員選舉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別 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候補者마다 1枚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第216條(4개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제216조(4개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特例) ①4개이상 同時選舉에 관한 특례) ①-----있어 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워 補者는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 선거----説・對談)의 演説・對談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組 를 사용할 수 있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②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第157條(投票用紙受 실시하는 경우 제157조(투표용지수 領 및 記票節次)第2項의 規定에 의 령 및 기표절차)제2항의 규정에 따 하여 選舉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 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 하는 때에는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 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 委員長은 당해 投票區選舉管理委員 원 중에서 지정한 1인으로 하여금 자치구 · 시 · 군의원 및 자치구 · 會 副委員長(副委員長이 유고시는

현 행 가 경 안

委員長이 지명하는 委員)으로 하여 地方議會議員選擧(比例代表市・ 금 道議員選舉를 포함한다)의 投票用紙 에 그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 의 私印을 각각 捺印하여 함께 選 擧人에게 교부하게 하고. 地方自治 團體의 長의 選舉의 投票用紙에는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私 印을 각각 捺印하여 함께 選舉人에 게 교부하여야 하되. 選舉人은 地方 議會議員選擧의 投票用紙에 각각 1 인의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 擧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선택하 는 標를 한 후 각각 選擧別(比例代 表市・道議員選舉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설치된 投票函에 투입한 후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 擧의 投票用紙를 교부받아 각각 1

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 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 고. 시 · 도의원 및 시 · 도지사의 선 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 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선거인은 자 치구 · 시 · 군의워 및 자치구 · 시 · 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자치구・시・ 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 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비례대표자치구ㆍ 시·군의원선거를 포함한다)로 설치 된 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 를 교부받아 각각 1인의 후보자(비 례대표시 · 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혂 - 헸 개 경 안 人의 候補者를 선택하는 標를 한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비례대표 후 각각 選擧別로 설치된 投票函에 시 · 도의원선거를 포함한다)로 설치 된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 투입한 다음 投票所에서 퇴소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다른 選擧의 投票 서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函에 잘못 투입된 投票紙는 당해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 選擧의 投票函에 투입된 것으로 본 지는 당해 선거의 투표함에 투입된 다. 것으로 본다. ③임기만료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自治區・市・郡議員 ------개표진행-----選擧의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 178조제1항·제2항 및 제2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 · 면 · 동을 단 위로 할 수 있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第217條(投票錄・開票錄등 작성에 관 제217조(투표록・개표록등 작성에 관 하 특례) -----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 投票錄 및 開票錄은 選擧의 구분없이 投票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錄은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 單位로. 開票錄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

개 경 안 會 單位로 작성할 수 있다. 제219조(선거소청) ① (현행과 같음) 第219條(選舉訴請) ①(생 략) 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政黨 또는 候 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14日이내 에 第52條(登錄無效)第1項・第2項 또는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등)第1項 내지 第3項의 사 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第190條(地方議會議員當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 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第 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내지 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 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 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 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 員長을 각각 被訴請人으로 하여 地 域區市・道議員選舉、自治區・市・ 郡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擧에 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

 	개 정 안
	/비 '장 단
委員會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와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中	
央選擧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	
다.	
③~⑦ (생 략)	③~⑦ (현행과 같음)
第221條(行政審判法의 準用) ①選擧訴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①
請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	
을 제외하고는 行政審判法 第7條	「행정심판법」
 (委員의 除斥・기피・回避)(第2項	
後段을 제외한다), 第11條(選定代表	
者), 第13條(被請求人의 適格 및 更	
正)第2項 내지 第5項, 第14條(代理	
人의 選任), 第15條(代表者등의 資	
格), 第16條(審判參加), 第20條(請求	
의 變更), 第21條(執行停止)第1項,	
第23條(補正), 第25條(主張의 補充),	
第26條(審理의 方式), 第27條(證據	
書類등의 제출), 第28條(證據調査),	
第29條(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 第	
30條(請求등의 취하), 第32條(裁決	

개 경 의 イ문)第1項・第2項, 第39條(再番 判請求의 금지), 第40條(證據書類등 의 반환), 第41條(書類의 송달) 및 第44條(權限의 위임)의 規定을 準用 하고. 選擧訴請費用에 관하여는 民 사소송법 | ---- 「행정심판법 | --事訴訟法을 準用하되. 行政審判法을 準用하는 경우 "行政審判"은 "選舉 訴請"으로、"請求人"은 "訴請人"으 로, "被請求人"은 "被訴請人"으로, "審判請求 또는 審判"은 "訴請"으 로、"審判請求書"는 "訴請狀"으로、 "裁決"은 "決定"으로, "裁決期間"은 "決定期間"으로, "委員會 또는 裁決 廳"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己,"裁決書" 는 "決定書"로 본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및 제223조(당선소송) ①--第223條(當選訴訟) ①大統領選舉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당선의 효 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候補者를

현 행	개 정 안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	
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30日이내에	
第52條(登錄無效)第1項・第2項 또는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	
無效등)第1項 내지 第3項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	
人을,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	
定・公告・통지)第1項・第2項, 第	
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	
定・公告・통지)第1項 내지 第4項,	
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	
지) 또는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比例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
代表市・道議員議席의 再配分)第4	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
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그 當選人을 決定한 中央	
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國會議	
	· · · · · · · · · · · · · · · · · · ·

	. 개 경 안
- 長을,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	, , ,
<i>,</i>	
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第227條(行政訴訟法의 準用등) 選擧에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등)
관한 訴訟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	
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行政訴訟法	「행정소송법」
第8條(法適用例)第2項 및 第26條(職	
權審理)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같은 法 第8條第2項에서 準用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민사소송법」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	
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	
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	
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	
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	
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	
	1

현 행	개 경 안
(이의신정권의 포기), 제230조(이의	
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	
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	
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	
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	
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	
(불요증사실)의 規定을 제외한다. 第229條(印紙貼付에 관한 特例) 選擧	 제229조(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는 民事訴訟	「민사소
등印紙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訴訟	송등인지법」
 書類에 첩부하여야 할 印紙는 民事	 「민
訴訟등印紙法에 規定된 금액의 10	 사소송등인지법」
——— 倍로 한다.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④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	⑤직원(투표관리관
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	다)
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	——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	

됬	ટ્ર ો)	الح	7]	ለ ኒ
~연	~~~~~~~~~~~~~~~~~~~~~~~~~~~~~~~~~~~~~~~	<u> </u>	<u>8</u>	T.

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이 하의 懲役에 處한다.

<신 설>

-----.

⑥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u>자</u>
-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 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건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현 행	개 경 안
<신 설>	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기세6항제2호 · 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 · 권유 ·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34條(當選無效誘導罪) 第263條(選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	
效) 또는 第265條(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에 해당	
되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할 目的으로 第263條 또는 第265條	
에 規定된 者를 誘導 또는 挑發하	
여 그 者로 하여금 第230條(買收 —————	제230조(매수 및

개 경 안 혂 및 利害誘導罪) 내지 第233條(當選 이해유도죄)제1항 내지 제5항ㆍ제 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 | 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 反罪)第1項 또는 第258條(選舉費用 不正支出등 罪)第1項에 規定된 행 위를 하게 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 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36條(買收와 利害誘導罪로 인한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沒收) (생 략) 이익의 몰수) (현행과 같음) 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①~④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 <신 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 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

현	- 히	개 경 안
		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u> </u>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
		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
		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
		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
<신 설>		한 <u>자</u> ⑥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
		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
		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u>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u>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
		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u>이하의 징역</u>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
第239條(職權濫用에 의	한 選擧의 自	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

정	70 /4 01
현 행	개 경 안
由妨害罪) 選擧에 관하여 選擧管理	유방해죄)
委員會의 委員・職員, 選舉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選擧人名簿	
作成에 관계있는 者나 警察公務員	
(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	
를 포함한다)이 職權을 남용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1. 選舉人名簿의 閱覽・供覽을 방해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하거나 選擧人名簿의 閱覽‧供覽	그 열람
에 관한 職務를 遺棄한 때	
2. (생 략) 第240條(壁報 기타 宣傳施設등에 대	2. (현행과 같음) 제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등에 대
한 妨害罪) ①・② (생 략)	한 방해죄) ①·② (현행과 같음)
③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	3
는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者가 제49	제64조
조(후보자등록 등)제13항의 후보자	 (선전벽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
정보공개자료・제64조(宣傳壁報)의	 거공보)의 선거공보
宣傳壁報・第65條(選擧公報)의 選擧	

혀	기 경 인
	게 경 현
公報・第66條(小型印刷物)의 傳單型	
小型印刷物이나 책자형 소형인쇄물	
또는 第153條(投票案內文의 발송)의	
投票案內文을 부정하게 작성・첩	
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職務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44條(選擧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暴行·攪亂罪)(생 략)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① (현행
	 과 같음)
<신 설>	②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u> </u>	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47條(詐偽登載・虚偽捺印罪) ①詐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①
僞의 방법으로 選擧人名簿(不在者	
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者, 허위로	

개 경 不在者申告들 한 者, 특정한 選擧區 에서 投票할 目的으로 選舉人名簿 作成基準日전 30日早日 選舉人名簿 ----180일---作成滿了日까지 住民登錄에 관한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第157條 (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날인 또는 拇印을 한 者는 3年이하의 懲 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 하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第250條(虛偽事實公表罪) ①・② (생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 <신 설>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 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 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현 행	개 경 안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
	선후보자"로 본다.
第252條(放送・新聞등 不正利用罪) ①	제252조(방송・신문등 부정이용죄) ①
第94條(放送・新聞등에 의한 廣告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5항ㆍ제94
의 금지) • 第95條(新聞 • 雜誌등의	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第1項・第	지)
96條(虛僞論評・報道의 금지)・第98	
條(選擧運動을 위한 放送利用의 제	
한) 또는 第99條(構內放送등에 의한	
選擧運動禁止)의 規定에 위반한 者	
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	
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②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第12	2
項[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	
의 放送)第4項, 第73條(經歷放送)第4	
項, 第74條(放送施設主管 經歷放送)	
第2項, 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	

 	
·	
論會)제4항, 第137條의2(政綱·政策	
의 放送演說의 제한)第6項에서 準用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	
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	
토론회)제11항 후단[제82조의3(선거	제13항 후단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다음 各號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각호
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의 어느 하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10. 第86條(公務員등의 選擧에 영향	10
을 미치는 행위금지)第1項第1號	
내지 第4號· <u>제2항 내지 제4항</u> 의	<u>제2항·제3항 또는 제5</u> 항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	

췞 개 경 혀 - ()- 게 한 者 또는 같은 條 제5항의 -----제6항-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한 者 1.~19. (생 략) 11.~19. (현행과 같음) ②----각호의 어느 하나----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만원이하 의 罰金에 處한다. 第64條(宣傳壁報)第1項·第8項, 第65條(選舉公報)第1項, 第66條(小 제65조(선거공보)제1항 · 제2항의 型印刷物)第1項・第2項 또는 第5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벽보 또는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宣傳壁報・ 선거공보를---選舉公報 中型印刷物 選舉運 動을 위하여 작성 · 사용하거나 하 게 한 者 <신 설> 2.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 한 자 <신 설>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혀 개 경 4.~8. (생략) 4.~8.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 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 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자의 명칭 등 -----선거운동정보에 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 해당하는 사실----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동 의를 얻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 를 전송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 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다. 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第103 세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條(各種集會등의 制限)第1項의 規定 -제1항 또는 제2

현 행	개 경 안
에 위반하여 모임을 開催하거나 하	ठ्री
게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②각호의 어느 하나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	
의 罰金에 處한다.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u>各目</u>	1 <u>각목</u>
<u>의 1</u> 에 해당하는 者	의 어느 하나
가.~차. (생 략)	가.~차. (현행과 같음)
카. 第103條(各種集會등의 制限) <u>제</u>	카 <u>제</u>
2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위반	<u> 3항 내지 제5항</u>
하여 各種集會등을 開催하거나	
하게 한 者	
타.~하. (생 략)	타.~하. (현행과 같음)
2. 選擧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u>各目</u>	2 <u>각목</u>
<u>의 1</u> 에 해당하는 者	의 어느 하나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第46條(名簿寫本의 교부)第4項	나.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
의 規定에 위반하여 교부받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	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의정
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	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혀 개 경 本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貸與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 또는 財産상의 이익 기타 營利 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 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 한 者 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 라.~사. (생 략) 라.~사. (현행과 같음) 3.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통보 3. ---각목의 어느 하나----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 보도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 조치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6항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 정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③ (현행과 같음) 략)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④---각호의 어느 하나----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

의 罰金에 處한다.

개 정 인

췏

혀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5. 第64條(宣傳壁報)第7項・第65條| 5. 제64조(선전벽보)제7항[제65조(선 거공보)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選擧公報)第5項(第64條第7項을 準 用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第66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條(小型印刷物)第9項(第64條第7項 선전벽보 또는 선거공보의 수량을 을 準用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規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定에 위반하여 宣傳壁報・選擧公 報나 小型印刷物의 數量을 넘게 印刷하여 제공한 者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터넷광고를 하 거나 하게 한 자 8.~12. (생 략) 8.~12. (현행과 같음) 第258條(選擧費用不正支出등 罪) ①다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 ①-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 ---각호의 어느 하나----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會計責任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삭 제>

현 행 | 개 정 안

第132條(收入과 支出報告書)第1項 의 收入과 支出報告書를 당해 選 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 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 한다)하거나 하게 한 때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 의 罰金에 處한다.

<삭 제>

1. 第124條(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第127條(選舉費用의 收入・支出) 내지 第129條(會計帳簿의 비치・기재)第1項 내지 第3項,第 130條(領收證 기타 證憑書類),第 135條(選舉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4項 또는 第136條(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第 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30條(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현 행	개 경 안
 의 規定에 의한 領收證 기타 證據	11.02
書類를 허위기재・偽造・變造하7	
	<u>'</u>
<u>나 하게 한 者</u> 3. 제134조(자료제출요구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第259條(選擧犯罪煽動罪) 演説・昼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報・新聞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u>-</u>
지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니]
지 第235條(放送・新聞등의 不法和	IJ
用을 위한 買收罪), 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의 罪를 범할 것을 燎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
 動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 를 제외한다)를 범할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260조(양벌규정) 정당・회사 기타	제260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	n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
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여]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현	<u></u> 죄(당내경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

<u> 현</u>	개 정 안
단체등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ਲੇ —
벌금형을 과한다.	
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徴收등) ①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②각호의 어느 하나
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형사소송법</u> 제211조 (현행범인과	2. <u>「형사소송법」</u>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	
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3.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
	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	<u>한 자</u> ③각호의 어느 하나
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 개 경 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이 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 2. ---각목의 어느 하나-----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第207條(책자형 小型印刷物에 다. -----선거공보에--관한 特例)第3項 後段의 規定을 위반하여 그 分擔內譯을 小型印 ----선거공보 刷物을 제출하는 때에 書面으로 申告하지 아니한 者 라.第69條(新聞廣告)第3項 後段의 規定을 위반하여 그 分擔內譯을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3항 후 廣告契約書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바. · 사. (생 략) 바. · 사. (현행과 같음) 3. 第123條(會計責任者의 選任등)第 <삭 제> 1項・第2項・第4項 내지 第6項 또 는 第125條(會計責任者의 選任・ 申告전의 會計事務擔當)第2項 및 第132條(收入과 支出報告書)第2項

	- 개 경 안 -
_	, -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第262條(自首者에 대한 特例) ① (생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第1項에 規定된 者가 各級選擧管	②
理委員會(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한다)에 자신의 選擧犯罪事實을	
申告하여 選擧管理委員會가 關係搜	
査機關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選擧	
管理委員會에 申告한 때를 自首한	
때로 본다.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
호) ①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	কু)
된 죄(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	
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국민투표법」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	
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	
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	
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	
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현 행		케	정	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	위원회				
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	신고자			- 「특정범	죄신고
등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	의 금	자등 보호법」			
 지), 제7조(인적 사항의 기기	재생략),		_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및 제16				
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내 감면)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	(급)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제	262조의3(선거	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선거관리	위원회	포상금 지급)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	외한다.	-읍・면・동신	선거관	믜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	<u>기</u> 범죄				
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기	가 인지				
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괸	<u>-</u> 리위원				
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ĺ				

전 행	개 경 안
第263條(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當選無效) ①제122조(선거비용제한	당선무효) ①
액의 공고)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	
된 選擧費用制限額의 200分의 1이	
상을 超過支出한 이유로 선거사무	
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宣	
告를 받은 때에는 그 候補者의 당	
선은 無效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	
의 誘導 또는 挑發에 의하여 당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하기	
위하여 支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	②「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	또는 제2항제6호
_ 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개 경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 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 례대표시 · 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 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64條(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한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當選無效) 當選人이 당해 選擧에 있어 이 法에 規定된 罪를 범함으 로 인하여 懲役 또는 100萬원이상 금법 1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 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그 당선은 無效로 한다. 第265條(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罪로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當選無效) 선거사무장・선거 인한 당선무효) ---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 · 신고되지 아니 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 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 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 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 행	개 경 안
자들 포함한다)의 直系尊・卑屬 및	
配偶者가 당해 選擧에 있어서 第	
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	
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57조(기	
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	「정치자
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	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
정수수죄)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	죄)
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	
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	
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	
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候補者(大統領候	
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를 제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한다)의 당선은 無效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誘導 또는 挑發에 의	
하여 당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하기 위하여 罪를 범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등의 비용 반환) ①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 바화) ①----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 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 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 선이 무효로 된 자(그 기소 후 확 선이 무효로 된 자는 제57조(기탁 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 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 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워선거---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등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 의 제한) ①---의 제한) ①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

- 경--7||- 罪) 내习 第234條(當選無效誘導 罪)・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내ス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第 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第1項 및 第2項・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 한등 違反罪) 내지 第259條(選擧犯 罪煽動罪)의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執 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 免除된 후 10年間,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間, 100萬원 이상의 罰金刑 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 된 후 5年間 각 다음 各號의 1에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職에 就任하거나 任用될 수 없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第60條(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2.

 	개 경 안
₹ <u>1</u> %	개 경 린
者)第1項第6號 내지 <u>第9號</u> 에 해당	<u> </u>
하는 職	
3. 公職者倫理法 第3條(登錄義務者)	3. <u>「공직자윤리법」</u>
第1項第10號 또는 第11號에 해당	
하는 機關・團體의 任・職員	
4. 私立學校法 第53條(學校의 長의	4. 「사립학교법」
任免) 또는 같은 法 第53條의2(學	
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規定에 의한 敎員	
5. <u>放送法</u> 第21條(委員會의 구성)의	5. 「방송법」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의 委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268條(公訴時效) ① (생 략)	제268조(공소시효)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6	<삭 제>
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제1	
항의 규정을 위반한 죄의 공소시효	
는 그 보존기간만료일을 경과함으	
로써 완성한다.	
第269條(裁判의 관할) 選擧犯과 그 共	제269조(재판의 관할)
犯에 관한 第1審 裁判은 法院組織	「법원조직
法 第32條(合議部의 審判權)第1項의	법」 법」
	· ——

	. 개 경 안
_	기 0 년
規定에 의한 地方法院合議部 또는	
그 支院의 合議部의 관할로 한다.	
다만, 軍事法院이 裁判權을 갖는 選	
擧犯과 그 共犯에 관한 第1審 裁判	
은 軍事法院法 第11條(普通軍事法	「군사법원법」
 院의 審判事項)의 規定에 의한 普	
通軍事法院의 관할로 한다.	
第271條(不法施設物등에 대한 조치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只 代執行) ①各級選舉管理委員會	및 대집행) ①
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選擧	
에 관한 壁報・印刷物・懸垂幕 기	
타 宣傳物(政黨의 黨舍揭示宣傳物	
을 포함한다)이나 類似機關・私組	
織 또는 施設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등의 중지 또는	
撤去・收去・閉鎖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代執行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代執行은 行政代執行	「행정대집행
法에 의하되, 그 節次는 行政代執行	법」「행정대집행
	<u> </u>

현 쳉	개 경 안
法 第3條(代執行의 節次)의 規定에	법」
— 불구하고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272條(不法宣傳物의 郵送中止) ①各	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①-
級選舉管理委員會(投票區選舉管理	
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관리위원회
 같다)는 職權 또는 政黨·候補者의	
요청에 의하여 이 法에 規定된 罪	
에 해당하는 犯罪의 嫌疑가 있는	
宣傳物을 郵送하려 하거나 郵送중	
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郵遞局長	
에게 그 宣傳物에 대한 郵送의 금	
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第3項의 경우 搜査機關은 刑事訴	④ 「형사
訟法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	 소송법」
 求期間)의 기간내에 해당 郵便物에	
대한 押收令狀의 발부여부를 당해	
選擧管理委員會 및 郵遞局長에게	

현 행	개 경 안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押收	
令狀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郵遞	
局長은 즉시 그 郵便物의 郵送中止	
를 解除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郵遞局長이 各級選舉管理委員會	6
의 요청에 의하여 郵便物의 郵送을	
중지하거나 宣傳物의 우송에 관련	
된 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출	
한 때에는 郵便法 제3조・제50조・	「우편법」 제3조(우편물의
제51조・제51조의2, 郵便換法 제19	비밀보장)ㆍ제50조(우편취급거부의
조 및 通信秘密保護法 제3조의 規	죄)·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죄)·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
	「우편환법」 제19조(비밀의 보장)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⑦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郵便官署	7
에서 취급중에 있는 郵便物중 이	
法에 規定된 罪에 해당하는 犯罪의	

개 정 嫌疑가 있는 不法宣傳物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郵遞局長에 게 第1項의 조치와 함께 郵便法 第 28條(法規違反郵便物의 開披)의 規 定에 의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郵便法 第48 ----- 「우편법 լ ----條(郵便物開披毀損의 罪) 및 通信秘 비밀보호법 시16조(벌칙)-----密保護法 第16條(罰則)의 規定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第272條의2(選擧犯罪의 調査등) ①各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級選舉管理委員會(投票區選舉管理 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워회----같다)委員・職員은 선거범죄에 관 하여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인 정되거나, 후보자・예비후보자・선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 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選舉 함한다) · 예비후보자-----事務員이 제기한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는 疏明이 이유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또는 現行犯의 申告를 받

현 행	개 경 안
은 경우에는 그 場所에 出入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調査를 하	
거나 關聯書類 기타 調査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⑦ (생 략)	②~⑦ (현행과 같음)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
사)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	사) ①
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거관리위원회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	
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	
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	
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	

현	개 경 안
(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	
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	
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 이용기간 • 이용	
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第273條(裁定申請) ① (생 략).	제273조(재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에	②
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60條(裁定	「형사소송법」
申請)第2項・第261條(檢事長 또는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
支廳長의 處理)・第262條(高等法院	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
의 裁定決定)・第263條(公訴提起의	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擬制)・第264條(代理人에 의한 申請	
과 1人의 申請의 效力, 取消) 및 第	
265條(公訴의 維持와 指定辯護士)의	
規定을 적용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書	③
가 刑事訴訟法 第260條第2項에 規	「형사소송법」
定한 그 檢事所屬의 地方檢察廳 또	

혂 - 개 - 경 - 안 는 支廳에 접수된 때에는 그 때부 터 刑事訴訟法 第262條第1項의 決 ----「형사소송법」---定이 있을 때까지 公訴時效의 진행 이 정지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第274條(選擧에 관한 申告등의 時間)|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이 法 또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한 大統領令 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規則에 의하여 選舉期間중 各級行 政機關과 各級選舉管理委員會에 대 하여 행하는 申告・申請・제출・보 고등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休日에 불 구하고 一般職國家公務員의 平日의 正規勤務時間중에 하여야 한다. <신 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 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신 청 · 제출 · 보고 등을 당해 선거관 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개 경 안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 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 보상) ①-----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거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 정감시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 관리관----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 (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 선거부 정감시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중 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 ·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第278條(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

혂 - 개 - 경 - 인 開票 事務管理를 전산화하여 실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選擧人이 알 수 있도록 案內文 배부・言論媒 體를 이용한 廣告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 하여는 國會에 交涉團體를 가지는 政黨과 協議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신 설>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 추진협의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⑤投票 및 開票 기타 選舉事務管理 (6)----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 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 로그램의 작성 · 검증 및 보관 기타 -----보관, 전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規則으로 정한다. 운영 그 밖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서 인용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은 각 인용법률의 시행전까지는 이 법의 종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선거권)제2항제2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 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전 7월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선거일전 5월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시·도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조정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 시·도지사가 제출한 그 조례안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 야 한다.
- ③시·도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 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선거 권이 없는 자)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 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등의 비용반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설치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 ③이 법 시행전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

제9조(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을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2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에 의한 투표구"를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단서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 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 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제4조제4항 단서외의 부분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投票區를 관할하는 邑・面・洞의 區域안에"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로, 동항 단서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投票區를"을 "읍・면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을"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12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외의 부분 및 제11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4항 단서중 "公 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各級選擧管理委員會(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 는 제외한다)"를 각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4항중"國家公務員法"을"「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

제17항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제15항" 을 "제16항"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